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834-01



대외협력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신흥국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Research on IP environment analysis and policy development in emerging countries
for Korean IP administrative service support and cooperation

2021. 12



2021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대외협력

국가별 환경분석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신흥국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Research on IP environment analysis and policy development in emerging countries for Korean
IP administrative service support and cooperation

2021.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신흥국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 연 구 책 임 자 :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 여 연 구 원 :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한국형 IP 행정서비스를 신흥국가에 지원 및 협력하기 위한 신흥국가의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 한국형 IP 행정서비스의 의의 및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시 고려사항, (ii) 카타르 및 우크라이나의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iii) 카타르 및 우크라이나의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 방안 도출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 한국형 지식재산 인프라 및 행정서비스 도출

• 필요성

- 한국의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은 시대에 따른 대내외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식재산 제도 및 행정 서비스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크게 4단계로 구분이 가능

단계	내용
제1기 (‘60년대 초~’70년대 후반)	제도의 근대화 및 국내 정착을 위한 노력단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도입)
제2기 (‘7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지식재산 국제체제로의 편입과 국내 인프라의 강화단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착기)
제3기 (‘90년대 초반~2000년대 후반)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단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발전기)
제4기 (2000년 후반~현재)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의 추진단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재도약기)

- 대상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특성, 대상국의 경제 및 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IP 행정서비스를 지원 및 협력할 것인지 검토하여야 필요가 있음

• 한국형 IP 행정서비스의 의의

- 지식재산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재기본법 제3조 제1호)
- 행정 :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
- 행정서비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하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행정사무 자체를 고객지향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

- IP 행정서비스 :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민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특허청 등 정부의 공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특허청이 실시하는 IP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 크게 본다면, ① 심사·심판과 관련된 서비스, ②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서비스, ③ 공정경제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서비스, ④ 지식재산 기반 금융 및 사업 활성화 서비스, ⑤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의미
-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 IP 관리와 행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주요 고려지표는 아래와 같음

주요 고려지표	
IP 행정서비스	1. 특허청의 법적 지위
	2. 특허청의 자율성
	3. 특허청의 주요 기능
	4. 특허청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5. 방식 및 실제 심사
	6. 특허청의 행정서비스의 자동화 및 현대화
	7. IP 출원 및 권리부여
	8. IP에 대한 국내법
	9. TRIPS 준수
	10. TRIPS에서의 유연성(강제 라이선스 및 병행 수입)
	11. 국제 계약, 조약 및 의정서 준수
	12. IP 등록 전문가(변호사 및 대리인)
	13. 지식재산 교육, 훈련, 연구의 진흥

■ 카타르

• 경제 및 산업 현황

- 중동에 위치, 국왕이 통치하고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사우디, UAE, 바레인 및 이란과 인접
- 국토 면적이 적으나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인구 280만명, GDP(세계 6위)
- 한국은 카타르의 15위 수입대상국 이자 2위 수출대상국임

▶ 카타르의 주요 경제 및 산업현황

주요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구	백만 명	2.7	2.7	2.8	2.8	2.9
명목 GDP	십억 달러	152	167	192	193	163
1인당 명목 GDP	달러	57,970	62,830	70,780	70,290	60,898
실질성장률	%	2.1	1.6	1.5	2.0	-4.5
총수출	백만 달러	57,309	67,498	81,571	74,935	75,600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0,081	11,267	16,294	13,037	-
총수입	백만 달러	31,934	30,766	31,696	67,400	67,400
(對韓 수입)	백만 달러	536	436	526	357	-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7,902	1,695	3,523	4,450	-

• 지식재산 현황

- 카타르 국적 출원인으로 전 세계 특허를 검색한 결과 596건(20년 12월 기준)이며, 미국(253건), 유럽(51건)이 가장 많았고, PCT를 통한 출원은 262건으로 조사됨
- 주요 출원인으로 Qatar Foundation (134건), Qatar University(70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Qatar Foundation / Qatar University를 통한 IP창출·사업화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카타르의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특허						상표			
	출원건수			등록건수			출원건수		등록건수	
	R	N-R	A	R	N-R	A	R	N-R	R	N-R
2011			34			3	656	6387	656	6387
2012	6	58	65	-		9	485	6288	485	6387
2013	15	323	69	-		8	797	7182	797	6288
2014	9	477	165	-		11	1405	6203	1168	7182
			163			50				5365
2016	23	548	117			48				
2017	27	574	107	3	35	44	1117	7007	692	7762
2018			160			69				

• 국제지표를 통해서 본 카타르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지재권 보호 관련 법제도 등은 준수한 편임

구분	주요내용			
WEF(지재보호)	5.8(20/138) (2016~2017)	5.8(22/137) (2017~2018)	5.3(27/140) (2018)	5.5(23/141) (2019)
BSA(불법복제)	50%(2011)	49%(2013)	48%(2015)	47%(2017)
USTR(경계수준)	감시대상국(2002)	-	-	-
IIPA(경계수준)	-	-	-	-
PRA(지재권)	6.56/5.50(127개국) (2017)	6.51/5.54(125개국) (2018)	6.27/5.55(129개국) (2019)	6.38/5.55(129개국) (2020)

• 카타르의 지식재산제도

- 카타르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에 가입하고 있고, 특허출원의 경우 GC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중동·아라비아만 연안지역에 있어서의 지역협력기구로서 1981년에 설립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6개국)
- GCC는 경제, 금융, 상업, 관세, 교육, 법률 및 행정 분야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 및 법률을 채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통된 지식재산제도의 채용도 목적의 하나

- GCC 특허청(사우디 리야드, 1992년 GCC 특허규칙이 가결)
 - 현재 특허출원만 가능, 실용신안 및 디자인 제도 X, 상표의 경우 GCC 통일 상표법(2017) 발표되었으나, 각 가맹국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국에 출원
 - 실체심사는 주로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특허청에 심사 위탁
 - 카타르는 특허, 상표, 디자인법이 존재하나, 심사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음
 - 특허법의 경우 제3자의 정보제공제도, 출원공개제도, 출원변경제도, 비밀유지제도 없음
 - 상표법의 경우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제도, 출원공개제도, 비밀유지제도 분할제, 출원변경제도 보유
-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 방안
1. 국가지식재산청의 역할 확대
 - 전통적으로 국가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권리 부여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국가지식재산청은 업무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자신의 역할을 제고
 - (카타르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IP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집중 수행, 무효심판과 정정심판 없고 거절결정불복심판만 존재 → 인력 충원, 기관 규모 확대, 업무 범위 확장 등 검토 필요
 - (한국의 경우) 한국 특허청은 발전된 지식재산 정책, 인력, 운영 시스템을 운영 중
 - (지원 및 협력 방안) 카타르 지식재산청 정책 기능 강화 등 컨설팅 지원 고려
 2. 심사 역량 강화
 -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출원보다는 자국민의 해외 시장 확보, 해외 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 활발 → 산업적 목적의 IP 출원은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 IP 심사 역량 강화, 빠른 권리화 도모 필요
 - (카타르의 경우) 특허국 심사관 5명, 특허국 심사관 10명, 방식/실체심사 모두 수행, 심사기준 및 심사가이드라인 존재 X, 권리화에 장기간 소요
 - (한국의 경우) UAE, 사우디 등에 심사관 파견, 특허심사대행 실시
 - (지원 및 협력 방안) 심사관 파견, 민간전문가 파견, 심사대행 등의 IP 행정서비스 수출
 3.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동화 및 현대화
 - (카타르의 경우) 심사결과 공고, 거절결정 이의신청, 불복심판 청구 등을 특정 장소에 게시, 서면 제출, 등기 우편으로 실시, IP 행정을 수작업 처리, 자동화 시스템이 없음
 - (한국의 경우)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특허넷 개발, 브라질/우즈베키스탄/우루과이/말레이시아/파라과이 등을 대상으로 특허행정 정보화 컨설팅, 전자화시스템 구축, 기술 교육 지원
 - (지원 및 협력 방안) 한국형 IP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컨설팅, 기술 교육 수출

4. 지식재산권법의 현대화

- (카타르의 경우) 2020년 산업디자인 보호법 공포, 하지만 아직 시행규칙은 공포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실용신안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 (한국의 경우) 특허법과 별도로 실용신안법 운용, 선진된 IP 법제도 구축
- (지원 및 협력) 실용신안법제도 수출 고려, IP 법제도 교육/컨설팅 실시 필요

5. 국제 조약, 협약 및 협정에 부합하는 국제화

- (카타르의 경우) 다수의 국제 조약 가입, 국제지식재산 지표 측면에서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경우) 한미 FTA 협정 통해 중앙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마련, 특사경 중심으로 SW 불법복제 수사 및 단속 시스템 구축
- (지원 및 협력 방안) SW 관리 체계에 대한 컨설팅 제공, SW 불법복제 단속 시스템 수출 고려

6.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 제공

- (카타르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IP 인력 부족, IP 창출 인력 22명, IP 경영 인력 18명 → 단기 압축식으로 선진 국가의 IP 교육 시스템 학습 및 도입 필요
- (한국의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987년 개원 이래 국내외 IP 인력 양성, 세계 최초 WIPO 공식 파트너 교육기관 지정, 총 40,55명 외국인 교육생 배출, 2020년 364명 해외 전문가 교육
- (지원 및 협력 방안) 카타르 심사관/심판관/공무원 대상 전문 교육 과정 수출, 심사 컨설팅 제공 필요

■ 우크라이나

• 경제 및 산업 현황

- 유럽과 러시아 사이 위치,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4,200만명 인구 보유
- 그러나 경제성장률 부진, 정치적 불안정성, 재정 적자, 공공부채 높음, R&D 투자 감소
- 어려움 속에서도 IT 산업 고속 성장(수출 5년간 157% 성장), 인증된 과학기술/IT 전문가 보유
- 정부는 IT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정부 지원 디지털 전환 정책(2020 디지털 전략 등) 주력 중

• 지식재산 출원 현황

- IT 산업 발전에 비해 특허 건수가 미비, 상표와 디자인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음
- 반면, 우크라이나 국적 출신 발명자들의 특허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PCT 기준 5,484건을 출원함
-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발명자들이 해외로 유출되어 해외에서 출원 중

▶ 우크라이나 IP 출원 동향(2014-2019)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475	2,356	25,355	26,072	4,962	3,516
2015	2,271	2,226	36,339	22,403	4,294	3,487
2016	2,233	1,862	45,880	23,634	5,382	3,632
2017	2,283	1,764	47,531	24,494	4,954	3,393
2018	2,107	1,861	51,195	25,323	5,261	2,905
2019	2,097	1,755	54,298	25,118	4,660	2,964

• 국제지식재산 지표를 통한 진단: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은 상황

구분	주요내용			
WEF(지재보호)	3.2(125/138) (2016~2017)	3.3(119/137) (2017~2018)	3.4(114/140) (2018)	3.4(118/141) (2019)
BSA(불법복제)	84%(2011)	83%(2013)	82%(2015)	80%(2017)
USTR(경계수준)	우선감시대상국(2018)	우선감시대상국(2019)	우선감시대상국(2020)	우선감시대상국(2021)
IIPA(경계수준)	우선감시대상국(2018)	우선감시대상국(2019)	우선감시대상국(2020)	우선감시대상국(2021)
PRA(지재권)	3.42(123/127) (2017)	4.282(110/125) (2018)	4.432(109/129) (2019)	4.466(105/129) (2020)

• 우크라이나 지식재산제도

- 특허, 실용신안(utility model), 디자인(industrial design),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지식재산으로 보호
- 관련 법령으로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헌법, 민법, 상법, 관세법, 기타 특별 법령 등이 존재(실용신안법 X)
- (특허, 상표)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실체심사, ④ 권리허여 공고, ⑤ 등록의 순으로 진행
- 국가지식재산청은 출원 접수 후 약 2~3개월간 방식심사,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실체심사 진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 (디자인) 법률상 실체심사 X, 형식심사만을 통해 디자인 등록

•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 방안

1. 국가지식재산청의 역할 확대

- (우크라이나의 경우) 2020년 10월 '국가지식재산청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 국가지식재산청의 지위 명문화, 기능 체계화, 그러나 국제지식재산지표 보고서에서 형사 집행 능력 부족 지적 →

형사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수사 및 기소 증가 도모 필요

- (한국의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제도 실시, 상표/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 수사, 검찰 송치
- (지원 및 협력 방안) 우크라이나의 형사 집행 수준 강화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제도 수출

2. 심사 역량 강화

- (우크라이나의 경우) ICT 산업 고속성장 중, 반면 특허 건수는 매우 미비, 심지어 상표와 디자인에 비하여도 현저히 적음 → ICT 분야의 융복합 인재 활용,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허 심사 역량 제고, 기술 혁신 독려, 특허 창출에의 동기 부여 필요
- (한국의 경우) 2019년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 3인 합의형 협의심사 도입, 융복합 인재 양성
- (지원 및 협력 방안) 한국형 ICT 분야 심사 시스템(융복합기술심사국, 3인 합의형 협의심사 등) 수출, 기술 및 법제도 융복합 인재 교육 시스템 수출 고려

3.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동화 및 현대화

- (우크라이나의 경우) ICT 산업 고속성장 중, 범정부적 디지털 정책 실시, 2020 디지털 전략 채택, 디지털 전환위원회 설립, 디지털 전환부 설립, 특히 전자정부 실현 도모 → 그러나 디지털화 대상 영역에 IP는 포함 X,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디지털 숙련도의 부족, 기술 낙후 등으로 디지털 경쟁력 향상에 한계
- (한국의 경우)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특허넷 개발, 브라질/우즈베키스탄/우루과이/말레이시아/파라과이 등을 대상으로 특허행정 정보화 컨설팅, 전자화시스템 구축, 기술 교육 지원
- (지원 및 협력 방안)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 기조와 전자정부에 대한 수요, 그에 비해 부진한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한국형 IP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컨설팅, 숙련된 디지털 기술 수출 고려

4. 지식재산권법의 현대화

- (우크라이나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구조(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그러나 국제지식재산지표 보고서에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시정 권고 받는 중, ① 음악 집단관리기구 문제, ② OSP 책임 조항 부재, ③ 제한적인 특허성 기준, ④ 의약분야 혁신 저해 및 보호 미흡, ⑤ 식물 다양성법 부재
- (한국의 경우) 선진화된 지식재산권법 제도,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 도입(1986년), 시대환경 변화 반영하여 특허심사기준 지속 정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2007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12년)
- (지원 및 협력 방안) 개선이 필요한 법 제도 쟁점에 대한 컨설팅 제공, 법률 전문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필요

5. 국제 조약, 협약 및 협정에 부합하는 국제화

- (우크라이나의 경우) 다수의 국제 조약 가입,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 항목 만점, 그러나 꾸준히 USTR/IIPA 등 국제지식재산지표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 선정, 특히 '저작물 불법 복제 문제(특히 온라인 불법복제) 심각(SW 불법복제율 80%, 세계 평균 2배 이상)
- (한국의 경우) 한미 FTA 협정 통해 중앙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마련, 특사경 중심으로 SW 불법복제 수사 및 단속 시스템 구축
- (지원 및 협력 방안) SW 관리 체계에 대한 컨설팅 제공, SW 불법복제 단속/라이선스 시스템 수출

6.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 제공

-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심각한 불법복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인식제고 활동이 필요, IIPA는 불법복제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캠페인이 부재함을 지적
- (한국의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내외 IP 교육 실시,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 아시아 최초 세계 각국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대상 IP 기본 소양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종사자/대학생/청소년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대학교 협력 체결 IP 교육 실시 등
- (지원 및 협력 방안) 국제지식재산연수원/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과정 및 교육 자료 수출, 대학교 IP 교육 협력 체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의의

제1절 서설	7
제2절 한국의 IP 행정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수출	9
I. 한국의 IP 행정서비스의 발전	9
II. 한국의 글로벌 IP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협력	12
제3절 한국의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시 고려사항	14
I. 대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특성 파악	14
II. 대상국의 IP 행정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	16

제3장

카타르의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제1절 우리나라와 카타르의 관계	33
I. 수교 관계	33
II. 경제협력 관계	34

제2절 카타르 경제 및 산업분석	39
I. 주요 경제·산업 및 정책 현황	39
II. 연구개발(R&D) 및 과학기술정책 현황	50
III. 산업재산(IP) 관점에서의 경제·산업·정책 진단	57
제3절 카타르의 IP 환경분석	64
I. IP 행정 거버넌스 및 지식재산 제도 구축 현황 조사	64
II. 국제지식재산 지표를 통한 분석	85
III.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	95
제4절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 방안	100
I. 서설	100
II. 각 분야별 IP 행정서비스 협력 방안	100
III. 소결	107

제4장

우크라이나의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제1절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111
I. 수교 관계	111
II. 경제협력 관계	112
제2절 우크라이나 경제 및 산업분석	115
I. 주요 경제·산업 및 정책 현황	115
II. 연구개발(R&D) 및 과학기술정책 현황	121
III. 산업재산(IP) 관점에서의 경제·산업·정책 진단	129

Contents

제3절 우크라이나의 IP 환경분석	136
I. IP 행정 거버넌스 및 지식재산 제도 구축 현황 조사	136
II. 국제지식재산 지표를 통한 분석	160
III.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	174
제4절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 방안	180
I. 서설	180
II. 각 분야별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협력 방안	180
III. 소결	187

참고문헌 / 189

표 목차

표 2-1	한국 특허제도·정책의 주요한 변화	9
표 2-2	KIPO의 글로벌 IP 협력 현황	13
표 2-3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별 특성	14
표 2-4	국가 지식재산청의 역량 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	17
표 2-5	케냐 산업재산협회	17
표 2-6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18
표 2-7	지식재산 등록을 수작업으로 수행할 때의 단점	20
표 2-8	인도의 지식재산 자동화	21
표 2-9	실용신안법을 제정한 국가/지역	23
표 2-10	캐나다 지식재산협회	27
표 3-1	한-카타르 외교관계 수립	33
표 3-2	협정 내용	33
표 3-3	한국의 카타르 수출입 동향	34
표 3-4	2020년 한국의 카타르 수출입 품목(2020.8월 기준)	35
표 3-5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	35
표 3-6	한국의 카타르 투자현황	36
표 3-7	카타르 건설시장 수주 실적	36
표 3-8	한국기업 진출 현황	37
표 3-9	주요 경제협력 의제	38
표 3-10	주요 경제지표	39
표 3-11	카타르 연도별 예산 동향	40
표 3-12	항목별 재정 지출 비중 동향	41
표 3-13	자치 환경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43
표 3-14	교통 통신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43
표 3-15	문화 체육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44
표 3-16	교육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44
표 3-17	보건 의료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44

Contents

표 3-18	카타르 태양광 산업 관련 기관	48
표 3-19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세부 내용	49
표 3-20	카타르 재단	51
표 3-21	QNRF 프로그램	52
표 3-22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STP) 개요	54
표 3-23	신재생 분야 R&D 현황	57
표 3-24	카타르 특허출원 현황	59
표 3-25	주요 출원인별 출원건수	59
표 3-26	IDKT IP관련 통계 총괄표	61
표 3-27	IP 보호 관련 건수	61
표 3-28	주요 창업 지원기관	63
표 3-29	카타르가 가입한 주요 국제협약	70
표 3-30	카타르의 주요 IP 법률	71
표 3-31	2019년 WEF 국가경쟁력 주요지수	86
표 3-32	2017년 주요국의 SW 불법복제율	87
표 3-33	2021년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중동·아프리카)	89
표 3-34	2021년 IIPA의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	90
표 3-35	2021년 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	91
표 3-36	2020년 PRA의 국제재산권지수	92
표 3-37	2021년 EC의 제3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93
표 3-38	카타르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정리	94
표 3-39	IP 신청(거주자 + 해외, 지역 포함)과 경제 성장	95
표 3-40	특허출원	96
표 3-41	특허등록	96
표 3-42	실용신안 출원	97
표 3-43	상표 출원 현황(분류별 건수)	98
표 3-44	상표 등록 현황(분류별 건수)	98
표 3-45	산업디자인 출원 중 디자인 건수	99
표 3-46	산업디자인 등록 중 디자인 건수	99
표 4-1	한-우크라이나 외교관계 수립	111

대외협력 - 국가별 환경분석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신흥국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표 4-2	한-우크라이나 정책협의회	111
표 4-3	한-우크라이나 협정	112
표 4-4	한국-우크라이나 수출입 통계	113
표 4-5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10대 수입 품목	113
표 4-6	글로벌 100대 IT 아웃소싱 회사	118
표 4-7	우크라이나 주요기업 현황	119
표 4-8	우크라이나의 2020 디지털 전략 목표	122
표 4-9	우크라이나 디지털 경쟁력 지표(2019, World Economic Forum)	123
표 4-10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제 가속화 시나리오 목표	125
표 4-11	우크라이나 지식재산 현황	131
표 4-12	우크라이나 국적 발명자 현황	132
표 4-13	우크라이나 국적 출원인 현황	133
표 4-14	2019년 유라시아 지역 WEF 국가경쟁력 주요지수	161
표 4-15	2017년 유라시아 지역 주요국의 SW 불법복제율	162
표 4-16	2021년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유라시아 지역)	164
표 4-17	2021년 IIPA의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유라시아 지역)	166
표 4-18	1989-2021년 우크라이나의 감시대상국 지정 연혁	166
표 4-19	유라시아 지역 2021년 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	168
표 4-20	유라시아 지역 2020년 PRA의 국제재산권지수	169
표 4-21	2021년 EC의 제3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유라시아 지역)	171
표 4-22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정리	173
표 4-23	IP 신청(거주자 + 해외, 지역 포함)과 경제 성장	174
표 4-24	특허 출원	175
표 4-25	특허 등록	176
표 4-26	실용신안 출원	176
표 4-27	상표 출원 현황(분류별 건수)	177
표 4-28	상표 등록 현황(분류별 건수)	178
표 4-29	산업디자인 출원 중 디자인 건수	178
표 4-30	산업디자인 등록 중 디자인 건수	179

그림 목차

그림 2-1 지식재산청의 역할	18
그림 3-1 분야별 지출 비중	42
그림 3-2 카타르 산업구조(카타르 중앙은행, 2019)	45
그림 3-3 카타르 국가 비전(Qatar National Vision 2030)	50
그림 3-4 카타르 운영 체계	51
그림 3-5 카타르 국가연구개발 사업(QNRF) 중점 추진 4대분야	53
그림 3-6 카타르 R&D Value chain	54
그림 3-7 QSTP 운영체계	55
그림 3-8 카타르 혁신 체계	55
그림 3-9 타스무 전략 분야	56
그림 3-10 카타르 국적의 특허출원	60
그림 3-11 영역별 R&D 투자 비중	62
그림 3-12 카타르 상무산업부 조직도	65
그림 4-1 카테고리 별 수출 현황	117
그림 4-2 IT 산업 수출 비중	118
그림 4-3 우크라이나 2020전략	120
그림 4-4 2020년 목표 우크라이나 정부의 25가지 핵심 성과 지표(KPI)	120
그림 4-5 우크라이나 특허출원 현황	132
그림 4-6 IPC 별 출원건수	132
그림 4-7 우크라이나 국적 출원인 출원 현황	133
그림 4-8 우크라이나의 주요국 출원 현황	133
그림 4-9 IPC 별 출원동향	134
그림 4-10 주요 출원인 현황	134

대외협력 국가별 환경분석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신흥국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최근 경제적 파트너로서 신흥국¹⁾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라 함)에 대한 협력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IP5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신흥국들 중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을 들 수 있으나, 해당국의 심사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권리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흥국 심사착수 기간으로는 브라질 7.4년, 인도 4.3년, 베트남 3.5년으로 알려지고 있다(2017년 기준).

특히 한류 확산에 편승한 상표 브로커의 상표 선점이라든가, 우리 기업 제품의 모방품 유통 및 부당경쟁행위 등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프라 및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수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신흥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 진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주요 개도국 및 차세대 유망 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전파하고 지식재산권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IP 행정서비스를 더 많은 신흥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프라, IP 법률, 제도, 전략 등을 수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실정에 맞는 IP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최근 부각되는 신흥국들로는 신평방 국가(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평방 국가(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남미 국가(과테말라, 볼리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케냐 등)를 들 수 있다.

2) 특허청, 지식재산 백서, 2020, 222면.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형 IP 행정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하여 신흥국(대상국)의 IP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다양한 문헌을 조사한다. 대상국 관련 경제, 산업현황 등 관련 동향 분석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통하여 대상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IP 환경을 분석한다. 둘째, 대상국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법의 주요 제도를 조사·분석한다.

셋째 대상국의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건수, 주요 출원 기술영역 등을 조사하고, 대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원 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대상국의 경제, 산업, 과학기술 현황 등과 IP 환경을 분석하여 대상국에 수출 가능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평방국가, 신평방 국가, 중등 국가에 대하여 지식재산무역수지, 기술 무역수지를 고려하고, 한국의 IP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였다. 2021년도에는 중등국가 중 '카타르'와 신평방 국가 중 '우크라이나'를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흥국 중 카타르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IP 환경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IP 행정서비스 수출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대외협력 국가별 환경분석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신흥국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제 2 장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의의

제1절 서설

제2절 한국의 IP 행정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수출

제3절 한국의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시 고려사항

제 1 절

서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일반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등 무형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재산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상표권(무체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한 말일 뿐이다. 이는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각 권리는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는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³⁾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최광의로 해석하는 것이며 다양한 지적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는 1호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호에서는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자산을 권리화된 것과 그렇지 않은 정보나 지식 등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Intellectual property (IP) refers to creations of the mind: invention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symbols, names, images, and designs used in commerce. IP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dustrial property, which includes inventions (patents),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 indications of source; and Copyright, which include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uch as novels, poems and plays, films, musical works, artistic works such as drawings, paintings, photographs and sculptures, and architectural designs.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clude those of performing artists in their performances, producers of phonograms in their recordings, and those of broadcasters in their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한편, 행정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하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행정사무 자체를 고 객지향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⁴⁾

행정서비스의 의의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내의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 하면, 행정서비스는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행정적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 다. 행정서비스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정부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통상 정부활동을 통한 공공서비스로 표현하기도 하며, 국가 단위에서 국민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혹은 인적 서비스로 표현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 제는 행정서비스는 정부활동을 통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행정서비스란 기본적으로 공공성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

따라서 IP 행정서비스란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민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특허청 등 정부의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이 실시하는 IP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 크게 본다면, ① 심사·심판과 관 련된 서비스, ②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서비스, ③ 공정경제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서비스, ④ 지식재산 기반 금융 및 사업 활성화 서비스, ⑤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4) 이혁우, 행정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연구, 2015, 국회입법조사처, 6면.

5) 이혁우, 행정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연구, 2015, 국회입법조사처, 6-7면.

제 2 절

한국의 IP 행정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수출

I 한국의 IP 행정서비스의 발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식재산제도 및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크게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⁶⁾

- 제1기: 제도의 근대화 및 국내 정착을 위한 노력단계(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도입기, '60년대 초 ~ '70년대 후반)
- 제2기: 지식재산 국제체제로의 편입과 국내 인프라의 강화단계(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착기, '70년대 후반 ~ '90년대 초반)
- 제3기: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단계(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발전기, '90년대 초반- 2000년 대 후반)
- 제4기: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의 추진단계(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재도약기, 2000년 후반 - 현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2-1 한국 특허제도 정책의 주요한 변화

	특징	주요 IP 행정 및 정책
1	제도의 근대화 및 국내 정착을 위한 노력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도입기, '60년대 초 - '70년대 후반)	1946년: 최초의 특허법(미국정법령 제91호) 마련 1961년: 특허제도로써 골격을 갖추 1973년: 외국간행물 선행기술로 인정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1974년: 한·일 산업재산권 보호 협정

6) 특허청, 한국형 IP 정책 및 행정서비스 수출 모델 구축 및 후보국에 대한 IP 정책 지원방안, 2015, 11~ 20면 참조.

	특징	주요 IP 행정 및 정책
2	지식재산 국제체제로의 편입과 국내 인프라의 강화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착기, '70년대 후반 ~ '90년대 초반)	1977년: 특허청 출범 특허청 직제개정(심판부→심판소로 개편) 1978년: 특허청 소관 예산 성립 특허행정전산화 장기발전계획 승인 1979년: WIPO가입 1980년: 파리조약가입 제1차 특허청 현대화 계획 추진('80~'86) 1981년: 미생물 국내 기탁기관 지정 다항제 도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 가입 특허행정현대화 계획 수립 1986년: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정 1987년: 물질특허도입, 특허기간 연장 국제특허연수원 설립 제2차 특허청 현대화 계획 추진('87~'90) 1988년: 연구원 발명반 지도교사과정 신설 특허관리 특별회계 시행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 1990년: 미생물국제기탁공보정(3개기관) 1991년: 연수원 기업체 임직원 대상 연구과정 체계확립 1992년: 산업재산권 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 수립 특허기술 사업화 상담센터 개소
3	전략적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단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발전기, '90년대 초반- 2000년 대 후반)	1994년: 발명진흥법 제정·공포 제1회 직무발명경진대회 실시 한국발명진흥회 설립 1995년: 특허법개정; TRIPS 조항 반영 특허기술정보센터 설치 1996년: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설립 1997년: (특허청)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특허행정정보 종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개시 운영 대민지원 산업재산권 전문 유료제공 1998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설립 지식재산대약진정책 수립 산업재산권 CD-ROM 발간 개시 특허넷시스템 개발완료 1999년: 특허넷(전자출원시스템) 개통, 온라인 전자출원 개시, 선행기술조사 외부 용역사업 조사 대상확대 1999년: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수행 2000년: 인터넷 기술장터(IP-Mart) 서비스 개시 2001년: 발명진흥회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 200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005년: 국가 R&D 특허조사 의무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 2006년: 심사기간 세계 최단 (9.8개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 특허센터 개소 신속·정확한 심판을 위한 집중심리제 도입, 공공기술평가지원 사업 추진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특허성과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특징	주요 IP 행정 및 정책
		<p>2007년: 특허협력조약 최소문헌인정</p> <p>2008년: 3트랙(3-track) 심사제도 도입 한·미 FTA 반영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소송 절차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p> <p>2009년: 지식재산도시 시범 운영개시(시범도시: 광주 남구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개소 IP 중심의 R&D 전략컨설팅 지원</p>
4	국가차원의 지식재산전략의 추진단계(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재도약기, 2000년 후반 - 현재)	<p>2009년: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을 위해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 마련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를 출범</p> <p>2010년: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본격 개시 지역지식재산센터(전국 31개소 운영) 범부처 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 등 지식재산정책연구 강화</p> <p>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통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설치, 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R&D 전부처로 특허동향조사 대상 확대</p> <p>2012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설립(구) R&D 특허센터) 대학·공공(연) IP-R&D 전략지원사업 산·학·연 대상 표준특허 창출 방법론 전파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 추진</p> <p>2013년: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수립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구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실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법적 근거 마련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도입</p> <p>2014년: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개소 한국특허심사서비스 UAE 수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스마트강의실 개소 한-UAE 특허정보시스템 협력 MOU체결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시장 활성화</p> <p>2015년: 제1회 IP 금융포럼개최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RIPO)에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개통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p> <p>2016년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재권 소송보험 활성화 글로벌 특허행정정보화 선도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실시</p> <p>2017년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실시('17-'21)</p>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강국을 향한 도전 30년,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07~2020)의 내용을 정리

II 한국의 글로벌 IP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협력

한국은 그 동안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와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신평 국가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 중남지미 지역으로 지식재산협력을 강화해 왔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8년 3월 최초로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19년은 한국, '20년 11월 제3회 한·아세안 회담을 지속하여 코로나 시대의 각국의 출원동향, 신규 협력 분야도 발굴하였다.

캄보디아와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등록 특허를 상대국에 심사없이 인정해 주는 '특허인정협력 MOU'를 '19년 8월에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20년 6월에는 라오스, 9월에는 브루나이의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손쉽게 지재권을 취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또한 캄보디아와는 한국인이 현지에 디자인 출원시 3주 안에 등록해 주는 '디자인 신속등록 협정'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심사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⁷⁾

신북방국가인 러시아와는 한·러시아 특허공동심사(CSP)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1년 중 특허 공동심사 MOU 체결을 통해 동 협력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우주베키스탄과는 '19년 4월 지식재산 포괄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두 국가간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된 정보화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컨설팅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의 특허행정서비스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 대행사업을 통해 '19년까지 총 1,685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 및 민간 외화 획득의 성과를 거두었다. '20년에도 4명의 심사관을 파견하여 심사대행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16년 2월에 체결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후속으로 '19년부터 진행된 유지보수사업이 '20년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1년에 추가로 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UAE와의 성공적인 지식재산 협력을 바탕으로 사우디아와의 지식재산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년 6월 한국과 사우디아와의 MOU를 비롯해 3차례 회담에서 한국 특허청과 사우디 지식재산청은 사우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6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기초로 '19년 8월 11명의 한국 지재권 전문가가 사우디 리야드에 파견되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사우디에서 사우디 국가 IP전략 수립, IT 컨설팅, 심사 컨설팅 등을 포함한 지재권 전 분야에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⁸⁾

한편 남미 지재권 연합(PROSUR)의 핵심 국가라 할 수 있는 브라질과는 '19년 10월 체결한 포괄적 협

7)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2020, 222면.

8)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2020, 223면.

력 MOU를 바탕으로 PPH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년 10월 한-페루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하여 한-페루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표 2-2 KIPO의 글로벌 IP 협력 현황

대상별	협력목적	협력 내용	
선진국	특허심사 협력 및 글로벌 현안에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IP5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논의* 주도 * 우리나라 주도과제인 'S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등과 신규협력·제도조화 논의 주도 - 주요국들과 선행기술정보 및 1차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특허공동 심사를 확대*하여 국가간 특허심사기준 조화 추진 * (현재) 한·미 → (확대) 중국('19.1월), 영국('20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신흥·개도국	기업의 원활한 지재권 확보를 위해 협력지역 확대	新남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에 연계하여 ASPEC과 심사협력을 추진하고, 국가별로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 지원 * 아세안 국가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및 교육 사업 제공
		인도·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기업의 특허출원 급증에 대응하여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 시행* 추진 * 심사처리기간 단축 가능성이 있는 인도와는 특허심사 하이웨이와 특허공동심사 병행 추진, 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는 브라질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추진
		사우디·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IP 행정 수출 확대 * (사우디) 'IP 행정시스템 수출 및 컨설팅' 계약 체결('19.2월) 및 특허청 인력파견 추진 (UAE) 지식재산 행정체계 자립을 위한 교육, 제도 컨설팅 추진('19년)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담당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설계·실시 등(KSP 사업)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와 공동으로 전자출원·전자화·검색서비스 등 특허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 교육 지원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개발은행을 통한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 개발 지원
저개발국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제도 도입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캄보디아·라오스 등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ODA(무상 선행기술조사) 및 컨설팅 지원 - KIPO-WIPO 적정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세안 지역 국가 대상 적정기술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 지식재산-ODA 추진

제 3 절

한국의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시 고려사항

I 대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특성 파악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존했던 시기,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도입기술 등 선진기술의 소화·흡수를 통해 기술능력을 축적했던 시기,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독자적 기술역량을 확보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룩한 시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⁹⁾

표 2-3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별 특성

발전단계	기술도입을 통한 공업화 추진	도입기술내재화를 통한 산업발전	독자적 기술역량 확충을 통한 산업 고도화
시기	60년대 초 ~ 7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 ~ 9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 2000년대 중반
주요 기술획득 수단	외국기술의 도입	도입 기술의 내재화	선진기술의 성능 향상
지식의 획득	주의 집중	요소적 지식 획득	구조적 지식 획득
국가혁신 시스템 발전단계	형성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주요 내용	- 연구주체(출연(연) 설립 등)의 형성 - 관련 제도/기구/조직의 형성	- 기업, 대학 등 연구주체의 성장	- 연구주체의 협력 - 관련 제도/기구/조직의 효율화

첫째, 기술도입을 위한 공업화 추진단계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정책의 주요한 수단은 외국기술의 도입이다. 자립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력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도입하는 전략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도입된 설비의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그리고 도입 기술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설립 등 당시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9) 홍사균 외 9,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개도국에의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43면 이하; 특허청, 한국형 IP 정책 및 행정서비스 수출 모델 구축 및 후보국에 대한 IP 지원 방안, 2015. 3면 이하 참조.

둘째, 도입기술 내재화를 통한 산업발전단계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하고 발전시켜 기술집약적 산업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강력한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고, 자체 연구개발능력을 확충함과 아울러 민간부문의 기술개발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셋째, 독자적 기술역량 확보를 통한 산업고도화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시기였으므로,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가 마련되었고,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시기부터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특허서비스가 확충되고, 발명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제도가 강화된 시기이다. 특히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된 시기로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은 노동력 위주의 성장에서 자본 중심의 성장으로,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기에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개량,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축적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핵심은 성장단계에 맞는 과학기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기술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과정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¹⁰⁾ 즉, 산업화 초기에는 선진국으로부터 전적으로 기술도입에 의존하였으며, 이후 도입된 설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역행적 공학을 통해 간단한 기술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도입기술을 소화·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기술능력을 축적하고 도입기술을 국산화하거나 성능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의 수출 대상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국의 경제발전 상황과 보유자원, 인력,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 IP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특허청, 「개도국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IP-Divide 해소방안 연구」, 2013, 51면.

II 대상국의 IP 행정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

1. 서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란 지식재산의 관리와 행정역량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재산의 관리와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3가지 지표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¹¹⁾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표의 관점에서 IP 행정서비스가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고려 지표	
지식재산 인프라 및 행정서비스	1. 특허청의 법적 지위
	2. 특허청의 자율성
	3. 특허청의 주요 기능
	4. 특허청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5. 방식 및 실제 심사
	6. 특허청의 행정서비스의 자동화 및 현대화
	7. IP 출원 및 권리부여
	8. IP에 대한 국내법
	9. TRIPS 준수
	10. TRIPS에서의 유연성(강제 라이선스 및 병행 수입)
	11. 국제 계약, 조약 및 의정서 준수
	12. IP 등록 전문가(변호사 및 대리인)
	13. 지식재산 교육, 훈련, 연구의 진행

신흥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IP 행정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대상국의 IP 행정 역량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지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 지식재산청의 법적 지위

국가 지식재산청(IP office: 지식재산권 사무소, 특허청 등)은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RP)을 관리하고 관련 행정을 수행한다.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이고 법률적인 기반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식재산청들이 흔히 직면하는 몇 가지 까다로운 문제는 다음과 같다.¹²⁾

11) WIPO,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2016, p.11

표 2-4 국가 지식재산청의 역량 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

항목	내용
1. 자율성	정부 부처에 소속된 부서인 많은 지식재산청들은 지식재산청의 성과와 가시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율성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지방의 존재감	대부분의 지식재산청들은 수도에 위치하며, 수도 외의 지방에는 지식재산 담당부처가 많지 않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며 지식재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지식재산권 신청과 관련된 많은 업무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 등록 과정의 자동화와 현대화에 큰 진전을 보였지만, 몇몇 국가는 여전히 지식재산 등록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업무량이 많아진다.
4. 미약한 원조 프로그램	매우 소수의 국가들만 대중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식재산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5. 보호에 집중	과거에 대부분의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의 경제적인 활용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6. 불충분한 인적 자원	정부 부서(department) 내의 하위 분과(division)로서 기능하는 국가 지식재산청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 인적 자원을 꼽았다.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청과 관련된 정부 부서 안에서 다른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때때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부서 내의 다른 분과(지식재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사안을 처리하는 분과)로 인사 발령될 수도 있다.
7.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의 결합	특정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는 역할도 지식재산청이 수행한다. 제한된 인력 때문에 이 서비스의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
8. 실체심사를 수행할 역량의 부족	대부분의 국가 지식재산청은 현재의 지식재산권 신청 현황에 대한 실체심사(실질심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 지식재산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특허 신청의 허가/거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3. 국가 지식재산청의 역할 기능, 구조

(1) 법적 지위

지식재산청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지식재산청은 정부 부서(department) 산하의 분과(division)로서 존재한다. 어떤 지식재산청은 정부의 부처(ministry) 내의 부서(department)로서 존재하며, 몇몇 다른 종류의 지식재산청은 준독립 기관 또는 완전 독립 기관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지식재산청의 운영 구조는 해당 기관 설립의 기반이 된 관련법 안에 규정되어 있다.

표 2-5 케냐 산업재산협회

케냐 산업재산협회(Kenya Industrial Property Institute, KIPI)는 케냐 정부의 무역산업부에 소속된 준국가기관이다. 지난 2001년에 산업재산법(Industrial Property Act)이 발효된 이후, 2002년 5월 2일에 협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이 기관의 전신으로서 케냐법의 Industrial Property Act, CAP 509가 제정된 후 1990년 2월에 설립된 케냐 산업재산청(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 KIPO)이라는 기관이 운영되었다. 이 협회는 이사회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된다. 이 이사회는 Industrial Property Act 2001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협회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권한이 있다. 이 협회의 장은 Managing Director로서, 조직의 모든 업무를 매일 관리할 책임을 맡는다.¹³⁾

12) WIPO,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2016, p.11

13) 케냐산업재산협회 <<http://www.kipi.go.ke/index.php/about>> 참조.

(2)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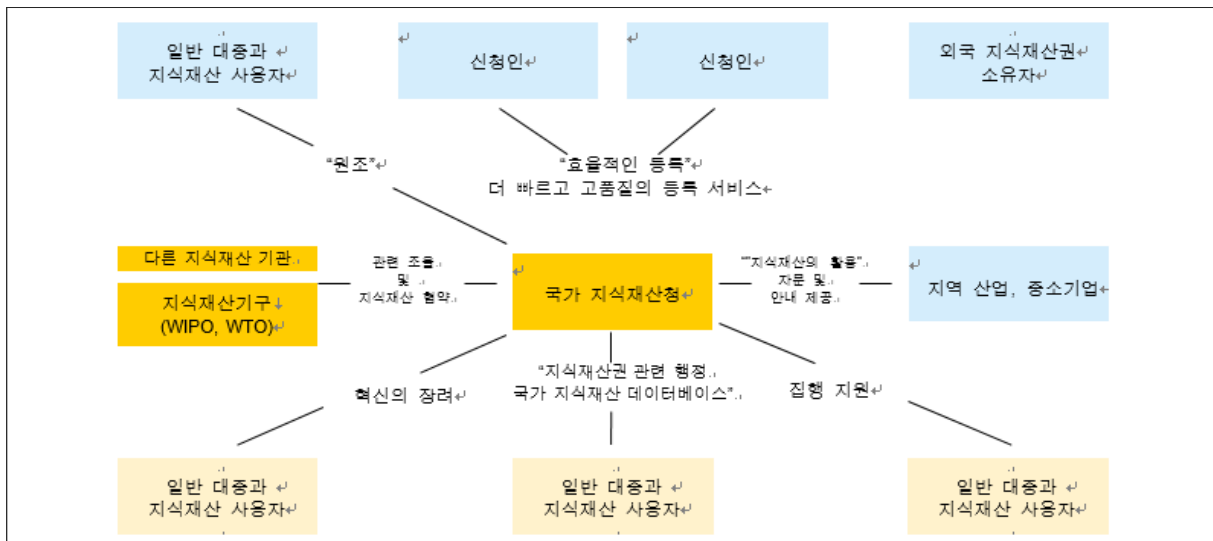
국가 지식재산청이 행사하는 자율성(독립성)의 정도는 해당 국가가 지식재산의 증진에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율성은 국가 지식재산청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i)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는 정책과 전반적인 관리(예를 들면, 성과, 직원 인사, 재무, 법무 등)를 책임진다.
- ii) 서비스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을 소유할 수 있다.
- iii) 필요에 따라 직원을 채용, 훈련, 유지할 수 있다.
- iv)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v) 다른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표 2-6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2001년 4월에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법정 기관(statutory board)으로서 싱가포르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IPOS는 지식재산법을 다루고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주요 정부 기관이다. 또한 이 기관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싱가포르 내 지식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서 급부상함에 따라 IPOS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상업적인 활용을 위한 견실하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¹⁴⁾

그림 2-1 지식재산청의 역할



14) http://www1.ipos.gov.sg/apps/IPOS_2010_2011_AR/index.html 참조.

(3) 국가 지식재산청의 업무 범위

다음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국이 도입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식재산청 업무 방식이다:

- i)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관리하는 지식재산청
- ii)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모두 다루는 지식재산청
- iii) 모든 세 가지 주요 지식재산권(즉, 산업재산권, 저작권과 관련 권리, 식물품종보호권(식물육종권))을 모두 다루는 지식재산청

(4) 국가 지식재산청의 역할 확대

전통적으로 국가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 보호와 지식재산권 부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지식재산청은 자신의 역할을 재고하여 업무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 i) 지식재산의 등록과 보호, ii) 지식재산 원조 서비스, iii) 혁신의 장려, iv) 지식재산 활용의 장려, v) 국제 조약과 협약의 준수, vi) 관련 집행 활동의 지원

대한민국 특허청(KIPO)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행정의 책임을 맡은 기관이다.

- i) 보호: 지식재산의 조사와 등록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 디자인)
- ii) 특허 심판원: 지식재산(특허) 분쟁에 대 청문 수행
- iii) 특허 정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의 관리 및 배포
- iv)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발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임
- v) 국제적 의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
- vi) 훈련: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훈련

위에 언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이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산하 기관을 운영한다.¹⁵⁾

(5)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일부 지식재산청은 방식심사(formal examination)만 수행하며,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는 다른 지식재산청과 같은 다른 관청에 아웃소싱을 준다. 예를 들어 영어권에 속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15) 대한민국 특허청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eng.main.BoardApp>>

국가의 지식재산청은 상표 신청에 대한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모두 수행하지만, 특허 신청에 대한 실체 심사를 수행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가용 인력이 제한적이고 특허 신청 건수가 적기 때문이다. 대신 이 지식재산청들은 아프리카 지식재산 협력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에 이러한 서비스를 위탁한다. 그러므로 특허 신청 건수가 증가한다면 각국은 자체적인 실체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4. 국가 지식재산청의 행정서비스의 자동화와 현대화

대부분의 국가의 지식재산청에서 겪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지식재산권 신청 과정에서 경험하는 낮은 효율성으로서, 결국 이것은 신청 처리를 수작업으로 처리함에 따라 나타나는 직접적인 결과이다. 대부분의 지식재산청은 처음에 수작업 지식재산 시스템으로 시작하였으며 (혹은 여전히 이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하여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업무가 밀리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 지식재산 심사는 지식재산권 신청의 느린 처리, 업무의 지연, 관료주의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고 있다. 지식재산권 신청 프로세스와 절차를 자동화한 국가 지식재산청은 서비스 제공과 수익의 측면에서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국가 지식재산청은 업무 자동화를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최우선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표 2-7 지식재산 등록을 수작업으로 수행할 때의 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효율적이고 느리며 많은 시간을 소비 2) 지루하고 과중한 업무 3) 파일 분실의 위험 4) 서류 작업과 종이의 낭비 5) 실수 또는 부정확한 정보 기록 6)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역량의 부족

개발도상국의 많은 지식재산청들은 업무 과정의 자동화를 최우선사항으로 간주하였으며, 많은 지식재산청이 자동화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¹⁶⁾ 2001년에 WIPO는 업무 처리 과정의 단순화와 자동화를 통해 지식재산 등록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자동화 지원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3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및 중간 규모의

16) http://www.wipo.int/ip-development/en/automation/ip_institutions.html

지식재산기관(지식재산청)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자동화 지원에는 자문과 지침 제공, 필요성 평가, 인프라 업그레이드, 훈련을 위한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 지식 전달과 기술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포함된다.

WIPO의 자동화 지원 전략은 각종 지원과 가용 자원 조달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청들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점, 각 지식재산청의 업무 특성과 업무량, 각국 지식재산법, 각국 지식재산청의 규칙과 업무 절차, 해당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하는 역량 등을 고려한다. WIPO 자동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아프리카 국가로는 보츠와나, 케냐, 시에라리온이 있다.

표 2-8 인도의 지식재산 자동화

관련 서류 제출부터 허가 발급까지 전자 행정을 도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 26,000 개의 문서 발행 업무 지연 해소
- 검색 가능한 저널의 자동 발행 시스템이 도입되어 특허 자료 더욱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허증 발급 허가의 자동 발행
- 온라인으로 특허 출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다음과 같은 성공을 거두었다:

- 특허 출원이 4,800건(1999 ~ 2000)에서 39,400 건(2010 ~ 2011)으로 증가
- 상표권 출원이 40,000건(1999 ~ 2000)에서 179,00 건(2010 ~ 2011)으로 증가
- 평균 조사 시간이 다음과 같이 감소:
- 특허 조사 시간은 4 ~ 5년(이전)에서 2 ~ 3개월(이후)로 감소, 상표권 조사 시간은 2 ~ 3년(이전)에서 2 ~ 3개월(이후)로 감소
- 신청서의 제출과 신청을 저널 발행 방식이 기존의 수동 제출 방식에서 각각 e-filing 방식과 e-publication 방식으로 변경되었다.¹⁷⁾

5.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다음 세 가지 지표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i)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재산권 신청(특허 출원)의 건수와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선진국의 신청 및 허가 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 ii) 개발도상국에서 접수된 신청과 허가된 지식재산권 중에서,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개인/기업의 신청 수는 외국-기반 개인/기업의 신청률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다
- iii) 지역 기반 개인/기업의 신청의 성공률(정해진 기간 동안의 지식재산권 신청의 횟수 대 지식재산 허가의 비라고 정의함)은 외국인 신청자의 성공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것의 주 원인은 신청 초안의 낮은 품질 때문이다.

17) 2011년 11월 9-10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가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WIPO 지역 심포지엄에서 Dhumane WM의 “인도의 지식재산 전략” 강연 내용 중 일부임.

6. 국가의 지식재산권법

(1) 지식재산권법의 범위

이 지표는 각국의 지식재산법 개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들을 다루는 법의 제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이다.¹⁸⁾ “발명”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거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일컫는다. 특허는 그것의 소유자에게 발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 보호는 제한된 기간 동안 허가되며, 대개 이 기간은 20년이다. 특허 보호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발명품을 상업적으로 제작하거나 이용하거나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허권은 대개 법원에서 집행된다. 법원은 특허 침해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특허 소유자는 해당 발명이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특허 받은 발명을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정할 권리가 있다. 특허 소유자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허가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특허 소유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다른 이에게 판매할 수도 있으며, 구매자는 이 특허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다.

1) 특허

특허는 개인의 창조성을 인정하여 주거나 그들의 판매 가능한 발명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각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혁신을 독려하며,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특허 보호의 대가로서 모든 특허 소유자들은 전 세계의 기술적 지식의 풀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발명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증가하는 공공 지식은 많은 사람들의 창조성과 혁신을 더욱 독려한다. 특허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연구자들과 발명가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와 영감을 제공한다.

2) 실용신안

실용신안(소특허 또는 실용 혁신으로도 불림)은 특허권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못하지만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KIPO, 1998).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재산 시스템에 실용신안을 포함시키는 주목적은 특히 소규모 및 중간 규모 기업과 비공식 부문에서 지역의 혁신역량이 빠르게 발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18) What is a pat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http://www.wipo.int/ebookshop>

표 2-9 실용신안법을 제정한 국가/지역

실용신안법을 제정한 국가/지역의 예¹⁹⁾: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칠레, 중국, 콜롬비아, 덴마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스페인,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3) 디자인

디자인은 물건의 장식적 측면 또는 심미적 측면을 보호한다.²⁰⁾ 디자인은 물건의 형태 또는 표면과 같은 3차원적 특징으로 구성되거나, 패턴, 라인, 색상과 같은 2차원적 특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산업 디자인은 다양한 종류의 산업 및 수공예 제품에 적용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술적 도구나 의료 기구, 시계, 보석류, 사치품, 가정용품, 전기 가전, 차량, 건축 구조물, 직물 디자인, 레저용품 등이 있다. 대부분의 법에서 산업 디자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디자인의 심미적인 측면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산업 디자인은 주요 특성은 심미성이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그것이 적용되는 물건의 기술적인 특징은 보호하지는 않는다. 산업 디자인은 어떠한 물건을 더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품의 상업적 가치와 시장성을 높인다. 어떠한 산업 디자인이 보호를 받는 경우, 그것의 소유자는 제3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디자인을 복제하거나 흉내 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투자에 대한 공정한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산업 디자인 보호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과 정직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창조성을 독려하고, 더욱 미적으로 매력적인 제품을 장려함으로써 소비자와 공공에 이익을 제공한다.

4) 상표

상표(trademark)는 특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해 생산되거나 공급된 제품임을 확인시켜 주는 고유의 표지이다.²¹⁾

상표 시스템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구매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고유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품질이 (해당 상표에 명시된 대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거나 금전을 대가로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상표 사용을 허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상표 보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불하여 상표권을 갱신함으로써 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19) www.ladas.com/Patents/PatentPractice/PettyPatents/PettyP05.html

20) What is industrial desig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http://www.wipo.int/ebookshop>

21) What is a trademark?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http://www.wipo.int/ebookshop>

상표 보호는 법원에 의해 집행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원은 상표 침해를 막을 권한이 있다. 더욱 폭넓은 의미에서 상표는 그 소유자에게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이윤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진취성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한다. 상표 보호는 불공정한 경쟁자들이 (예를 들면 위조범) 시장의 약자들의 상표 또는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억제한다. 이 시스템은 기술과 진취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을 진흥한다.

일부 국가는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등록을 제공한다. 단체 표장(collective mark)은 대개 기업들의 그룹 또는 협회가 소유한다. 이러한 그룹 또는 협회의 멤버들에게는 단체표장의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단체표장은 협회 멤버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단체에 속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증표장(certification mark)은 이 표장을 부착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지정된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저작권 및 인접권

저작권(copyright)은 어문 저작물 및 예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설명하는 법률 용어이다.²²⁾

6) 영업비밀

영업비밀(trade secret)은 연구, 비즈니스, 상업, 산업에 사용되는 비밀 데이터, 정보, 편집본으로 구성된다. 대학교와 연구개발(R&D) 기관, 정부 기관, 기업체, 그리고 개인은 영업 비밀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Cornish, 1995). 이 정보는 과학 기술 비밀 자료나 공개되지 않은 비즈니스, 상업, 재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영업비밀은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 또한 영업 비밀은 일종의 노하우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업비밀의 사례로는 코카콜라의 제조 공식이 있다. 이 제조공식이 특허를 받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법은 발명의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코카콜라 제조공식의 비밀을 개인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발견한 모든 사람은 이 발견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코카콜라사는 이 사람들이 이 발견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어떠한 법적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22) What is a trademark?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http://www.wipo.int/ebookshop>

(2)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현행 법률의 범위

이 지표는 기존의 국가 지식재산법이 TRIPS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조건을 준수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이것은 최빈개도국(LDC)를 비롯하여 아직까지 TRIPS에 맞추어 자국의 지식재산법을 개정하지 않은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의 벤치마킹은 TRIPS 준수를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 얼마나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감안한다.

7. 국제 조약, 협약, 협정

한 국가의 지식재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조약은 다양하다. 이러한 조약 중 대부분은 WIPO가 관리한다. 조약에 가맹하는 국가적 결정은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자문 과정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전략에 특정 조약, 협정, 협약에 대한 가맹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약 가맹은 지식재산 시스템의 개발 수준과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적 역량을 직접적으로 가늠하기 위한 기준이다. WIPO가 관리하는 조약과 협정에 대한 가맹은 WIPO의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에게 조약 가맹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정과 조약은 WIPO 사무총장이 모든 회원국의 정부에게 해당 국가의 가맹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한 국가가 국제 협약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 i) 지식재산에 대한 특정 국제 협약이 국내법, 문화의 융성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지나치게 위배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 ii)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 협약과 해당 협약에 가입하려는 국가의 잠재적 이익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iii)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 협약과 협정이 혁신과 브랜드 정체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8. 불공정 경쟁 및 반독점법

시장 경제 시스템을 수립한 모든 국가는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몇 가지 종류의 안전장치를 고안하였다. 모든 파리협약 회원국들은 적어도 기존의 일반법을 기반으로 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 거래에 반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대중을 호도하는 행위 또는 경쟁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불공정 경쟁 및 반독

점법”의 제정 목적은 정직한 방식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반독점법의 목표는 창조자의 권익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9. TRIPS의 유연성 조항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의 중요한 유연성(flexibility) 조항은 다음 네 가지이다.²³⁾

i) 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e): 이것은 보호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메커니즘이다. (강제실시권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부 또는 제3자가 상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이다.) 이때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상은 대개 로열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허 받은 발명의 사용에 대하여 도하 선언에서 명시한 대로, 강제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는 분야가 TRIPS 협약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유연성 조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이 권리는 공공 보건과 같이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부여될 수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의 특허법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ii) 병행 수입 (parallel imports): 기업들은 대개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어떤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의약품의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한다. 다시 말해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서 특허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것을 수입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고가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특허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많은 국가의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일단 자신의 상품을 어떤 국가에서 판매를 하였다면, 특허권자에게는 이러한 상품의 재판매를 통제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규정한다. 법률 용어로,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허 소유자의 재산권은 ‘소진(exhausted)’ 된다. 특허권자는 제품 제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지만,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이미 판매한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은 한 국가에서 제약회사가 설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특허 의약품을 구매한 다음, 다른 국가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제약회사가 특허 의약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격보다 더 저가로 공급할 수는 없다. 이것을 소위 “병행수입”이라고 한다.

iii) 불라 조항 / 일반적 예외 (Bolar provision / regular exception): 이 조항은 특허의 법적인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제네릭 제품(generic product)에 대한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 소유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 받은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조항 덕분에 특허가 만료된 후에 제네릭 제품이 시중에 더 빨리 공급될 수 있으며, 결국 더 저렴한 의약품의 구입이 더 용이하게 된다.

23) 2013년 6월 11일에 이루어진 TRIPS를 위한 council의 의사결정 (IP/C/64).

iv)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면제: 2005년 11월에 WTO TRIPS Council은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TRIPS 협약에 대한 의무 준수 국가로의 전환 기한을 2021년 7월까지 연장하였다 (비차별적 처우에 대해 규정한 조항은 제외). 2002년 6월의 TRIPS Council의 결정에 따라 이행되는 도하 선언의 Paragraph 7은 특별히 의약품을 지정하여 특허를 승인해야 할 최빈개도국의 의무를 면제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까지 비공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최빈개도국의 의무 또한 면제하였다. 그리고 TRIPS 협약의 Article 66/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최빈개도국의 요청 시에 이러한 전환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TRIPS에서 제공하는 법적인 선택권과 유연성 조항을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10. 지식재산청의 인적 자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지식재산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평가 과정을 통해 자격이 인증된 전문가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모든 국가 지식재산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11. 지식재산 등록 업무 (지식재산 변호사 /변리사 및 대리인)

현재 많은 국가들은 관련 등록 및 인정 과정을 통해 지식재산(특히) 변호사/변리사 및 대리인의 업무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또한 이 국가들은 자체적인 규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협회 설립을 독려한다. 몇몇 국가에서 국가 지식재산청은 공인된 지식재산 변호사(변리사)와 대리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하고 있다.

표 2-10 캐나다 지식재산협회

캐나다 지식재산협회(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of Canada, 이하 IPIC)는 캐나다와 해외의 1,800 이상의 멤버들로 구성된 국가 협회이다. IPIC는 거의 모든 특허 대리인, 상표 대리인,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캐나다 유일의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이다.

12. 지식재산 교육, 훈련, 연구의 진흥

(1) 지식재산 교육, 훈련, 연구 진흥의 목표

지식재산 교육, 훈련, 연구의 진흥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실행의 일환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지식재산 교육, 훈련, 연구는 모든 개발도상국가가 실행하기를 원하는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래의 지식재산의 창출자 및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지식재산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지식재산 훈련, 교육, 연구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하다.

i) 기본 조사에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 지식재산 전략에 전략적 목표로서 포함된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 공급자를 양성한다. 여기에는 아래 표에 명시된 다섯 가지 분야가 포함된다.

	지식재산 시스템의 요소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가
1.	지식재산 생성의 지원	기술 이전 관리자
2.	지식재산 보호의 지원	지식재산 변호사(변리사), 특허 명세서 작성자, 지식재산 조사자
3.	지식재산 상용화의 지원	지식재산 평가, 지식재산 심사, 지식재산 라이선스 발급, 지식재산 마케팅과 협상
4.	지식재산권 집행의 지원	지식재산권 집행관, 판사, 변호사, 경찰, 세관 공무원
5.	대학교를 비롯한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의 교육 지원	지식재산 강사와 교사

ii) 혁신과 창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래의 지식재산 창출자들과 사용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자/사용자로는 청년, 여성 발명가와 창작자, 여성 기업가, 대학의 법학 전공 학생, 대학의 과학, 기술, 경영 전공 학생, 비공식 부문 (informal sector)을 포함한 소규모 및 중간 규모 기업, 대학교와 연구기관의 강사 및 학자 등이 있다.

(2) 지식재산 훈련, 교육, 연구 전략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

지식재산 훈련,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커리큘럼, 지식재산 학부, 교육 자료 및 교수 방법이라는 다섯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1) 전문가의 수

이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양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범위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에 대한 요구조건은 기본 조사를 통해 정한다. 필요한 전문가의 실제 수는 전략 계획에서 규정한다.

2) 지식재산 커리큘럼의 선택

다양한 학생들이 지식재산 훈련과 교육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혜택을 받는 학생에는 경영, 법, 순수미술, 공학, 기술, 과학, 신문방송학과의 학생들이 포함된다. 현재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흔하게 적용된다. 첫째, 거의 모든 경영 교육 프로그램은 지식재산의 기초에 대한 몇 가지 교육을 포함한다. 둘째, 기본적인 법학 학위 프로그램은 지식재산법의 철학과 응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재산 수업을 제공한다. 셋째, 특별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LL.M 과정)을 통해 지식재산법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더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특별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 실무의 세 가지 측면을 다룬다.

- i) 지식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특성과 범위
- ii)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등록 과정
- iii) 지식재산권 획득 후 지식재산권을 보호와 집행 과정

경영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지식재산의 보호를 통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위의 첫 번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상적으로 법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한 모든 세가지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예: LL.M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대개 지식재산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식재산법의 법적인 기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관심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3) 지식재산 학부

이상적인 상황은 한 학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전일제 지식재산 강사와 교수들이 지식재산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학원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파트-타임 강사로서 지식재산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4) 교육 자료 및 교수 방법

이상적인 상황은 지역 문화, 개발에 대한 열망, 경제 개발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례 연구와 이웃 국가의 사례를 담은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제공되는 교육 자료들은 수정하거나 각색할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지식재산 기관이 개발하여 발표한 기존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외협력

국가별 환경분석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신흥국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제 3 장

카타르의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 제1절 우리나라와 카타르의 관계
- 제2절 카타르 경제 및 산업분석
- 제3절 카타르(Qatar)의 IP 환경분석
- 제4절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 방안

제 1 절

우리나라와 카타르의 관계

I 수교 관계

한-카타르 양국은 1974년 4월 수교 이래 에너지·건설 등 경제 분야 중심의 관계에서 최근에는 협력 분야 다변화를 위해 투자, 보건의료 등 비에너지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²⁴⁾

표 3-1 한-카타르 외교관계 수립

- 1971.9 우리정부, 카타르 승인
- 1974.4 한·카타르 수교
- 1976.10 주카타르 대사관 개설
- 1992.3 주한 카타르 대사관 개설
- 2007.3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 2012.2 이명박 대통령 카타르 방문
- 2015.3 박근혜 대통령 카타르 방문
- 2019.1 타임 국왕 방한

양국 간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 기술협정에서 최근에는 군사협정으로 양 국가간 협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표 3-2 협정 내용

협정	발효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	1984.4월 서명, 1984.6월 발효
문화협력협정	1987.7월 서명, 1988.6월 발효
투자보장협정	1999.4월 서명, 1999.5월 발효
항공협정	2005.11월 서명, 2009.2월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정	2007.3월 서명, 2009.4.15 발효
군사협력협정	2014.11월 서명, 2016.2월 발효

24)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95&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C%B9%B4%ED%83%80%EB%A5%B4%EA%B5%AD\)](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95&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C%B9%B4%ED%83%80%EB%A5%B4%EA%B5%AD)))(검색:2021. 4. 30.)

II 경제협력 관계

1. 교역 동향²⁵⁾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1984.4월), 투자보장협정(1999.4월), 항공협정(2005.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2007.3월)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하였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카타르의 15위 수입대상국이자 2위 수출대상국이다. 2020년 8월 기준 한국의 對카타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젝트 중단 및 소비 시장 위축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약 2억 1,500만 달러 기록하였으며, 수입 규모는 에너지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40% 감소한 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3-3 한국의 카타르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8월)
수출	536 (△20.5%)	435 (△18.7%)	526 (△20.8%)	357 (△32.1%)	215 (△13.4%)
수입	10,081 (△38.8%)	11,267 (11.8%)	16,294 (44.6%)	13,037 (△20.0%)	5,447 (△39.8%)
무역수지	-9,545 (△39.6%)	-10,832 (13.4%)	-15,773 (45.6%)	-12,680 (△20.0%)	-4245 (△35%)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류, 산업 기자재, 석유화학 제품 등이며, 2020년 8월 기준 1위 수출품목은 코로나19에 따른 진단키트가 수요 증가로 2,300만 달러 규모로 수출돼 전년 대비 758% 증가하였다.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MTI713) 수출은 코로나19로 가정 및 산업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개선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400만 달러 기록하였다.

2020년 4월 카타르 정부 주도의 일부 프로젝트 추진 연기 결정에 따른 영향으로, 건설중장비, 지게차, 부품류 등을 포함하는 건설광산기계(MTI725)와, 고압 케이블, 변압기 등을 포함하는 전력 용기기(MTI725)는 각각 1,100만 달러 규모로 수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 원유,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등이며, 2020년 8월 기준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 규모는 약 49억 달러로, 한국의 대 카타르 수입 규모의 약 90% 차지하고 있다.

25) kotra, 2021년 카타르 진출전략 보고서, 2021, 27-31면 참조(<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18&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4&row=10>)(검색 2021.6.30.)

원유제품(MTI133) 수입은 약 3억 6,400만 달러로, 나프타(MTI133400) 3억 6,000만 달러, 윤활유(MTI133600) 425만 달러로 조사되었다.

표 3-4 2020년 한국의 카타르 수출입 품목(2020.8월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수입 품목						수출품목					
	MTI	품목	금액	비중	증감		MTI	품목	금액	비중	증감
1	229	기타정밀 화학제품	23	11	758.1	1	134	천연가스	3,122	57	△37.8
2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4	7	102.5	2	131	원유	1,760	32	△30.3
3	741	자동차	12	6	△68.3	3	133	석유제품	364	7	△68.7
4	841	전력용기기	11	5	△63.7	4	621	알루미늄	86	2	△29.7
5	711	원동기 및 펌프	11	5	96.7	5	228	정밀화학원료	43	1	84.3
6	725	건설광산기계	11	5	△30.6	6	231	질소비료	22	0	△53.3
7	133	석유제품	9	4	2.7	7	214	합성수지	19	0	△10.2
8	746	선박해양 구조물및부품	9	4	△23.7	8	622	동제품	9	0	△41.2
9	835	건전기 및 축전지	9	4	11.1	9	219	기타제품 화학제품	6	0	4.5
10	214	합성수지	9	4	△17.6	10	835	폐축전지	5	0	376
기타			97	45		기타			11	0	
합계			215	100	△13.4	합계			5,447	100	△39.8

2. 투자 진출 현황

2020년 6월 누계 기준 카타르 진출기업은 총 92개 사(누적 신고금액 총 1억 달러)이며, 1위 진출 분야는 건설업으로 누적 41개 사 진출 및 신고금액 6,473만 달러이다.²⁶⁾

표 3-5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

(단위: 천달러)

업종	누계 (1968~2020년 6월)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건설업	41	64,732
사업시설관리, 사업자원 및 임대서비스업	6	17,070
제조업	18	11,612
도매 및 소매업	16	4,756
부동산업	2	3,0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2,98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2,820
정보통신업	1	2,434
예술,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1	40
합계	92	109,521

26) 자료: 수출입은행

카타르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2009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8건으로, 투자 금액은 약 79.4만 달러(2018년 9월 기준) 기록하고 있다.²⁷⁾

표 3-6 한국의 카타르 투자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천달러)
총계	255	91	102,776	327	70,980
1968~2008	61	33	21,763	65	10,396
2009	30	8	21,826	35	22,993
2010	11	3	15,772	21	17,835
2011	22	7	7,471	25	1,861
2012	16	9	5,364	22	2,101
2013	22	12	3,650	30	3,247
2014	25	3	4,330	33	2,990
2015	34	5	11,008	36	5,227
2016	19	6	3,808	27	1,569
2017	10	4	7,248	22	2,568
2018	5	1	536	11	193

3. 건설 및 플랜트 수주 현황

1976년 카타르 제철소 공사로 첫 수주를 시작한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 누적계약 금액은 260억 달러(112개 사 127건) 기록, 158개 국가 중 8대 수주 대상국이다.²⁸⁾

표 3-7 카타르 건설시장 수주 실적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건, 억달러)
건수	82	6	8	10	5	2	10	3	126
금액	14.9	18.4	27.5	16.7	21.3	4.7	14.3	2.3	228.0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철도) 도하메트로 레드라인 남부 구간 지하(GS건설 : 5억 달러), 도하메트로 레드라인 건설(SK건설 : 10억 달러), 메트로 레드라인 북부 구간 고가 및 지상공사(롯데건설 : 1억 달러), (도로) E-Ring Road 남북 연결 구간 공사(대우건설 : 6억 달러),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패키지 1(현대건설 : 13억 달러), (경기장) 알투마마 경기장 설계(희림종합건축 : 0.2억 달러), (발전담수) Facility D IWPP(삼성물산 : 18억 달러) 등이다.

27) 2018.9 신고기준(한국수출입은행)

28) 2018.9 신고기준(해외건설협회)

4. 우리기업 진출 현황

현대건설, 효성, GS건설, SK건설, LS전선, 삼성물산, LG CNS, 해안건축, 희림 건축 등 도로, 건축 설계 등 관련 14개사가 진출하여 활동 중이며, LG전자, 삼성전자, 현대리바트 등 전자제품을 비롯한 소비재 관련 지점이 개설되어 영업 중이다.²⁹⁾

표 3-8 한국기업 진출 현황

연번	회사명	진출연도	분야	비고(주요 프로젝트)
1	현대건설(주)	1978	건설 공사업	카타르 국립박물관 건설 등
2	GS건설	1999	건설 공사업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 건설 등
3	대우건설	2005	건설 공사업	E-Ring 로드 고속도로 건설 등
4	삼성물산	2002	건설 공사업	Facility D IWPP발전 담수프로젝트등
5	SK건설	2008	건설 공사업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 건설 등
6	효성중공업	2008	전력기자재	전력망 확충 변전소 건설 등
7	LS전선	2012	전력기자재(전선)	전력망 확충 초고압 케이블 공급 등
8	대한전선	2020	전력기자재(전선)	태양광 발전소 초고압 케이블 공급등
9	LG전자	2014	전자제품	가전제품 판매 및 공급
10	현대로템	2015	플랜트	알다키라하수처리장 건설
11	한화테크윈	2015	보안, 통신장비	므셰이렘 스마트시티
12	LG CNS	2016	정보통신	도하 메트로 스크린 도어
13	삼성전자		전자제품	가전제품 판매 및 공급
14	현대리바트	2012	가구	가구 판매 및 공급
15	희림건축	2017	건축설계	알투마마 월드컴 경기장 설계
16	STX 엔진	2019	선박엔진	국영 조선사 LNG선박 유지 보수 계약

29) kotra, 위의 보고서, 23면 이하 참조.

표 3-9 주요 경제협력 의제

분야	협력내용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공항, 항만, 발전·담수, 메트로, 의료시설 등 프로젝트 참여 및 기자재 공급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리조트, 상업 시설 등 관광 인프라 건설 및 기자재 공급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가스전 LNG 증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액화트레인 및 관련 육해상 설비 프로젝트 참여 및 기자재 공급 •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이용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등 에너지 효율화 수요 대응 • 에너지 분야 현지화 정책 타우틴(Tawt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분야 입찰 참가 관련 현지화 요건 ICV(In-Country Value) 대응
정보통신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 타스무(TASMU, Smart Qatar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물류, 환경, 보건 의료, 스포츠 등 5대 분야 사업제안 및 프로젝트 참여 •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언택트(Untact) 기술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관련 기자재 및 솔루션, 무인 서비스 등 언택트 기술 협력 • ICT 서비스 콘텐츠 및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 서비스 개발(아랍어 전환 및 이슬람 문화 적용), 5G 콘텐츠 및 시범사업 추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공급망 조성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에너지 등 유망 분야 생산 설비 도입 및 합작투자(JV), R&D 수요 대응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운반선 신조·개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증산에 따른 운반선 100척 도입 및 기존 보유 LNG선 유지 보수 수요 대응(서비스 공급계약, 조선 기자재 납품, 중 소 조선사 수주 활동)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정책(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수출, 스마트팜 기술 및 농업 기자재, 식량 공급망 관리 솔루션 제안
보안/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비 보안·치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제품 및 기자재 공급, 사이버 보안 구축 협력, 치안 분야 인력 교류
보건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K-방역 제품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키트, 개인보호장비(PPE), 원격 진료, G2G-B2B 보건 의료 교류 협력 - 병원 진출, 환자 송출, 의료인력 교류, 장애 지원협력(보조공학기기)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및 농수산물 등 유망 소비재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위주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및 기자재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발생한 원격 교육 수요 대응(이러닝 플랫폼 및 콘텐츠 등) - 아랍어 및 현지 문화 적용한 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수출 제안

제 2 절

카타르 경제 및 산업분석

I 주요 경제·산업 및 정책 현황

1. 경제 및 산업 현황³⁰⁾

카타르는 코로나19 확산 및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2020년 4.5%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전망되나 ① LNG 증산 프로젝트 본격화, ② 2022 카타르 월드컵 D-1년 막바지 준비, ③ 외국인 투자 개방 정책 추진으로 2021년 2.5%의 경제 성장 전망하고 있다.

표 3-10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백만 명	2.7	2.7	2.8	2.8	2.9
명목GDP	십억 달러	152	167	192	193	163
1인당 명목 GDP	달러	57,970	62,830	70,780	70,290	60,898
실질성장률	%	2.1	1.6	1.5	2.0	-4.5
총수출	백만 달러	57,309	67,498	81,571	74,935	75,6000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0,081	11,267	16,294	13,037	-
총수입	백만 달러	31,934	30,766	31,696	67,400	67,400
(對韓 수입)	백만 달러	536	436	526	357	-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7,902	1,695	3,523	4450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상) 상반기 누계, 대한(對韓) 수출입 규모는 2019년 9월 누계 기준 자료 : IMF, EIU, UNCTAD, PSA, KITA

30) kotra, 2021년 카타르 진출전략 보고서, 10면 이하 참조.

(1) 카타르 2021년 재정 현황³¹⁾

카타르의 2021년 예산은 재정 수입 440억 달러, 재정 지출은 535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95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표 3-11 카타르 연도별 예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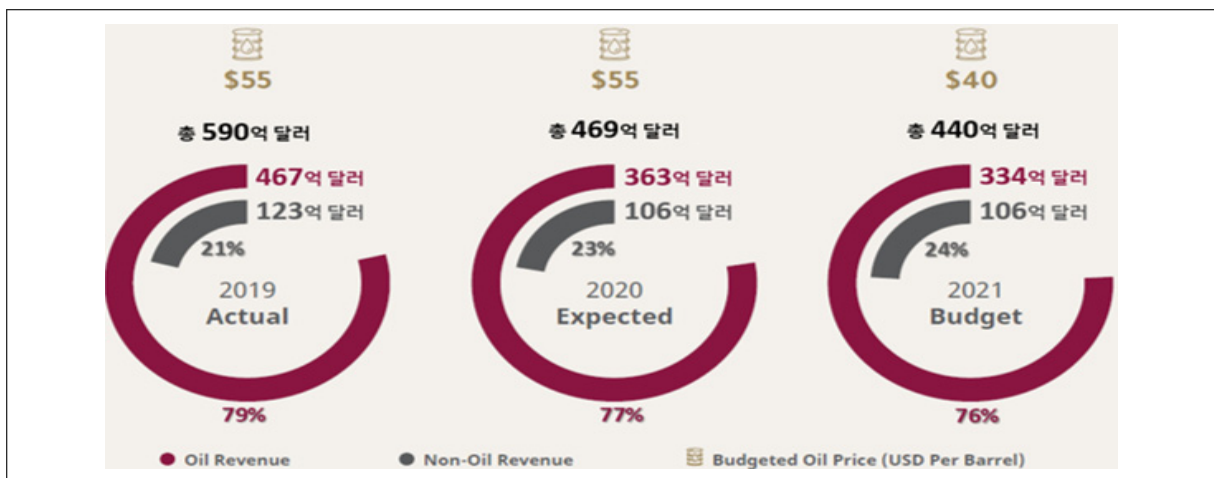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재정수입	448.5	571.2	590	579.7	439.8	△24.1
재정지출	558.4	529.8	568	578.3	534.9	△7.5
재정수지	-109.9	41.4	22	1.4	-95.1	△7020.0

자료: 카타르 재무부, 카타르 중앙은행

2021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 수입은 440억 달러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24% 감소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 수출 감소를 재정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카타르는 국제유가에 좌우되는 에너지 자원 의존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GDP의 34%, 수출의 79%, 재정 수입의 79%가 가스 및 원유 판매 수익과 관련돼있다.

카타르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의 유가를 배럴당 40달러로 가정해 편성하면서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자료: 카타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KOTRA 도하 무역관 가공³²⁾

31) 주카타르대사관(https://overseas.mofa.go.kr/qa-ko/brd/m_11634/view.do?seq=12830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32) 카타르 도하무역관 김민경, 2021년 카타르 정부 예산안 및 경제 전망,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6931&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Idx=&page=1&row=10>>(검색: 2021. 5. 20.)

2021년 재정 지출은 535억 달러로 전년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재정 지출의 37%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지출은 198억 달러로 2020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이는 도로건설 관련 프로젝트, 보건 의료 및 학교 시설 프로젝트, 2022년 월드컵 경기장 및 관련 프로젝트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재정 지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지출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167억 달러로 편성돼 전체 재정 지출의 31%를 차지한다. 경상지출 증가는 완공된 주요 프로젝트들의 운영 비용과 기존에 발주된 2022년 월드컵 관련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2 항목별 재정 지출 비중 동향

(단위: 억 달러)

	2019	2020	2021	Y-O-Y % 2020-2021
Salaries & Wages	157	162	159	-1.9%
Current Expenditure	154	159	167	4.7%
Minor Capex	11	10	11	14.3%
Major Projects	246	247	198	-19.9%

자료: 카타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KOTRA 도하 무역관 가공

방산 및 보안 분야 예산은 115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재정 지출의 21.7% 규모로 편성됐다. 카타르는 2022년 중동 국가 최초로 FIFA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돼 약 15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전망하고 있어 방산 및 보안 분야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 재정(Public Finance) 분야 지출은 109억 6,000만 달러로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출은 주로 정부 지원금, 연금 펀드, 전략 식품 비축 등 운용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자치 환경(Municipality & Environment) 분야 지출은 69억 8,000만 달러로 전체 재정 지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출은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전력 네트워크 공급 및 관리, 도로 네트워크 확장 및 유지 보수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 지출은 47억 8,000만 달러로 전체 재정 지출의 8.9% 규모로 편성됐다. 2020년 3월 기준 카타르의 인구는 279만 명 중 만 4~20세의 학령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시설 부족 문제 해결과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분야 지출의 대부분을 교사 인력 확보, 학교 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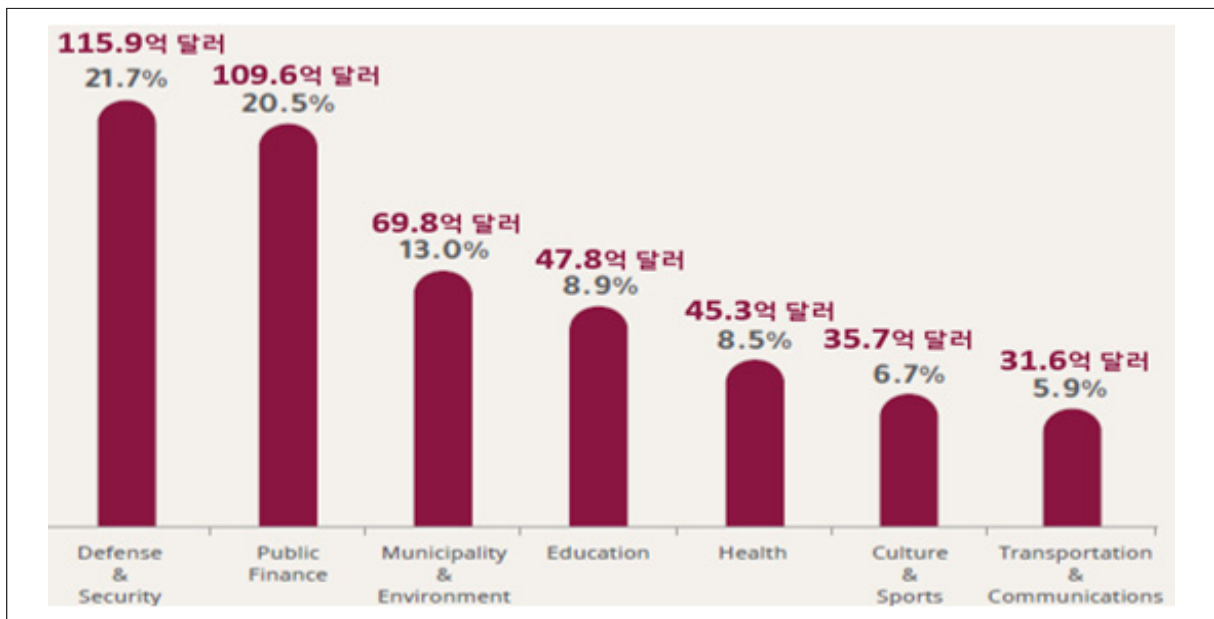
보건 의료 분야 지출은 45억 3,000만 달러로 전체 재정 지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비전 2030에 따른 보건 의료 전략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보건 의료 분야 예산은 의료 접근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국가 소유의 하마드의료법인(Hamad Medical Corporation) 산하 병원 시설과 보건소 시설 확충 및 개선

을 위한 지출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 체육 분야 지출은 35억 7,000만 달러로 전체 재정 지출의 6.7%에 해당한다. 해당 분야 지출은 2022년 월드컵 경기장 관련 프로젝트 및 각종 국제 행사 개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교통 및 통신 분야 지출은 31억 6,000만 달러로 전체 재정 지출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하마드국제공항 확장, 도하 메트로, 루사일 트램, 각종 ICT 프로젝트 등 관련 지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 3-1 분야별 지출 비중



프로젝트 예산은 198억 달러로 전체 재정 지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예산은 분야별 재정 지출 내에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활동에 할당되는 예산이다. 도로 건설 및 메트로 프로젝트,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주요 대형 프로젝트는 대부분 완공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프로젝트 예산은 전년도 247억 달러 대비 약 20%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① 자치 환경 분야 프로젝트

자치 환경 분야 프로젝트 예산은 58억 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주로 도로 네트워크, 주거 용지 개발, 도시 미관 개선, 배수 시설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예정된 주요 프로젝트로는 알우케이어 남쪽 (Al Wukair South), 알키사(AlKheisa), 알슈마이시마(Al Sumaysimah) 지역에 카타르 국민 대상 주거 용지 6165개의 구획을 조성하는 토지 개발 프로젝트, 웨스트베이 지역 도로 및 해변가 미관 개선, 움살랄

(Umm Salal) 및 알샤피 스트리트(Al Shafi Street) 지역 도로 건설, 카타르 전역 배수 시설 및 수처리 시설 확충 등이 있다.

표 3-13 자치 환경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구분	예산(억 달러)
통합인프라 공사(Integrated infrastructure works)	19.8
배수 및 하구 퇴적지 개선(Drainage & Estuaries)	10.7
고속도로(Highways)	8.8
도로 및 공공장소 미관 개선 (Beautification projects for roads and public places)	8.5
도로 및 위생 시설 유지 보수(Roads and Sanitation Maintenance)	8.2
기타	1.7
합계	57.7

자료: 카타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② 교통 및 통신 분야 프로젝트

교통 및 통신 분야 프로젝트 예산은 20억 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2022년 완공 예정인 하마드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및 공항 시설 유지 보수, 버스 정류장 확충 등 각종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카타르 공공 교통 프로그램(Qatar Public Transportation Project), 도하 메트로 및 경전철 프로젝트, 하마드항(Hamad Port) 개발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 3-14 교통 통신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구분	예산(억 달러)
하마드 공항 확장(Hamad Airport Expansion)	11.0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4.5
카타르 레일(Qatar Rail)	4.1
하마드 항(Hamad Port)	0.5
기타	0.1
합계	20.3

③ 문화 체육 분야 프로젝트

문화 체육 분야 프로젝트 예산은 11억 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대부분 월드컵준비위(SC)의 월드컵 준비 관련 프로젝트에 할당됐으며 문화체육부, 카타르 박물관청, 카타라 문화 재단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문화 체육 분야 프로젝트는 2021년 2분기 완공 예정인 카타르 스포츠 박물관 건설,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하항(Doha Port) 개발, 다양한 스포츠 시설 확충, 유적지 개발 등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표 3-15 문화 체육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구분	예산(억 달러)
월드컵준비위(Supreme Committee for Delivery & Legacy, SC)	9.6
문화체육부(Ministry of Culture & Sports)	0.5
카타르 박물관청(Qatar Museums Authority)	0.3
카타라 문화재단(Cultural Village Foundation)	0.3
기타	0.3
합계	11.0

④ 교육 분야 프로젝트

교육 분야 프로젝트 예산은 4억 4,000만 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27개 학교 교실 확충 및 10개 학교 신설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콜리지 시설 개선, 카타르대학(QU) 내 정수 플랜트 설치, 장애인 학교 시설 개선, 에듀케이션 시티 트램 시설 확충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표 3-16 교육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구분	예산(억 달러)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	2.3
카타르 대학교(Qatar University)	0.9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0.9
커뮤니티 콜리지(Community College)	0.2
기타	0.1
합계	4.4

⑤ 보건 의료 분야 프로젝트

보건 의료 분야 프로젝트 예산은 3억 6,000만 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중 완공될 신규 보건소 5개소, 청소년 병원 및 앰블런스 서비스 시설 확장, 하마드 병원 정신병원 시설 개선, Naufar 병원(공공보건부 지원 병원) 내 중독 치료 센터 확장, 국립암병원, 법 정신의학 서비스 시설 신설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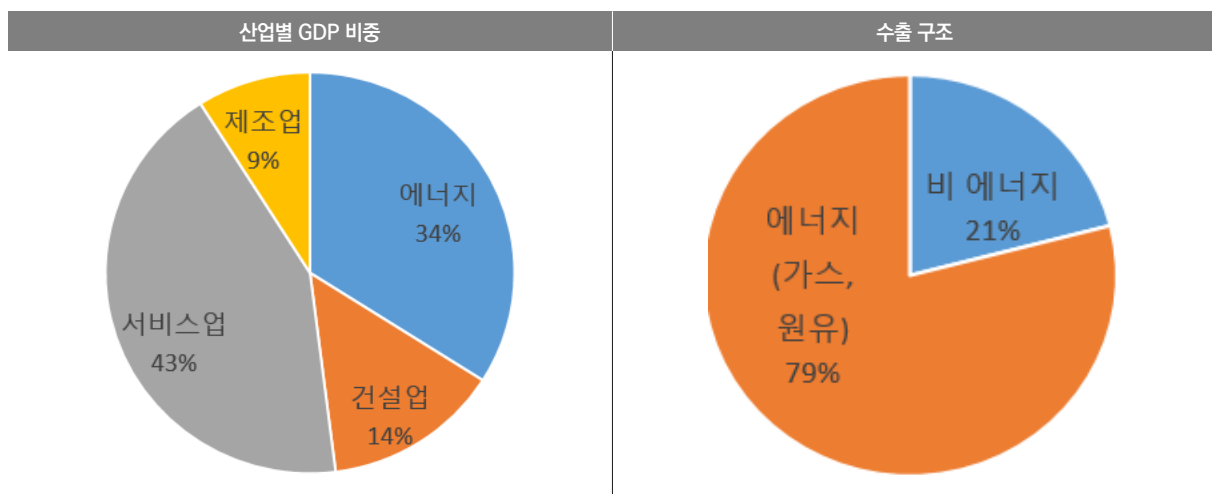
표 3-17 보건 의료 프로젝트 주요 할당 예산

구분	예산(억 달러)
하마드의료법인(Hamad Medical Corporation)	2.5
보건소(Primary Health Care Corporation)	0.7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0.3
기타	0.1
합계	3.6

2. 카타르 산업 경제 특성³³⁾

카타르는 에너지 산업이 경제 근간 구성, 건설, 제조 등 비-에너지 분야가 신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1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에너지 산업이 국가 제1의 산업으로, 2019년 기준 전체 GDP의 34% 차지하였다. (2015년 대비 3% 증가, 전년 대비 12% 감소)

그림 3-2 카타르 산업구조(카타르 중앙은행, 2019)



(1) 금융 산업

카타르 은행 7개, 이슬람계 은행(Islamic Bank) 4개, 외국계 은행 4개가 영업 중이며, 카타르국립은행(Qatar National Bank)이 최대 금융기관이다. 중앙은행(Qatar Central Bank)은 은행 감독 및 규율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은행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며, 금융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증권 발행 가능하다. 카타르는 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를 설립하여 다수의 외국 은행을 유치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면서 금융 부문에서 자율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 마련을 위해 외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2008년 179억 달러 → 2018년 430억 달러)에 있으나, 막대한 에너지 자원 보유, 적극적인 에너지 개발 정책,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치안 상황 등으로 높은 대외신용도(무디스 Aa3, 피치 AA-, S&P AA-/A-1+)를 유지해 오면서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33) 주카타르대사관, 카타르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동향, 2019, <https://overseas.mofa.go.kr/qa-ko/brd/m_11637/view.do?seq=127184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참조.

(2) 석유 산업

카타르는 2018년 기준으로 총 9개 유전에 252억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現) 생산량 유지 시 약 100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석유 생산량을 일일 평균 60만 배럴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칸(Dukhan) 등 노후 유전의 시설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며, 최대 해상 유전인 Al-Shaheen 유전의 경우 생산량 확대를 위한 추가 유정 시추 작업 진행 중에 있다. 석유 산업은 카타르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으로서 2000년대 말까지 제1위의 재정수입 재원이었으나, 현재는 가스 산업이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3) 천연가스 산업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4.9조m³로 러시아, 이란에 이은 세계 3위 보유국이며,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3.0% 점유(2017년 기준, BP 통계 2018)하고 있다. 특히 카타르 북부 해상에 위치한 북부 가스 전(North Field)은 단일 가스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LNG 생산량은 연간 8.1백만 톤 규모로 세계 1위의 수출국이며 세계 LNG 교역량(약 293.1백만 톤)의 약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된 LNG는 동북아(한국·중국·일본), 동남아(인도·방글라데시·태국 등)와 유럽(영국·스페인·벨기에·프랑스 등) 시장에 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카타르를 통해 한국에 도입되는 LNG는 1,425만 톤으로 우리 수입국 중 최대이다. (물량 기준 32.4%, 2018년, 수출입 무역통계(관세청))

각각의 프로젝트는 카타르석유공사(QP, 65~70% 지분 보유) 외에 엑슨모빌(QatarGas 프로젝트 I·II, RasGas 프로젝트 I·II·III에 10~30%의 지분 보유), 코노코(QatarGas 프로젝트 III에 30% 지분 보유)·셸·토탈 등 석유 메이저 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KORAS)이 RasGas 프로젝트 I 에 5%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로 플랜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각종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및 플랜트 기자재 납품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GTL(Gas-to-Liquid) 산업 : ‘천연가스를 액화석유로 전환’

카타르는 풍부한 천연가스의 부가가치 제고와 세계 최대 GTL 공급 국가로의 부상을 목표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GTL 프로젝트 추진, 현재 세계 최대 수준의 GTL 생산국이다. GTL이 LNG에 비해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카타르로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LNG에 추가해 새로운 국부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이다. 카타르 항공제트 연료의 50%이상을 GTL로 대체하며 시장 확대 도모하고 있다.

(5) ICT 산업³⁴⁾

카타르의 ICT 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25억 달러로 전체 GDP의 1.4%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카타르의 ICT 보급 환경은 세계 141개국 중 8위로 최상위권이다. 성인 인구 인터넷 사용률 99.7%로 세계 1위, 인구 100명당 모바일 보급률 141.9개로 세계 19위,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구독률 125.9건으로 세계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BMI에 따르면 카타르의 정보통신 산업은 정부 주도의 ICT 육성 정책 및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준비에 힘입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성장세로 2022년까지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이다.

카타르는 교통통신부는 2016년 카타르 ICT 산업의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가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타스무 프로그램 도입(TASMU Smart Qatar Program 2017-2022),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0억 리얄(약 16억 달러) 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타스무 프로그램은 5대 분야(교통, 물류, 환경, 헬스케어, 스포츠) 107개 프로젝트(Use case)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까지 약 20여개 프로젝트를 발표해 입찰을 마감하고 매년 20개 내외 프로젝트 추진 할 예정이다.

(6) 전력 산업

카타르 내에 풍부한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발전을 하고 있으며, 발전소는 보통 담수화 설비를 동시에 갖춘 8개 발전소에서 약 10,59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약 8.2MW 규모의 자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타르 전력회사(Qatar Electricity & Water Company, QEWC)는 움 알 호울(Umm Al Houli) 전력 프로젝트(Facility D) 개발을 추진(2016년)하여 완공하였다. 현재 카타르의 전력 및 담수 예비율은 각각 23%, 1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7)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을 탄소중립 월드컵으로 만들겠다고 2010년에 선언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³⁵⁾을 추진 중이며, 1단계(~2020년)로 350MW를 건설하고, 2022년까지 2단계로 최대 900MW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타르의 자연환경(고온, 다습, 고농도 먼지 등)에 견디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테스트 중에 있고, 지붕형 태양광설비를 보급 중(2016년 44MW)에 있다. 또한 새로 건설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34) kotra, 2021년 카타르 진출전략 보고서, 7면 이하 참조.

35) PPP 개념의 Build-Own-Operation-Transfer(BOOT) 방식으로, 25년 운영 후 인계

‘카타르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Qatar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QSAS)’을 채택하고, FIFA 2022년 월드컵 5개 경기장에 태양광발전냉방시스템을 적용 할 예정이다.

카타르는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여 중동의 태양광 허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R&D-원료제조-웨이퍼셀-모듈-솔루션 등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 중이다.

표 3-18 카타르 태양광 산업 관련 기관

기관명	역할	비고
환경에너지연구소 (QEERI, Qatar Energy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카타르 태양광 에너지 R&D 연구소로 실리콘 및 박막 제조 관련 기술 개발 추진	2011년 설립
Qatar Solar Technology (카타르 재단에서 설립한 합작 법인)	태양광 모듈 원료 제조사로 폴리실리콘 연간 8,000톤 규모의 시설에서 첫 생산 성공. Ras Laffan 공장에 총 1.1MW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Siraj Energy (Qatar Electricity Water Company, QEWC)와 QP(Qatar Petroleum)가 합작	자본금 5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발전 기업	2016년 설립
Qatar Solar Energy	웨이퍼, 태양광 전지 및 모듈 등 태양광 관련 혁신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태양광 솔루션 전문업체	

3. 산업정책 현황

카타르는 경쟁력을 갖춘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2008년 장기개발계획으로 카타르 국가 비전(Qatar National Vision) 2030, 중기비전으로 국가개발전략(NDS)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비전 2030은 4개의 발전 중점 추진 분야(인적자원, 사회, 경제, 환경)와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을 5년마다 수립해 QNV 2030의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추진하고 있다.³⁶⁾

3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카타르 국가신용평가리포트, 2019, <[http://www.tradenavi.or.kr/CmsWeb/resource/attach/report/\[643\]210430_%EC%97%B0%EA%B5%AC%EC%86%8C_%EC%B9%B4%ED%83%80%EB%A5%B4%20%EA%B5%AD%EA%B0%80%EC%8B%A0%EC%9A%A9%EB%8F%84%20%ED%8F%89%EA%B0%80%EB%A6%AC%ED%8F%AC%ED%8A%B8_f\(%ED%99%88%ED%8E%98%EC%9D%B4%EC%A7%80%20%EA%B2%8C%EC%8B%9C%EC%9A%A9\).pdf](http://www.tradenavi.or.kr/CmsWeb/resource/attach/report/[643]210430_%EC%97%B0%EA%B5%AC%EC%86%8C_%EC%B9%B4%ED%83%80%EB%A5%B4%20%EA%B5%AD%EA%B0%80%EC%8B%A0%EC%9A%A9%EB%8F%84%20%ED%8F%89%EA%B0%80%EB%A6%AC%ED%8F%AC%ED%8A%B8_f(%ED%99%88%ED%8E%98%EC%9D%B4%EC%A7%80%20%EA%B2%8C%EC%8B%9C%EC%9A%A9).pdf)>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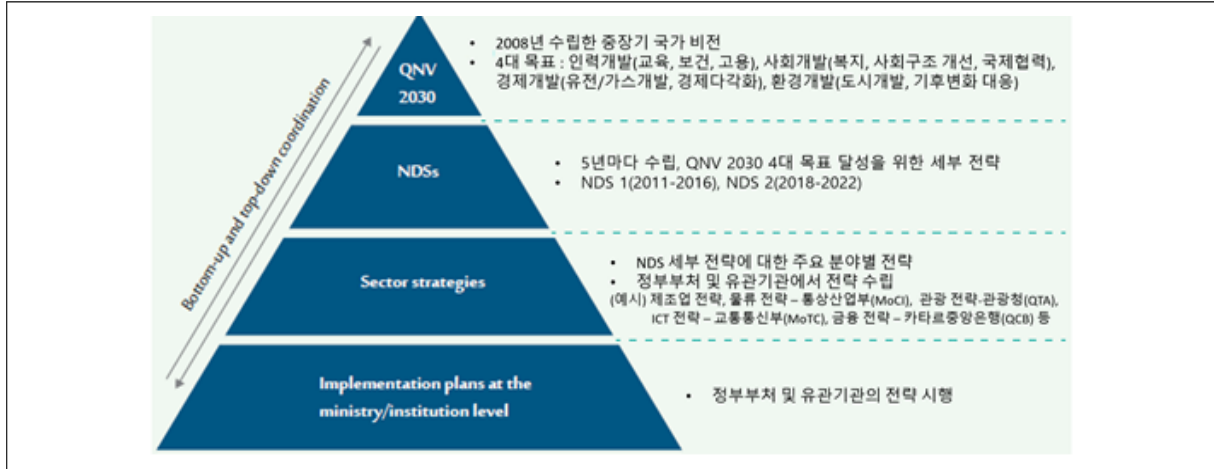
표 3-19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세부 내용

구분	중점내용
인적자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있는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 확립 - 유소년의 동기부여를 위한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구축 등 • 심신이 건강한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의 통합 의료 시스템 구축 - 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 • 유능하고 동기부여된 노동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사립 교육기관을 통한 훈련 프로그램 투자 - 카타르인이 비즈니스, 보건·의료, 교육 부문 진출시 인센티브 부여 - 이주노동자의 적정비용 고용 및 인권 보호, 안전 보장
사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및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권 보장 및 적정 생계비 보장 등 • 건강한 사회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사업체의 필요 충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카타르 문화유산 보호, 아랍·이슬람의 정체성 확립 등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프협력이사회(GCC), 아랍연맹(Arab League), 이슬람회의기구(OIC)에서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역할 담당 등
경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경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세대, 후세대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계획 수립 - 국내외 투자 및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 등 • 책임있는 석유 및 가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존량 및 생산량, 경제적 다양화 및 고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탄화수소자원 개발 - 기술혁신, 인적자원·경제적 능력 개발 등 국가 전 분야에 기여하는 자원 개발 등 • 경제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화수소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부문의 역할 및 경쟁력 증대 도모(탄화수소 산업에서 파생되는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 및 서비스 육성 등)
환경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및 환경보호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도시계획 수립 -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법체계 확립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카타르의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노동시장 개선 등을 중점 개선 분야로 지정하였다.

사회개발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이슬람적, 아랍적 가치를 지키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여성의 정치 및 경제 참여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개발은 높은 생활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장량과 생산량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선진화된 기술 혁신과 인적자원 개발, 카타르의 경제 능력 향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개발에서 개발 수요와 환경 보존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림 3-3 카타르 국가 비전(Qatar National Vision 2030)



1차 국가발전전략(2011~ 2016년)은 국가비전 2030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카타르 전통문화 보전과 현대화 추진 간 균형 유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이익균형 유지, 성장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확장 통제 개발과정에 부합하는 외국 노동력의 규모 및 수준 유지, 경제적 성장, 사회개발 및 환경의 3자 간 조화와 같은 5개 부문의 균형을 목표로 하였다.³⁷⁾

또한 1차 NDS 실행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확대, 탈석유화를 통한 경제적 안정, 민간 부문 육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5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였다. 현재는 2차 국가발전전략 2018~2022(2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 2018~2022)을 진행중이며 NDS에 따라 주요 분야별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을 통해 하위 전략을 수립 및 이행 하고 있다.

II 연구개발(R&D) 및 과학기술정책 현황

1.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 재단(QF, Qatar Foundation)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된 미래 유망 연구에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카타르의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QF는 1995년 설립된 민간 비영리단체로서 교육(education), 과학과 문화의 발전(science and cultural research)을 국가적 차원, 범세계적 차원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교육(education), 과학연구(science research), 사회 발전(social

37) PSA(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KOTRA 도하무역관 가공 자료.

development), 합작투자(joint venture), 후원(sponsorship) 등의 활동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여 Oil 경제에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 기관이다

표 3-20 카타르 재단

- (설립년도) 1995년
- (설립자) 카타르 前국왕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 설립
* 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는 카타르 前국왕으로 2013년 자진퇴위 후, 現국왕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1980년생)에게 왕위 계승
- (이사장)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현 국왕 어머니)
- (기관성격) 비영리 단체
- (설립목적) 카타르 국민교육을 통한 지식기반사회 및 인적자본 구축, 사회변화 선도
- (주요사업)
 - 카타르 교육 총괄
 - 세계 명문대학 분교 유치*
* 300만평 규모의 교육도시(Education city) 건설, 2003년 완공. 현재 미국 카네기멜런대, 버지니아 주립대, 텍사스 A&M대, 조지타운대, 코넬대가 있음
 - 카타르 발전을 위한 국가 R&D 설계 및 연구소기업 육성 등 국가 혁신전략 설계
 - 카타르 국립연구기금(The Qatar National Research Fund, QNRF)을 통한 대학 및 연구소 연구개발 자금지원
 - 카타르 과학기술단지(The 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를 통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구현

카타르 재단에서는 ①해외 대학 유치 및 설립을 통한 인력양성을 위한 Education City, ② 기초과학 연구 지원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QNRF), ③ 연구개발과에 대한 민간부분으로 확산을 주도하고 지식재산기반 창업지원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STP)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4 카타르 운영 체계



QF는 산하 QF R&D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QNRS(Qatar National Research Strategy)를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R&D활동을 감독·평가하며 산하조직으로는 QNRF(Qatar National Research Foundation)과 QSTP(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를 두고 있다.

QNRF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과제를 선정하고 배분하기 위한 Funding Agency로 200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매년 약 80개 이상의 국가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QNRF의 주요 프로그램은 에너지 및 환경, 컴퓨터 과학 및 정보 및 통신 기술, 건강 및 사회 과학, 예술 및 인문학과 같은 카타르 국가 연구 전략(QNRS)을 통해 강조되는 기본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³⁸⁾

표 3-21 QNRF 프로그램

<Research Program> National Priorities Research Program (NPRP) NPRP – Blue Skies Research Award (BSRA) NPRP – Research Outcomes Implementation Award (ROIA) Thematic and Grand Challenges Research Program Path Towards Precision Medicine (PPM) Ostra TÜBİTAK – QNRF Joint Funding Program Rapid Response Call (RRC) to Address COVID-19 <Capacity Building and Development Programs> Undergraduate Research Experience Program (UREP) Qatar Research Leadership Program (QRLP) Graduate Sponsorship Research Award (GSRA) Postdoctoral Research Award (PDRA) Early Career Researcher Award (ECRA)

QNRF의 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의 피인용지수는 평균 2.0으로 이는 카타르에서 출간된 전체 논문의 피인용지수에 비해 약 85%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QF 산하 기관들에 대한 조직 운영체제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카타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배분은 QNRF의 공모를 통한 과제(Competitive Research Funding)와 정부 각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과제(Direct Funding)로 나뉘어서 지원하고 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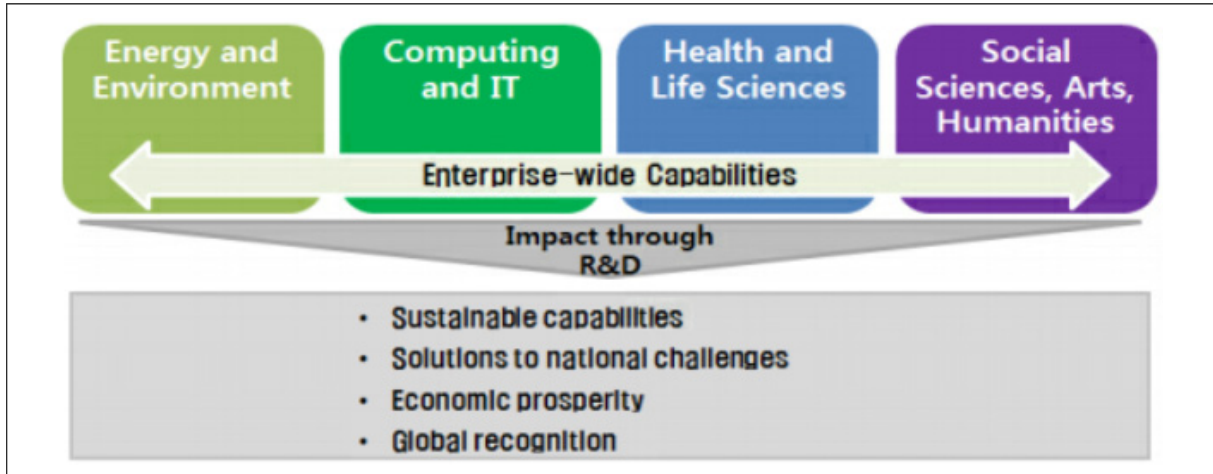
① Energy & Environment

에너지, 수자원, 식량 안보를 최대 도전과제(Grand Challenge)로 에너지 효율 증가, 탄소에너지 의존도 감소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Solar PV 등), 수처리 및 수자원 활용 식량 재배 안정화 관련 R&D 과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과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38) 카타르 국가 연구 기금(<https://www.qnrf.org/en-us/Funding/Research-Programs>) 홈페이지 분석 자료.

39) QATAR SCIENCE & TECHNOLOGY PARK(QSTP)

그림 3-5 카타르 국가연구개발 사업(QNRF) 중점 추진 4대분야



② Computer Sciences & ICT

정보보안(Cyber Security) 및 ICT 발전전략에 기초한 정보분석, 로봇기술 등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타 분야와의 융합(에너지 및 의료)된 과제비중이 높다.

③ Health and Life Sciences

의료, 헬스케어 등 건강관련 R&D 및 친환경 도시건설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도시화(Sustainable Urbanization)을 추구하는 R&D 과제(융합)를 선정하였다.

④ Social Sciences Arts & Humanities

Qatar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공존 모색, 아랍권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문화 보존, 융성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내부적 문화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다

Education City 맞은편에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STP)가 조성되어 있어 대학의 기초연구가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Education City 내에 교육기관과 협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개발한 기술을 QSTP에서 상용화하고, QSTP에서 발전시킨 기술을 다시 대학에서 연구하는 순환 모델을 구축하였다.

QSTP는 중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들을 하나의 단지 내에 유치함으로써 중동지역의 과학기술 중심지(hub)로 부상시키고, 유치된 기업들로부터 기술이전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카타르 정부는 동 단지 입주 기업들을 위해 사무실, 연구소 등의 장소와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수반되는 부가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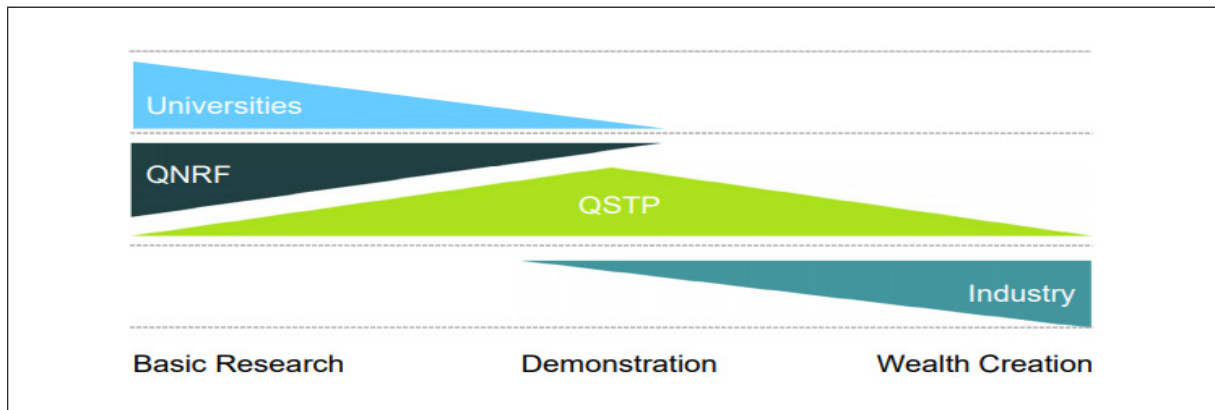
또한 QSTP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기업이 관세 및 세금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현지 에이전트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또한 QSTP 입주업체에는 심사를 거쳐 연구 또는 제품의 상용화와 관련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2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STP)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atar Science & Technology Park, QSTP) • (설립년도) 2009년 • (배경) 카타르재단에서 연구 및 첨단기술개발을 위해 설립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기업의 R&D 센터 유치 - 미국의 실리콘 벨리 같은 중동 벤처기업의 요람화 - 에듀케이션 시티 내 교육기관 및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 (주력분야) 에너지, 환경, 보건, IT • (입주조건) 첨단기술 R&D 및 전수, R&D 종사 인력이 50% 이상 • (지원시설) 토지, 사무실, 연구실 임대(15년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센터 : 창업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한 사무실, 공동시설 ** 기술센터 : 중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위한 사무실, 연수시설 구비
--

QSTP는 카타르 재단 연구, 개발 및 혁신(QF RDI)의 부분에서 첨단 기술 제품 개발을 위한 자유 구역 및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의 기초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카타르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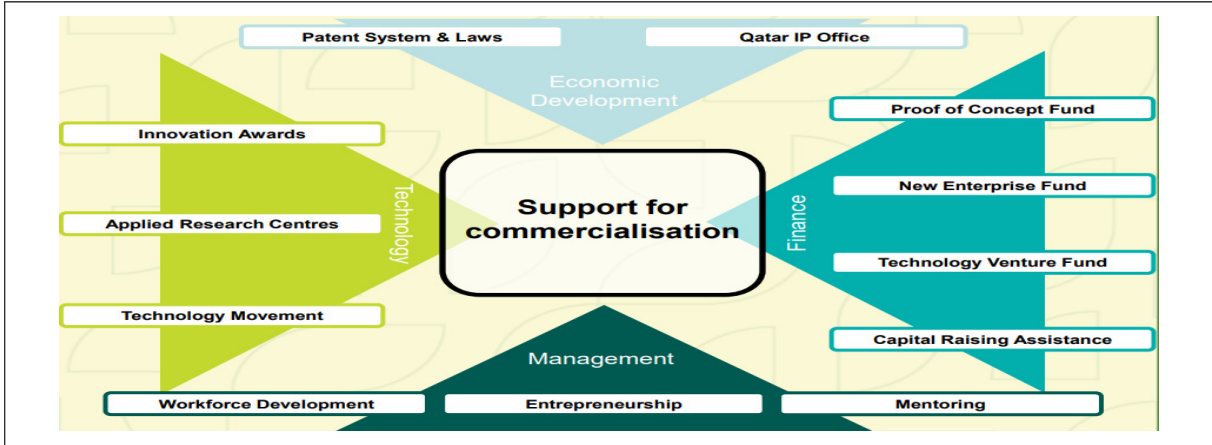
그림 3-6 카타르 R&D Value chain



QSTP 중점분야는 카타르 국가연구전략(NDS)에 따라 에너지, 환경, 건강 과학, 정보통신기술(ICT) 등 4개 분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40) 카타르 과학기술 단지 홈페이지 <qstp.org.qa> 참조.

그림 3-7 QSTP 운영체계



2. 과학기술정책 현황

카타르 과학기술 정책은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개발 등 혁신 생태계 전반에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카타르의 과학기술 정책은 교육도시(Education City)에 설립된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또는 QSTP에 설립된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기초 연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QSTP에 입주된 창업기업,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8 카타르 혁신 체계



자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muwo.12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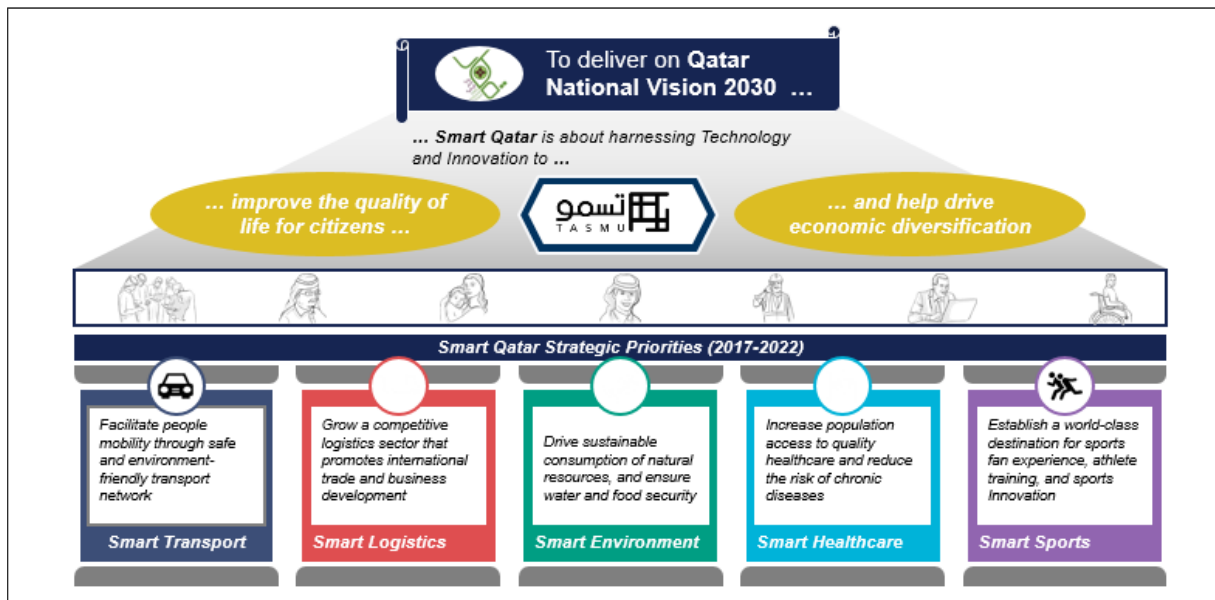
카타르 정부는 2008년 발표된 카타르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으로 4대 목표(인적자원, 사회, 경제, 환경)를 통해 국가 발전 방향 제시하였고, QNV2030에 따라 5년마다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을 수립하고 있다.⁴¹⁾ ICT 정책은 QNV 2030과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국

41) 카타르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비즈니스 도입 사례(kotra 도하무역관, 2021)

가 디지털화 프로그램 타스무(TASMU Smart Qatar Program), 전자정부전략(Qatar e-Government) 등 디지털 산업 발전과 관련한 주요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스무(TASMU)는 교통통신부(MoTC)가 2017년 카타르 ICT 산업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국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자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2022년까지 60억 리얄(약 16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5대 분야(교통, 물류, 환경, 헬스케어, 스포츠) 총 107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3-9 타스무 전략 분야



전자정부전략(Qatar e-Government)은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채널 연동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는 전자정부 전략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차 전략(Qatar e-Government 2020) 추진을 통해 1200여 개의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개발해 40개의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포털 후쿠미(Hukoomi) 및 모바일 앱 서비스 메트라쉬(Mestrash) 등이 개발돼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2차 전략인 Qatar e-Government 2026 발표를 준비 중으로 현재의 전자 공공 서비스 기반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카타르 국가 기술개발 전략(QNRS, Qatar National Research Strategy)의 5개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에너지 및 환경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카타르를 태양광 기술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한다. 에너지 및 환경 기술개발을 위해 2011년에 카타르환경에너지 연구소(QEERI, Qatar Environment and Energy Research Institut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QEERI는 고온, 다습하고 고농도 먼지 하에서 태양광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해 3.5만 m² 규모(81개 태양전지(PV))의 태양광 실증 테스트 시설(STF, Solar

Test Facility)을 구축하는 등 태양에너지 7개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⁴²⁾

표 3-23 신재생 분야 R&D 현황

분야	주요내용
100 kW 마이크로 그리드	•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력 시나리오에서 운용 및 제어 기술을 분석 평가하는 테스트베드(100 kW PV, 에너지 저장, 부하, 마이크로 터빈 등)
PV 냉각시스템	• STF의 태양광 냉각 시스템은 3개로 구성 :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PV 패널 수동 냉각, 새로운 농업산업에 적용할 냉각, 산업용 냉방 효율 향상을 위한 태양광 냉각
배터리 저장 신뢰성	• 태양광 기술이 적용된 농장에 설치된 250 kW/500 kWh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 평가, 배터리수명 예측 등
양면 PV 적용 시험	• 다양한 태양광 반사도 및 구성에 대한 양면 모듈 성능 연구
먼지 연구	• 외부 환경 및 패널 표면의 성질에 따른 입자 확산 속도 등 먼지 오염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조사 및 완화 전략 연구
태양광 전기 활용 전기분해	• 수소 제조를 위한 광전기분해, 광화학분해 기술 개발
담수화 파일럿	• 첨단 진공 다기능 막 종류 증발기과 MOF(Metal Organic Framework) 흡착제를 활용한 태양광 흡착 담수-냉각 시스템 개발

III 산업재산(IP) 관점에서의 경제·산업·정책 진단

1. 카타르 경제 및 산업 현황

카타르는 인구 대략 277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국가이나, 석유(252억 배럴)와 천연가스(24.9조m³) 부존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 부국이며,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3위 국가이다. 특히 북부가스전(North Field)은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으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3% 차지하고 있다.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카타르 GDP의 약 33%, 수출의 84%, 재정수입의 83%를 차지하는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분야의 비중은 미미하다. 카타르는 에너지 산업이 경제 근간 구성, 건설, 제조 등 비-에너지 분야가 신성장 주도 하고 있다. 세계 1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에너지 산업이 국가 제1의 산업으로 2019년 기준 전체 GDP의 34% 차지하였으며,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이행 및 월드컵 개최 관련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진행으로 건설업은 전체 GDP의 14% 차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외교단절 사태를 경험하면서 내부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자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하여 제조업이 전체 GDP의 9%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가 2017년(1,333) → 2018년(1,405) → 2019년(1,464)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농수산업 규모는 3억 3천만 달러로, 카타르 전체 GDP

42) 주카타르대사관, 카타르신재생 에너지 현황 및 정책동향, 2019.<https://overseas.mofa.go.kr/qa-ko/brd/m_11637/view.do?seq=127184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참조.

의 1% 미만 차지하고 있으나 단교 사태 발생 이후 식량안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 5년 간 연평균 6%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ICT 산업 규모는 25억 달러로 전체 GDP의 1.4% 수준이며,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 타스무(TASMU) 추진, 5G 상용화, 디지털 기반 산업 및 전자상거래 시장확대가 ICT 시장 전반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2019년 카타르의 ICT 보급률은 세계 8위를 기록하였다. WEF에 따르면 광통신망 이용률 92%, 모바일 보급률 143%,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29%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5G 상용망 구축을 발표한 중동 지역 최초 5G 도입국으로, 월드컵 경기장 관련 시설에 5G 네트워크 구축 완료를 추진하였다. 2019년 보건의료 산업 규모는 44억 달러로 정부 주도의 국가보건의료전략(National Health Strategy)에 따라 보건 인프라 확충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9% 성장하고 있다.

카타르의 수출입 특성을 수출은 주로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7%, 나머지 23%는 휘발유 및 등유, 에틸렌, 질소비료 등 석유화학 제품과 알루미늄, 철강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수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카타르는 에너지 자원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자 산업 다각화 정책을 펼치면서 제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석유화학 제품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카타르는 각종 산업기자재 및 소비재 등 대부분의 물품 수요를 수입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품목은 카타르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항공기 부품, 산업 기자재류, 의약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산업 기자재는 카타르의 주력산업인 오일·가스 생산시설에 필요한 플랜트 기자재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건설 기자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항공기, 승용차, 기계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국 소비재, 플랜트 기자재, 전기전자제품, 승용차 등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승용차, 산업 기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독일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다.⁴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타르의 경제 및 산업 현황은 카타르의 지식재산 창출 현황 또는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다만 카타르는 국가산업 다각화 전략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기반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재권이 증가될 전망이다.

43) <<http://president.globalwindow.org/pb.bizTrip.BizTripBookDetail.do?seq=32>> 참조.

2. 카타르의 지재권 현황

카타르는 자국민에 의한 국내 특허 출원은 많지 않으나 산업발전 전략의 추진으로 외국인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해외출원 활발히 출원되고 있다. 이는 카타르의 시장 규모가 작다보니 국내보다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4 카타르 특허출원 현황

구분	특허						상표			
	출원건수			등록건수			출원건수		등록건수	
	R	N-R	A	R	N-R	A	R	N-R	R	N-R
2011			34			3	656	6387	656	6387
2012	6	58	65	-		9	485	6288	485	6387
2013	15	323	69	-		8	797	7182	797	6288
2014	9	477	165	-		11	1405	6203	1168	7182
2015			163			50				5365
2016	23	548	117			48				
2017	27	574	107	3	35	44	1117	7007	692	7762
2018			160			69				

자료: WIPO 통계자료

카타르 국적 출원인으로 전 세계 특허를 검색한 결과 596건(20년 12월 기준)이며, 미국(253건), 유럽(51건)이 가장 많았으며, PCT를 통한 출원이 262건으로 조사되었다.⁴⁴⁾ 주요 출원인은 Qatar Foundation(134건), Qatar University(70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타르는 Qatar Foundation / Qatar University를 통한 IP창출·사업화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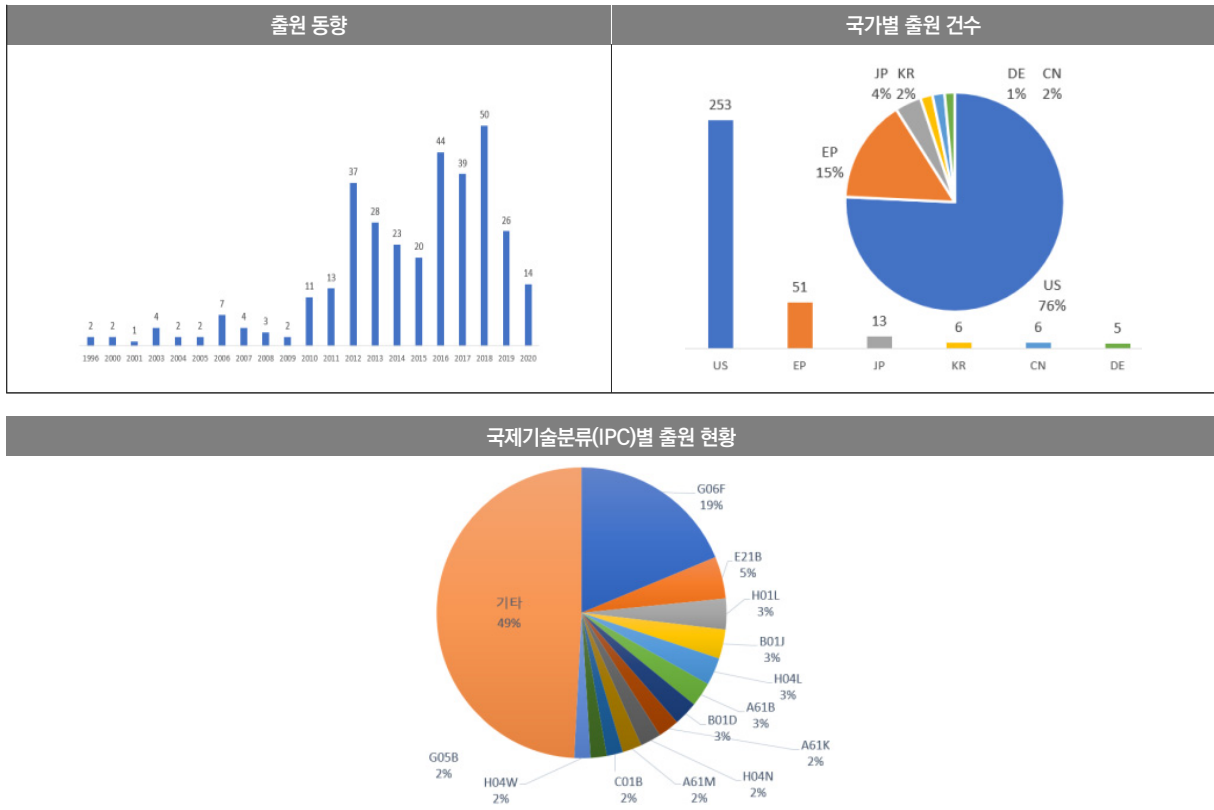
표 3-25 주요 출원인별 출원건수

기관	건수
Qatar Foundation	2011년 이후 출원(US(96건) EP(18건), KR(2건), JP(3건), CN(2건))
Qatar University	2010년 이후 출원(US(58건) EP(2건), CN(2건))
QSTP-B	US(6건) EP(2건)

IPC 분류 기준으로 출원 분야를 살펴보면 전기전자통신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4) 자체 분석

그림 3-10 카타르 국적의 특허출원



카타르는 2008년 Qatar National Vision 2030(QVS 2030) 수립을 통해 비-에너지 분야, 의료 등 비전통 분야 육성 및 경제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resource-based 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카타르의 IP 통계는 절대적으로 특허 건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나, 카타르의 산업발전 전략 추진이 성과를 보여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카타르 재단을 중심으로 카타르 대학, QSTP에서 IP 창출과 사업화를 중요한 아젠다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QF의 IP는 QF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RDI) Division 내 Office of Industry Development and Knowledge Transfer(IDKT)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혁신 및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IP의 창출과 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다.

IDKT의 핵심 기능은 “① IP Management ② Commercialization and Licensing ③ Innovation Training & Recognition ④ Industry Support and Business Development”이다.

표 3-26 IDKT IP 관련 통계 총괄표

년도	발명신고서(IDR) 건수	년도	발명신고서(IDR) 건수
2007	1	2014	57
2009	6	2015	125
2010	2	2016	107
2011	19	2017	75
2012	43	2018	61
2013	49	2019	30
총 575 건			

자료: IDKT Director John Taylor McEntire 발표(2019.4.17.)

표 3-27 IP 보호 관련 건수

IP보호 관련	건수
IDRs elected for IP Protection	356
IDRs elected for IP Patent	294
Total Active Patent Applications	356
Granted/Allowed Patents	75
Active Patents Filed	281
IDRs elected for Trademark	4
IDRs elected for Copyright	59

자료: IDKT Director John Taylor McEntire 발표(2019.4.17.)

IDKT는 QSTP와 활발한 협업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기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IP 정책이 'Qatar National Vision 2030'의 경제발전 전략 및 R&D 전략과 IP는 연계성은 약한 분석되었다. 지식재산권을 통해 카타르의 기술혁신을 촉진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산업전략과 IP 전략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리

카타르의 경제 성장과 함께 IP 창출 성과도 증가하고 있지만 내국인 상표출원, 외국인 특허출원, 외국인 상표출원과 달리 내국인 특허출원은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낮다. 카타르에서 특히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가 낮은 이유는 GDP에서 낮은 제조업 비중, 원유·천연가스 중심의 수출 등 경제, 산업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시에 그동안 혁신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수가 적고, 특히 중소기업 수가 1,500개(2019년) 미만으로 지재권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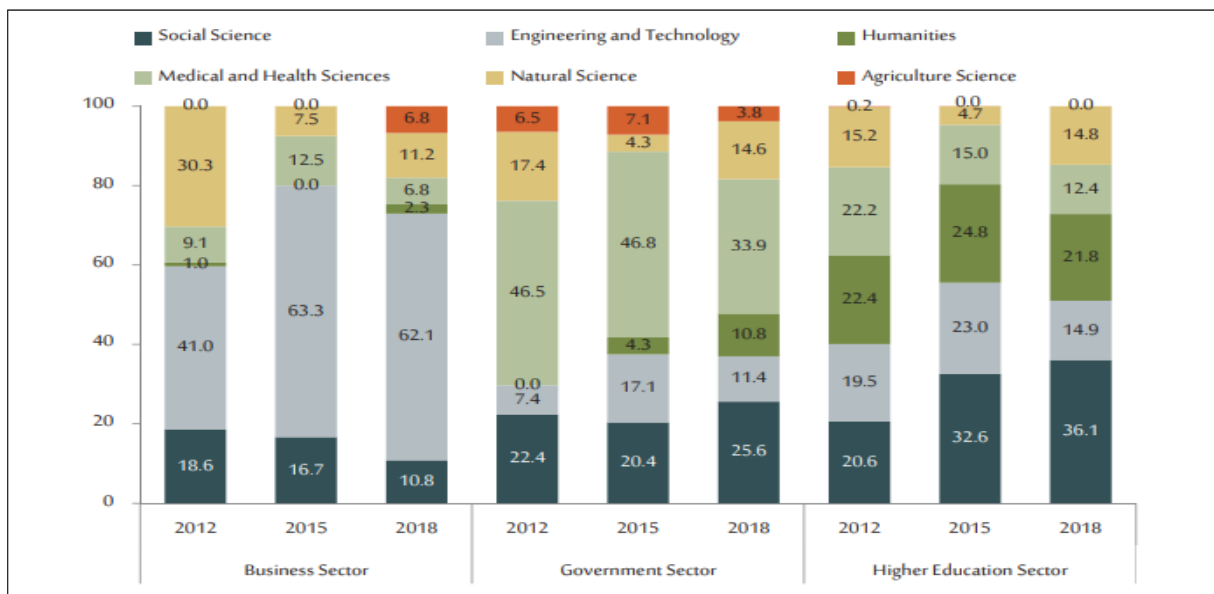
할 수 있는 혁신 기관의 수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며, 카타르의 R&D 연구자가 4,720명(2015년)으로 매우 적은 것도 중요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로 대표되는 연구개발 성과물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구축, 혁신 주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2000년 이후부터 카타르의 과학기술 및 혁신 지원에 있어 큰 진전이 있었지만 카타르 정부가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2012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카타르에서 발표한 R&D 조사 보고서(2020년)⁴⁵⁾에 따르면, R&D 투자 비율이 대학(72%), 정부 기관(15.9%), 기업(12.2%)로 대학과 정부기관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타르의 주요 출원인으로 Qatar Foundation, Qatar University, QSTP-B로 공공기관에 대부분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타르의 2017년 이후 산업 다각화 정책으로 자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향후 특허 출원이 증가될 전망이다.

R&D 기관(대학, 정부, 기업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 부분에서는 공학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62%(2018년) 높으나, R&D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은 인문학분야에 34%, 사회과학 25.6%로 산업발전 및 지재권 창출과 관련있는 공학분야에 대한 비중이 적은 모습이다. 다만 대학과 정부 기관에서 의학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1 영역별 R&D 투자 비중



45) Findings of Research & Development Survey in the State of Qatar 2018, <https://www.psa.gov.qa/en/statistics/Statistical%20Releases/Social/RAndD/2018/RD_Qatar_2018_En.pdf> 참조.

R&D 투자 비중과 현재 출원된 특허의 IPC 분류 기준으로 카타르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중인 산업분야는 G06*, H01* 등 전기전자통신 분야를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으며, A61* 의학 분야에서는 대학 및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산업을 육성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카타르는 인구 약 270만명이 거주하는 작은 국가이며 카타르 원주민보다 인도 65만(25%), 아랍 52만(20%), 네팔 36만(14%), 필리핀 26만(10%)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국가이다. 카타르 내수시장만은 규모가 작아 미약한 편이나, 중동아프리카 인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구구성을 가진 시장 환경을 통해 문화권별 시장성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시장이다.

카타르 정부는 QNV 2030과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 타스무(TASMU Smart Qatar Program), 전자정부전략(Qatar e-Government) 등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집중 투자하고 있어 향후 관련 분야에서 지재권 창출이 늘어나고 관련 중소기업수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창업지원 기관인 큐빅(Qatar Business Incubation Center, QBIC), 카타르 핀테크 허브(Qatar Fintech Hub), 카타르스포츠테크(Qatar SportsTech)를 중심으로 ICT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업 및 산업 발전이 기대 된다.

표 3-28 주요 창업 지원기관⁴⁶⁾

기관명	주요 내용
큐빅 (Qatar Business Incubation Center, QBIC)	2014년 카타르개발은행(QDB)과 비영리 단체 '나마(NAMA)'가 공동으로 설립한 창업지원기관으로, 창업자들의 사업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 정착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제공. 디지털 분야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영 통신사 우리두(Ooredoo)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Digital & Beyond 프로그램 운영(홈페이지: www.qbic.qa)
카타르 핀테크 허브 (Qatar Fintech Hub)	카타르개발은행(QDB)과 EY(Ernst & Young)의 협업으로 2020년 조직된 핀테크 분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해커톤(Hackathon) 사업 운영(홈페이지: https://fintech.qa)
카타르스포츠테크 (Qatar SportsTech)	타르개발은행(QDB)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테크 분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덴마크 기반의 세계 최대 테크 스타트업 네트워크인 스타트업 부트캠프(Startup Bootcamp)와 협력 중(홈페이지: www.sportstech.com)

46) 카타르 도하무역관 김민경, 카타르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비즈니스 도입 사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982/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401>> 참조.

제 3 절

카타르의 IP 환경분석

I IP 행정 거버넌스 및 지식재산 제도 구축 현황 조사

1. IP 행정 거버넌스 현황 조사

(1) 특허청의 법적 지위

카타르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은 상무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지식재산 보호국(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department)의 하부 조직이 담당한다. 이러한 하부 조직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특허청(Patent Office), 상표 디자인 GI청(Trademarks, Industrial Design and GI Office)으로 세부적으로 나뉜다.⁴⁷⁾

(2) 특허청의 조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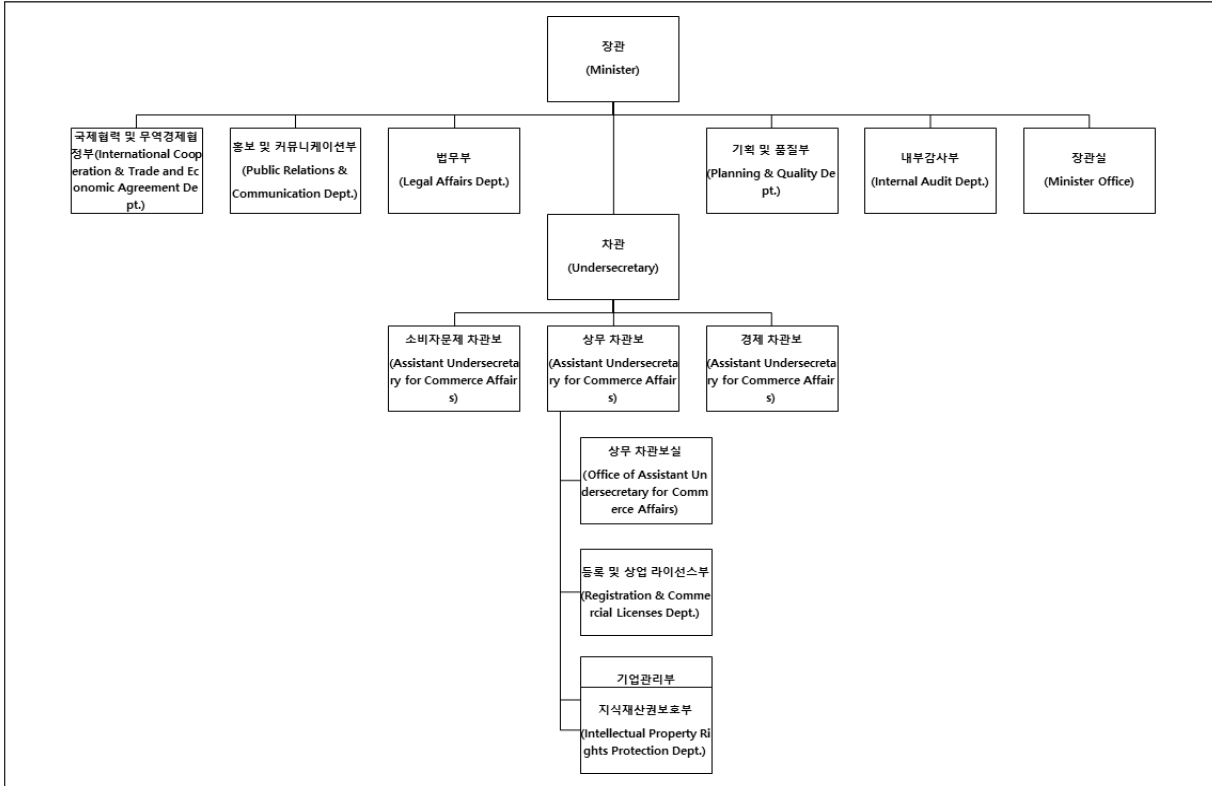
1) 심사관수

특허국의 직원 수는 10명으로 내역은 심사관이 5명, 심판관이 2명, 기타 직원이 3명이다. 상표국의 직원 수는 30명으로 내역은 심사관이 10명, 심판관이 5명, 기타 직원이 15명이다(2016년 기준).⁴⁸⁾

47) https://www.wipo.int/members/en/contact.jsp?country_id=145

4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中東諸国における特許・実用新案・意匠・商標の審査運用の実態および審査基準・審査マニュアルに関する調査研究, 2016, 4면 참조.

그림 3-12 카타르 상무산업부 조직도



2) 심사현황

카타르의 특허 및 상표의 최초 통지기간 까지의 기간과 결정시까지의 평균기간은 이하와 같다.

	최초 통지까지 기간	결정까지 평균기간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일로부터 심사 개시시 까지 약 16~24개월 심사개시부터 최초 통지일 까지 약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 약 26~36개월 출원일로부터 거절결정까지 약 20~24개월
상표	출원일로부터 약 3~5개월	출원일로부터 약 10~12개월

2. 지식재산 제도 구축현황 조사

(1) 걸프협력회의(GCC)의 지식재산제도

1) 개요

GCC란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칭이다. GCC는 중동·아라비아만 연안지역에 있어서의 지역협력기구로서 1981년에 설립되었다. 1981년 5월 25일 설립돼 250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영역을 포괄하는 이 기구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

아가 회원국이다. 단일 국가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1981년 11월 11일 사우디의 리야드에서 조인되었다. 공식 명칭 외에 걸프 협력 국가들(Gulf Cooperative Countries)로 불리기도 한다.

페르시아 만 인근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주목하는 바가 크다. 천연가스와 석유로 엄청난 재원을 모은데다 수십 년간 이를 토대로 투자처를 찾고 개발한 결과 두바이의 경제성과는 크게 빛을 발하고 있다. 아부다비 투자처의 투자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2006년 명목 GDP가 7,178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카타르는 룩셈부르크를 명목 GDP 상제치고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세계 최고치의 GDP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월 1일 출범한 가운데 모든 회원국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국가별 무역 장벽을 없애는 한편 3차 산업의 교역 또한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은 선진국과 같은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 GCC 6개국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모로코, 이집트 등과 합쳐 Middle East & North Africa =MENA 라 불리우며 투자의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GCC는 경제, 금융, 상업, 관세, 교육, 법률 및 행정 분야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 및 법률을 채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통된 지식재산제도의 채용도 목적의 하나로 되어 있다. 페르시아만 인근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주목하는 바가 크다. 천연가스와 석유로 엄청난 재원을 모은데다 수십 년간 이를 토대로 투자처를 찾고 개발한 결과 두바이의 경제성과는 크게 빛을 발하고 있다.

2) GCC 특허청의 주요 가입 협약

가입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조약은 없다. 그러나 조약에 대해서는 다음의 협조를 취하고 있다. 1971년 스트라스부르 협정에 의한 국제 특허 분류를 적용하지만, GCC 자체는 이 협정에 가맹하고 있지 않다. 2000년 8월 16일 TRIPS 협정과 더욱 협력하기 위해 GCC 특허 규칙이 실질적으로 개정되었다.

3) GCC 특허제도의 개요

(가) 제도

1992년 12월에 개최된 제13회 GCC정상회의에서 GCC 특허규칙이 가결되어 GCC 특허청이 설치되었다. GCC 특허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리야드에 설치되었으며 1998년 8월부터 특허출원의 접수를 개시. 1999년 11월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개정규칙이 2000년 8월 16일에 발효되었다. 같은 날에는

TRIPs협정에도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상제도	특허제도
현지대리인 필요성	필요
출원언어	아라비아어
실체심사	심사수수료 납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로 납부
PCT에 의한 GCC 지정	불가능
파리루트 출원	가능
출원 공개	없음
우선심사·조기심사	없음
특허권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존속기간 연장제도 없음)
이의신청제도	있음
무효심판제도	있음
실시의무	3년 불실시로 강제실시권 부여의 대상화

GCC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허출원밖에 할 수 없다. 실용신안제도 및 디자인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보호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상표에 대해서는 GCC내의 상표제도를 통일하기 위한 GCC 통일 상표법이 2006년에 발효된 상태다. 2015년의 GCC 무역위원회에서의 GCC 상표법 시행규칙의 승인에 근거하여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GCC 통일 상표법이 발효되었다. 그 후 2017년 7월에는 오만에서도 통일 상표법이 발효되었다. UAE, 카타르는 발효를 위한 법개정 준비 중이다.

단, GCC 통일 상표법은 GCC 지역의 상표와 관계된 법률 분야를 조화시키는 시도이지만 지역 조화법일 뿐이며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EUIPO과 같은 상표출원을 통일 또는 집중시키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GCC 가맹국이 계속적으로 등록부를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GCC에 있어서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출원인이 법률에 근거한 상표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대로 GCC 가맹국마다 상표출원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나) 출원인

발명자 및 그 승계인이 출원인이 될 수 있다. 출원인이 GCC 거주자가 아닌 경우 GCC 거주자인 등록대리인을 임명 할 필요가 있다.

(다) 현지대리인

지식재산 관련 전문자격제도는 없으며, 대졸자라면 특허청에 대해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자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 출원서류, 언어

출원서류는 ① 원서, ② 명세서, ③ 청구항(일본과 같은 종속형식 가능), ④ 요약(50단어이상 200단어 이하로 기재), ⑤ 필요할 경우 도면, 그 외에 출원을 보충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⑥ 위임장(포괄위임장 제출 가능), ⑦ (법인출원의 경우) 양도증 및 ⑧ 등기부 등본, ⑧ (우선권주장 하는 경우)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출원은 아라비아어로 하고 명세서, 청구항, 도면 및 요약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문의 첨부이 필요하고 영어로 출원은 할 수 없으므로 현지대리인에 의한 번역기간을 충분히 확보 할 필요가 있다.

- 우선권증명서가 일본어인 경우, 영어 번역문도 제출 필요하다.
- 위의 ⑥~⑧에는 어느 하나의 GCC 가맹국의 영사에 의한 영사인증이 필요함. 인증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폐청일은 일요일~목요일이다. 라마단시의 노동시간의 단축, 갑자기 정해지는 축일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자출원이 시행되고 있다.

(마) 출원의 형식

① GCC에의 출원

(i)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한 GCC 출원이 가능(GCC는 파리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우선권에 관한 파리조약의 룰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 GCC에 있어서 등록된 경우는 GCC 가맹 6개국(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모두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단, UAE에서는 GCC 특허의 집행세칙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GCC 특허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ii) PCT 출원에 있어서 GCC 특허청을 지정할 수는 없다.

② 가맹국에의 출원

(i) 쿠웨이트를 제외한 각국에의 직접출원이 가능하며 GCC 특허청과 각 가맹국에 중복하여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ii) 쿠웨이트를 제외한 가맹국에서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 가능하며 PCT 루트에 의한 권리화도 가능하다. 이행기간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다.

쿠웨이트에서는 2016년 4월 3일 이후 새로운 특허출원의 수리가 중지되어 GCC 특허청에 출원할 필요가 있다. 즉, 쿠웨이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GCC 출원을 하는 것이 필수로 되었다. 이는 쿠웨이트가 GCC 특허법 및 그 시행규칙을 승인하여 2016년 4월 3일에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웨이트에서는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한 GCC 출원을 하여 권리화 할 수 있다.

한편, 쿠웨이트는 149번째 PCT 계약국이 되었으며 2016년 9월 9일부터 PCT에 구속된다. 따라서 2016년 9월 9일 이후에 출원된 PCT 출원은 자동적으로 쿠웨이트의 지정을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PCT 출원에 있어서 GCC 특허청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PCT 루트에 의한 쿠웨이트에서의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PCT 출원에 있어서 GCC특허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쿠웨이트가 현행법을 개정하여 쿠웨이트에 이행한 PCT 출원이 국내출원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 방식심사

GCC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서류가 형식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원서에 출원번호가 할당되고 출원일이 확정된다. 매년 1~3월사이에 출원유지연금의 지불이 필요하다. 기간을 도과한 경우, 4~6월에 추가요금과 함께 지불 가능하다.

②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가 없으므로 실시되지 않는다.

③ 실체심사

심사수수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수수료를 납부하면 실체심사가 실시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된다. 우선심사제도, 조기심사제도는 없다. 실체심사를 늦출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실체심사는 호주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및 중국 특허청에 위탁하고 있다. First Office Action 발행까지의 평균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 소요되며, 결정일까지의 평균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42개월 정도 소요된다.

(2) 카타르 지식재산제도의 개요

카타르는 특허법(Law No. 30 of the year 2006 issuing Patents Law), 상표·상호·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에 관한 법률(상표법)이 정비되어있다. 특허법은 2006년 12월 12일, 상표법은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타르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은 상무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지식재산보호국(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department)이 담당하고,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특허청(Patent Office), 상표디자인GI청(Trademarks, Industrial Design and GI Office)으로 세부적으로 나뉜다.

한편 카타르가 참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 국제규범으로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걸프협력회의(GCC),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설립협약 1967년(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문학·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1년((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WIPO 로마협약 1961년(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Phonograms Treaty, WPP), 시청각 공연에 관한 베이징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에 가맹을 완료하게 됨에 따라 자국의 관련 규정들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1월에는 상표등록에 관한 온라인 출원 서비스의 운용이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국제적인 우수사례에 맞춰 상표등록 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카타르는 디자인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카타르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⁴⁹⁾

표 3-29 카타르가 가입한 주요 국제협약

	Treaty	Signature	Instrument	In Force
1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June 24, 2013	Ratification: July 3, 2015	April 28, 2020
2	Berne Convention		Accession: April 5, 2000	July 5, 2000
3	Budapest Treaty		Accession: December 6, 2013	March 6, 2014
4	Marrakesh VIP Treaty		Accession: October 24, 2018	January 24, 2019
5	Nairobi Treaty	une 23, 1983	Ratification: June 23, 1983	July 23, 1983
6	Paris Convention		Accession: April 5, 2000	July 5, 2000
7	Patent Cooperation Treaty		Accession: May 3, 2011	August 3, 2011
8	Rome Convention		Accession: June 23, 2017	September 23, 2017
9	WIPO Convention		Accession: June 3, 1976	September 3, 1976
10	WIPO Copyright Treaty		Accession: July 28, 2005	October 28, 2005
11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Accession: July 28, 2005	October 28, 2005

49)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ShowResults?country_id=145C

표 3-30 카타르의 주요 IP 법률

	Type of Text	Signature	Dates	Subject Matter
1	Implementing Rules/Regulations	Decision No. 153 of 2018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Trad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 Law issued by Decree-Law No. 30 of 2006	Entry into force: July 5, 2018 Adopted: May 1, 2018	April 28, 2020
2	Main IP Laws	2014 Law No. 7 of 2014 on Approval of the Trademarks Law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States	Entry into force: December 31, 2014 Adopted: June 8, 2014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Enforcement of IP and Related Laws, IP Regulatory Body
3	Main IP Laws	Patent Law(promulgated by Decree-Law No. 30 of 2006)	Entry into force: December 12, 2006 Adopted: August 6, 2006	Patents(Inventions), Enforcement of IP and Related Laws, Transfer of Technology, IP Regulatory Body
4		Law No. 5 of 2005 on Protection of Trade Secrets	Entry into force: May 24, 2005 Adopted: March 2, 2005	Undisclosed Information(Trade Secrets), Enforcement of IP and Related Laws, Industrial Property
5		Law No. 6 of 2005 on Protection of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s	Entry into force: May 24, 2005 Adopted: March 2, 2005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Enforcement of IP and Related Laws, Transfer of Technology, IP Regulatory Body, Industrial Property
5		Law No. 9 of 2002 on Trademark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Entry into force: August 26, 2002 Adopted: June 15, 2002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Trade Names, Enforcement of IP and Related Laws, IP Regulatory Body

(2) 특허제도⁵⁰⁾

1)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특허는 발명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 특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청에서 허여된 권리로 정의되어 있다(특허법 제1조).⁵¹⁾

50) 영문 명칭은 'Law No. 30 of the year 2006 issuing Patents Law'이다.

51) Article 1.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hereby, the following terms and phrases shall have the meanings indicated next to each unless the context necessities otherwise:

The Ministry: 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

The Minister: Minister of Economy and Commerce

The Office: Patent Office at the Ministry

Patent: the certificate granted by the Office to the patent owner in order that his/her invention might get the legal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hereby and its executive bylaws

Contracting License: The license issued to others to exploit the patent subject to the consent of its owner

Mandatory License: The license issued by ministerial decre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in the cases identified by law.

특허는 새로운 공업제품·현대 산업기술·장치 또는 일반 공업제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단, 이슬람 샤리아 법규정과 저촉되거나, 공서양속, 윤리 또는 국가안보에 반하는 발명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동 법 제2조).⁵²⁾

특허의 대상은 재료, 산업공정 또는 제조기술의 형태도 될 수 있다. 다만, ①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순수한 지적활동 또는 특정 게임, ② 동식물 연구, 미생물학적 공정 및 그 생산물을 제외한 새로운 동식물의 생산 위한 생물학적 공정, ③ 인간 또는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취급에 관한 진단방법, 치료방법이나 외과적 수술기법 등은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3조).⁵³⁾

2) 권리의 효력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출원일로부터 특허보호 기간 만료일까지 기간 내에, 동 발명은 특허가 허여 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한다(동법 제11조).⁵⁴⁾

특허권은 권리자임이 인정된 자에게 허여하고, 여기에는 법률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타 세부사항이 외에 등록번호와 발행일이 기재된다. 특허권자는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누구도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는 그 특허를 실시 할 수 없다(동 법 제9조).⁵⁵⁾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받은 자는 동 법에 위반하거나 또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허락된 라이선스를 침해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그 발명 또는 동 발명을 이용·실시

52) Article 2.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inventions,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whether they are related to new industrial products, modern industrial techniques and devices, or common industrial methods. Besides, it shall not be contradicting with the provisions of Islamic Sharia(Law), violating the public order, ethics or national security.

53) Article 3. In the event of applying for more than one application for patenting the same invention, priority shall be given to the application date.

In case more than one person is involved in the same invention, they shall have equal right for patent unless otherwise agreed. A person shall not be deemed involved in the invention if his/her effort is confined only to implementation rather than creation.

Patent ownership shall be entitled to the employer if the invention is a product of an implementation of a contract or a commitment through devoting the whole effort to creativity, or if the employer proves that the worker has only achieved that invention through the utilization of facilities, aids or data provided to him/her by work. However, this shall not prejudice the worker's entitlement to a fair reward. The application may be submitted by the inventing worker during his/service or within two years of quitting service.

Whoever has an interest therein shall be entitled to submit a grievance to a committee -whose membership and competence are decided by a Ministerial decision -against the acceptance or refusal decision. However, the Committee's decision shall only be irrevocable after being approved by the Minister.

54) Article 11. The term of protection available shall not end b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wenty years counted from the filing date. Within the period from application date through the date of patent accomplishment, the invention shall enjoy the same protection granted for the patent.

55) Article 9. The patent shall be granted to the person who is authorized to be the right holder. It shall bear registration number and issue date in addition to other details as specified by the executive bylaws of the law hereby.

The patent shall allow its owner to exploit the patented invention through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the necessities of legitimate exploitation. No one shall be allowed to exploit the patent without an explicit written permission by its owner.

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부서에 대하여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동 법 제21조).⁵⁶⁾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특허협력조약 규칙 4.17을 따르고 있다. 타법에서 정한 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발명특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와 발명 또는 제조방식을 모방하거나 고의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만 카타르 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압류물품과 위조에 사용된 도구와 장비의 몰수하거나 파기를 명할 수 있다(동 법 제24조).⁵⁷⁾

3) 절차법

가) 심사절차

특허 심사절차는 상무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특허청(Patents Office)에서 이루어지며 동 절차는 ① 특허출원, ② 방식심사, ③ 실체심사, ④ 특허허여의 공표, ⑤ 특허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허는 카타르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자연인 또는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청에 출원을 할 수 있다(동 법 제5조).⁵⁸⁾ 출원언어는 아랍어가 사용된다.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요건으로 동 법 제6조에 규정된 파리조약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PCT에 기초한 국제특허출원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출원을 하여야 한다(동 법 제6조).⁵⁹⁾

심사청구제도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출원 시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56) Article 21. The patent owner or any other person to whom some or all of the patent rights have been transferred under the law hereby, shall be entitled to call upon the competent court to attach the invention or the enterprise or that part of the enterprise that uses or exploits the invention, in the event of any infringement or illegitimate acts in violation of the law hereby or the licenses granted in accordance with its provisions.

57) Article 24. Without prejudice to any tougher penalties prescribed by other laws, a penalty of no more than two years imprisonment and a fine not exceeding ten thousand Qatari Riyals, or either of the two penalties, shall be levied on whoever offers or gives incorrect or false information to obtain a patent, or whoever counterfeits an invention or a manufacturing technique, or intentionally trespasses on a right protected by the law hereby.

The court may judge by confiscating or destroying the seized objects and the tools and instruments used in counterfeiting.

58) Article 5. Without prejudic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pplicable in the State, any person, natural or judicial, Qatari or non Qatari, who belongs to, or assumes a real and effective activity center in any WTO member state or member entity that enjoys reciprocity with Qatar, shall be eligible to apply to the Office for a patent and any other rights pertaining to it in accordance with the law hereby.

59) Article 6. Patent registration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Office by the inventor, his/her authorized agent or assigne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executive bylaws of the law hereby.

The applicant may withdraw his/her application at anytime before the issuance of the final decision. However, application withdrawal shall not entail the withdrawal of documents or the refunding of any fees or costs.

The application may include the desire to give the priority to an application that has been previously submitted in a country which is one of the parties of an agreement or convention concluded with the State. The executive bylaws shall decide the details and conditions that govern the application.

일반적이며, 심사는 수수료의 지불일에 따라 조정된다. 한편, 조기심사는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다. 방식심사는 출원인의 표시에 관한 기재, 서류의 유무, 수수료 납부 등의 형식적인 요건 충족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진다.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실체적인 요건 충족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에 동법 제2조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슬람 율법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제3조에서 부등록사유 등을 검토한다. 특허에 관한 심사기준·가이드라인은 없다. 중요한 안건은 복수의 심사관에 의해 심사하는 구조이다. 분류 부여는 심사관이 수행하고, 특허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의 신청 및 법원에 대한 무효심판 등이 있다.

나) 이의신청

심사결과 출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가 공표된다.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은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8조).⁶⁰⁾

다) 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동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 법 제7조).⁶¹⁾ 모든 이해관계인은 동 법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에 발명특허 또는 강제실시권의 무효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정정심판제도는 없다.

(3) 상표제도⁶²⁾

1)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상표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상인, 제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제품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

60) Article 8. The Office, in case of patent acceptance, shall register and announce it in the manner identified by the executive bylaws of the law hereby.

Any one who might be concerned or interested may submit a written grievance to the Office within sixty days and the Office shall have to decide upon that grievance within thirty days. Non settlement within that period shall deem the grievance declined.

61) Article 7. The Office shall examine registration applications. In this regard, it shall be entitled to request all necessary documents for patent granting. The applicant may bring grievance against the office refusal decision within fifteen days of being notified by a registered mail at a committee whose membership and competence are decided by a Ministerial decision. The Committee's decision shall only be irrevocable after being approved by the Minist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Bylaws.

62) 정식명칭은 "Law No. 9 of 2002 on Trade Mark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 regulates the protection of trade and industrial marks" 이다.

표장은 다음 중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를 취할 경우 등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공업, 수공업 혹은 농업상의 제품, 임업 또는 광업 분야의 사업상의 제품 또는 거래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이 의도된 이름, 서명, 단어, 문자, 문자, 숫자, 그림, 사진, 기호, 스탬프, 이미지, 양각(부조), 기타 기호 또는 색채, 비기능 단색, 소리, 냄새, 기호의 조합 형태를 취할 경우이다(상표법 제6조).⁶³⁾

상표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은 부등록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① 식별성이 부족하거나 상품, 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는 것 또는 상품, 서비스의 보통 표시인 표장, ②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 ③ 국가 및 국제기관의 문장, 깃발, 그 외의 상징 및 명칭, 이러한 것들의 모방(단, 관계관청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 ④ 상품감독 및 보증에 관한 다른 국가의 공장 및 품질 보증 표시(단, 관계관청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 ⑤ 적십자의 심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벌, ⑥ 타인의 초상, 사진 또는 기장(그 사람이 미리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⑦ 명예의 표시나 출원인의 명예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⑧ 제3자의 명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또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 등록을 인정하여 제3자의 선출원(선등록)으로 마무리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표장, ⑨ 상품, 서비스의 출처나 특징에 관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또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 등록을 인정하여 제3자의 선출원(선등록)으로 마무리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표장.⁶⁴⁾

63) Article 6.A mark shall be considered worthy of registration in particular if it takes a distinctive form of any of the following: Names, signatures, words, letters, numerals, designs, pictures, symbols, stamps, seals, Imagery, reliefs .. and any other sign or a set of colors, a non-functional single color, sound, or smell, or a variety of signs, if used or intended to be used whether to distinguish the products of an industrial project, handicraft or agriculture, or private project in the fields of forestry or mining or products sold or services performed in the of trade.

64) Article 8. The following shall not be registered as a mark or as an element thereof:-

1. Marks that are free of any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r that be as only a description of thos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services or that consists of marks or data that are the normal designations in use for such products or services or their normal designs.
2. Any expression, drawing or sign contrary to morality or to the public order.
3. Public emblems and flags and other signs and names or titles related to any country or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lso any imitation of the above unless otherwise with a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levant authority.
4. Signs and official stamps related to any country or related to its control or guarantee over the products or services unless with a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levant authority.
5. Symbols which are identical or similar to the Red Crescent or Red Cross.
6. The picture, name or emblems of a third party unless with his prior written approval.
7. Indications of honorary distinctions to which the applicant doesn't prove that he is legally entitled.
8. Identical or similar signs somewhat confusingly to the public with a mark which has already been registered or an application was filed by a third party of an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or services or well-known signs even if there was no application was filed or registered in Qatar. Regardless of the extent to which the associated products or services or those for which a registration application was made are identical or similar.
9. Signs which are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or that consist of false data of the products or the services origin or other characteristics, as well as signs that maybe misleading with its contents of indication or trade name which are fictitious, unreal, falsified or counterfeit.
10. Marks which are identical or similar to symbols of religious nature.

2) 권리의 효력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18조).⁶⁵⁾ 그러나 상표권자는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동 법 제19조).⁶⁶⁾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동 법 제20조,⁶⁷⁾ 제36조,⁶⁸⁾ 제47조⁶⁹⁾에 규정되어있다. 상표권자는 제3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 및 상표로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공중을 오인 또는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위법하게 등록된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 또는 상표청은 민사법원에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동 법 제26조).⁷⁰⁾

65) Article 18. The duration of the protection of a mark shall be ten years starting from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owner of the mark shall have the right to the continuation of the protection for further continued periods of ten years each by a renewal of the registration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stipulated in the following Article.

66) Article 19. 1- Renewal of the registration shall be affected once payment of the renewal fees.

2. In the event of renewal, no inclusion of any change by addition may be made in the mark or in the list of product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mark is registered.

3. (a) The renewal fee must be paid within the final year of the current protection period.

(b) A grace period of six months shall be granted for the payment of the renewal fee after the expiry of the current protection period. In such case the owner of the mark shall be liable for payment of the prescribed additional fee.

4. Renewal of the registra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Gazette.

5. A mark which is not renewed cannot be registered by a third party in respect of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or services until at least three years have elapsed after it was not renewed.

67) Article 20. The owner of a registered mark shall have the right to prohibit others from using his mark, or any similar sign that could mislead the public, in respect of products or services for which the mark is registered or for similar products or services.

68) Article 36. The owner of the trade name shall have the right to prevent others from using the same, or using any sign resembling it in such way as to be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or create confusion in respect of the products or services associated to it.

69) Article 47. Without prejudice to any most severe sanction provided by any other law, a sanction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two years and a fine of not more than twenty thousand riyals, or either of these sanctions, shall be imposed on any person who doe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ctions:

1. Who forges a registered mark or imitates it, or imitates or forges a trade name, geographical indication or an industrial design or template, in a way that is likely to mislead or confuse the public.

2. Who uses a forged or imitated mark, trade name, geographical indication or an industrial design or template in bad faith.

3. Who fixes to his products or uses in connection with his products or services a mark, trade name or geographical indication belonging to another person in bad faith.

4. Who knowingly sells or offers for sale or trade, or holds for the purpose of sale, products bearing a forged or imitated mark, trade name, geographical indication or industrial design or template.

5. Who knowingly provides or offers services making use of a forged or imitated mark, trade name, geographical indication or industrial design or template.

70) Article 26.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Office or any person concerned may request the Civil Court to declare the registration of a mark null and void if the mark had been registered without a valid reason, the request may apply to the whole or part of the products or services.

The Office shall be notified of the final decision issued for the nullity and it shall be publicized in the Gazette after being noted in the registry, registration of a mark shall be considered to have never existed as from the date of this notation.

3) 절차법

가) 심사절차

상표심사는 상무산업부 산업재산보호국(Industrial Property Protection Office) 상표디자인GI청(상표청)에서 출원 순서에 따라 실시되며, 심사관의 심사건의 배포는 니스 분류에 따라 배포된다. 분류 부여는 심사관이 한다. 심사절차는 동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되어 따른다. 동 절차는 ① 등록출원, ② 방식심사, ③ 실체심사, ④ 출원공고, ⑤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카타르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 할 수 있지만 출원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해야 한다(동 법 제9조).⁷¹⁾ 우선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동 법 제10조).⁷²⁾

심사청구제도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출원 시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수수료의 지불 날짜에 따라 조정된다.

실체심사에서는 등록요건에 관한 사유에 대해 심사한다. 상표청은 출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절하거나 보정을 요구하고, 출원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한다(동 법 제11조).⁷³⁾ 상표에 관한 심사기준·가이드라인은 없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안건은 복수의 심사관에 의해 심사하는 구조이다. 상표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및 법원에 대한 무효신청 등이 있다.

나) 이의신청

상표출원이 접수된 경우 산업재산보호국이 그 표장을 관보에 공고한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동 관보에 게재된 후 4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2개월

71) Article 9. 1. The application of a mark registration shall be filed to Office on the form prepared for this purpose, after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2. A singl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may be filed for a group of marks after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3.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or bilateral treaties and agreements which are effective in Qatar if the applicant non-resident in Qatar, or has no real and actual place of residence, he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an agent which is resident in Qatar provided that the application accompanied by a certified power of attorney.

72) Article 10.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or bilateral treaties and agreements which are effective in Qatar, the applicant shall have the right to register the mark enjoy the right of precedence by virtue of an earlier application filed in another state, on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applicant shall attach a declaration with his application indicating the date and number of the earlier application and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tion was filed.

2. The other country shall be among those who grant Qatar reciprocal treatment.

3. The applicant shall file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of the date of the earlier application was filed, a certified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from the relevant authority in the other country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conditions.

73) Article 11. If the office sees that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not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 of this law, it may reject it, or impose whatever restrictions and amendments as it deems necessary to determine the mark to be registered and to be clarified more accurately.

And the office shall inform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with its decision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a registered acknowledgement of receipt, within thirty days of the application was filed.

이내에 그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출원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답변 없을 경우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는 관계자에 대한 해당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동 법 제15조).⁷⁴⁾

다) 심판

심사결과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출원은 거절되거나 제한 또는 보정을 부과하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산업재산보호국은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결정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절불복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제한 또는 보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해 출원은 무효로 간주된다(동 법 제13조).⁷⁵⁾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 또는 제3자가 연속해서 5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상표의 취소를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동 법 제24조).⁷⁶⁾ 한편, 정정심판 제도는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권리 허여 후 원서 정정, 지정상품·서비스 변경 삭제, 상표형태, 출원인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정을 할 수 있다.

4)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지리적 표시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다면 상표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명성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은 수입된 유사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동 법 39조).⁷⁷⁾

상표에 관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상품원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등록을 출원할 수 있

74) Article 15. 1- In the event that the mark is accepted or a decision or resolution issued under Articles (13) and (14) of this law is in favor of the applicant, the office shall publicize the mark in the Gazette.

75) Article 13.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may appeal against the office decision within sixty days from the date of his notification; the appeal shall be decided by a committee formed by a decision of Minister which consists of three members under the chairmanship of a judge.

76) Article 24. 1. Any person concerned may request the court to cancel the mark if the owner has failed to use the mark or to cause it to be used by others in Qatar for five consecutive years without reasonable justification. The request for cancellation may apply to the whole or part of the products or services for which the mark was registered. The case for cancellation shall not be accepted only after at least one month has elapsed from the date the applicant for cancellation notified the owner of the mark regarding the use thereof.

2. The court shall issue a ruling of cancellation after confirming that the owner has abandoned the use of the mark without reasonable justification.

3. The final decision issued for the cancellation of a mark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Office and the owner of the mark.

4. Cancellation shall be publicized in the Gazette and noted in the Registry, registration of a mark shall be deemed to have never existed as from the date it ceased to be used.

77) Article 39. Persons residing in a place particularly famous for the production of certain products may prevent those trading in similar products from another place, or from placing their marks on them, if it is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in relation to the source of those products, even if these marks do not contain the names of those persons or their addresses, unless measures to ensure the prevention of any confusion are not taken.

으나, 등록출원으로 출원인에게 동 표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허락되는 것은 아니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는 동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동 법 제40조).⁷⁸⁾

(4) 디자인제도

카타르는 산업도안 및 디자인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동 법은 상무산업부가 발의하였다.

동 법안에는 지식재산보호국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관보에 동 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모든 사항을 게재하고, 지식재산보호국에서는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한 모든 산업도안 및 디자인, 그 권리자에 관한 사항, 재산권양도 및 이전, 강제실시권자에 관한 사항, 실시권양도, 갱신, 소멸, 무효 또는 이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등록한 산업도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자는 제3자가 해당도안 또는 디자인을 제작,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산업도안 또는 디자인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 기간은 2회에 걸쳐 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⁷⁹⁾

(5) 저작권제도⁸⁰⁾

1) 개요

카타르 저작권법(Law No.25 of 1995)은 1995년 7월 22일에 제정되어 관보 제14호에 게재되었다. 2002년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법률(Law No. 7 of 2002)이 제정되어 2002년 10월 3일 발효되었다.

2) 보호대상 및 요건

저작권은 작품의 가치, 품질, 목적 또는 표현 방법을 불문하고 문학, 예술 작품의 원저자에 주어진다. 보호대상이 되는 주요 저작물로 ① 서적, 팸플릿, 기타 문장, ② 강연, 연설, 설교, 시, 찬송가 등과 같은 구술 작품, ③ 연극, 뮤지컬, ④ 음악작품, ⑤ 안무, 무언극, ⑥ 시청각작품, ⑦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작품, ⑧ 응용 미술작품, ⑨ 소묘, 건축, 조각, 장식예술, 스케치, 디자인 등, ⑩ 컴퓨터 프로그램, ⑪ 번역, 요약 개편설명,

78) Article 40. Any natural or legal person concerned may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to protect the origin of a particular commodity, and the acceptance of the registration shall not result in any exclusive right to the applicant, and any person who engages in activity in that geographical origin may use the same.

79)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동향, 카타르, 산업도안 및 디자인보호법 제정(2017.3).

80) 정식 명칭은 "Law No. 7 of 2002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다.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민속학 작품 등의 수집된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저작권법 제2조,⁸¹⁾ 제3조⁸²⁾).

민속학에 대해서는 국민의 민속학은 국가의 공공 재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의 민속학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동 법 제32조).⁸³⁾ 국민의 전통적 예술유산에 대한 정의 규정에는 예술의 다방면에서 민화, 시, 수수께끼와 같은 구술 표현, 음악적 표현, 춤, 연극, 의식과 같은 움직임이 있는 표현, 공예, 장식작품(회화, 조각, 도자기, 나무세공, 모자이크, 금속, 보석, 손뜨개가방, 뜨개질, 용단, 직물), 악기, 건축구조물 등이 규정되어 있다(동 법 제1조).⁸⁴⁾

-
- 81) Article 2. Protection under this Law is conferred to authors of original literary and artistic works, irrespective of the value, quality, purpose or mode of expression of these works. Protection shall cover particularly the following works:
- (1) books, pamphlets and other writings;
 - (2) works delivered orally such as lectures, addresses, sermons or similar works such as poems and hymns;
 - (3) dramatic and dramatico musical works;
 - (4) musical works, whether or not they include accompanying words;
 - (5) choreographic works and pantomimes;
 - (6) audiovisual works;
 - (7) photographic and similar works;
 - (8) works of applied art, whether handicraft or produced on an industrial scale;
 - (9) works of drawing and painting with lines and colors, architecture, sculpture, decorated arts, engravings, sketches, designs and three-dimensional geographic or topographic works;
 - (10)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shall also extend to the title of the work if it is original.
- 82) Article 3. Notwithstanding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preceding Article, the following derived works shall be protected by the provision of this Law:
- (1) works of translation, summary, alteration explanation and other modifications;
 - (2) collection of encyclopedias and selections if creative in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their subject matter;
 - (3) data bases if creative in the arrangement of selection of their subject matter;
 - (4) Collections of works and expressions of folklore if creative by reason of arrangements or selection of their subject matter.
- 83) Article 32. The State, represented by the Ministry shall protect national folklore by all legal means, and shall act as the author of folklore works in facing any deformation, modification or commercial exploitation.
- 84) 1.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the following words and expressions shall have the meaning given for each, unles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 Publication: Reproduction of works or sound recordings to satisfy the needs of the public,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Author, copyright owner or sound recording producer.
- Reproduction: Production of one or more copies of work by means of printing, painting, engraving, photography, in form or in any manner, including permanent or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
- Audiovisual work: Work that consists of a series of related images which imparts the impression of motion, with or without accompanying sounds, susceptible of being made visible, and where accompanied by sounds, susceptible of being made audible.
- Sound recording: Any exclusively oral fixation of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f other sounds, regardless of the method by which the sound or a performance are embodied and regardless of the medium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it does not include a fixation of sounds accompanying an audiovisual work.
- Producer: A physical person who, or entity which, takes the initiative to, and has responsibility for making the audiovisual or oral work.
- Broadcasting: Communication of a work, a performance or a sound recording to the public by wireless transmission, including transmission by satellite.
- A collective work: A work created by a number of physical persons at the initiative and under the direction of a physical person who, or legal entity which, takes the responsibility of publishing the work under his or its name provided that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 individual contribution of each.
- Work of joint authorship: A work in the making of which two or more persons participated and each of which work can be separated and distinguished.
- Work of applied art: An artistic creation with utilitarian functions or incorporated in a useful article whether made handcraft or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다만, 동 법 제36조에 따라 출원 및 저작물을 사무소에 기탁하고자 하는 저작물권자 및 저작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①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이름, ② 작업의 주제, ③ 저작물 5부, ④ 저작물의 세부 사양, ⑤ 저작자의 저작물 소유권에 대한 서면 선언, ⑥ 저작물을 출판하는 방법을 명시한 저작자의 서면 선언, ⑦ 간행물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 관할 부서의 작업 승인.⁸⁵⁾

한편 저작권은 앞서 살핀 산업재산권과 달리 심사 등의 출원·등록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작성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창작물은 동법에 따라 권리가 보호된다.

2) 권리의 효력

저작자는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갖는다. 저작권자는 복제, 번역, 배포, 대여, 공연, 공중 송신 등의 행위를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동 법 제7조⁸⁶⁾ 및 제10조⁸⁷⁾).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produced on an industrial scal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e transmission by wire or without wire of images or sounds, or both, of a work, a performance, a sound recording or a broadcast.

Owner of copyright: One of the following persons:

- The Author

- Where the economic rights are originally invested in a physical person other than the Author or a legal entity, that person or entity.

- A physical person or legal entity to whom the ownership of the economic rights has been transferred.

Performers: Singers, musicians, and other persons who sing, deliver, declaim, playing,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

Public Performance: Performing the work, either directly or by means of any device or process, by recitation, playing, dancing, acting or otherwise performing the work. Performance is deemed to be public if it can be perceived at a place where persons outside the normal circle of the family and its closest acquaintances are or can be present.

Neighboring rights: Rights that protect performers, producers of sound recording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National folklore: Any expression which consists of distinctive elements of the traditional artistic heritage, originating or developed in the State of Qatar and reflects its artistic heritage, shall be considered as national folklore, including in particular the following expressions:

(1) oral expressions such as tales, popular poetry and riddles;

(2) musical expressions such as popular songs accompanied by music;

(3) motion expressions such as popular dances, plays, artistic forms and rituals, whether or not incorporated into material form;

(4) tangible expressions such as:

(a) products or popular art particularly drawings with lines and colors, engravings, sculptures, ceramics, pottery, woodwork, mosaic, metal, jewelry, handwoven bags, knitting, carpets, textiles, and;

(b) musical instruments;

(c) architectural forms.

85) Article 36. Coauthorship of an audiovisual work includes the following:

(1) author of the scenario or the written idea;

(2) author of the dialogue;

(3) editor of the existing literary work, adapting it to the audiovisual work;

(4) composer of the music it especially compose for the audiovisual work;

(5) producer, if he exercises an effective control and provides positive intellectual input to realize the work in all its aspects.

Where the audiovisual work is adapted or extracted from another previous work, the author of the previous work shall be considered as a coauthor of the new work. His name shall be explicitly mentioned in reference to the adaptation or extraction.

86) Article 7. The Author or the owner of the copyright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carry out or to authorize any of the following

저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이다. 경제적 권리는 저자의 생애 동안 그리고 그의 사망 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원본, 예술 또는 문학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생존 한 공동 저작자의 사망일로부터 50년 동안 권리가 보호된다. 시청각 또는 집단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이 처음 출판된 날로부터 50년간 권리가 보호된다(동 법 제15조).⁸⁸⁾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에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므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전자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저작물, 공연, 음원 또는 방송을 배포하거나 그러한 저작물을 대중에게 배포, 전송 또는 통신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전자 데이터가 허락 없이 제거 또는 수정되었음을 알고 무단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명시된 모든 경우에 저작권 침해 저작물 사본 및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에 사용된 모든 도구의 몰수를 명령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동 법 제51조).⁸⁹⁾

-
- acts:
- (1) reproduction of the work;
 - (2) translation of the work;
 - (3) making excerpts, musical arrangement or other transformation of the work;
 - (4) distribution to the public of the work through sale;
 - (5) rental to the public of audiovisual works or computer programs. However, the right to rental shall not apply to rental of computer programs where the program itself is not the essential object of the rental;
 - (6) public performance of the work;
 - (7) communication of the work to the public.
- 87) Article 10. The author of a work shall have the following moral rights:
- (1) To have his name or pseudonym indicated on his work or not to have his name indicated on his work;
 - (2) To object to any distortion, deformation or any other modification of his work;
 - (3) To object to any distortion and to prohibit any other use of his work which would be prejudicial to his honor or reputation.
-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Articles are imprescriptible and perpetual.
- 88) Article 15. The economic rights shall be protected during the life of the Author and for fifty calendar years after his death. Protection for original, artistic or literary work shall be for the following durations:
- in the case of the work of joint authorship, the rights shall be protected for fifty calendar years from the date of the death of the last surviving coauthor.
 - in the case of audiovisual or collective work, the rights shall be protected for fifty years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work was first published. For works that are not published,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run from the first day of the calendar year after the completion date of the work.
 - in the case of a work published under a pseudonym or published anonymously, the rights shall be protected for fifty calendar years from the first day of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work was first published. Nevertheless, where the pseudonym used by the author leaves no doubt as to the author's identity,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be calculated as from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e author's death. This provision applies where the author reveals his identity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rotection period.
- 89) Article 51. The following acts shall be considered illegal act and infringements of the rights protected under this Law:
- (1) manufacture or imports of any devices or instruments with an intention of using them through sale, rental or other means, if they were designed or meant to deactivate any devices or instruments preventing or limiting the reproduction of a work, a sound recording, or a broadcast, or if meant to undermine the quality of the work;
 - (2) manufacture or import of any devices or instruments with the intention of using them through sale, rental or other means, if they can enable the reception of codified programs broadcast or communicated to the public in any other way, including programs communicated through satellite, or if they facilitate such transmission to persons not entitled to receive such programs.
 - (3) remove or modify any electronic data relating to copyright administration, without authorization.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시설 폐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침해소송이 반복되는 경우 침해자에 대한 제재는 두 배가 되며, 모든 보존 조치 및 제재는 저작권 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에도 적용된다(동 법 제 52조).⁹⁰⁾

3) 절차법

카타르에서 법원은 권리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다음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② 침해 사본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압류 명령, ③ 침해사본 및 복제에 사용된 도구의 압수명령, ④ 적절한 손해배상 명령, ⑤ 침해로 인한 부당이익의 압류명령.

청구인이 권리의 소유자이며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임박한 침해를 당하고 있음이 입증된 경우 법원은 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와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적 조치로서 특정절차를 명할 수 있다(동 법 제47조).⁹¹⁾

(4) distribute works, performances, sound recordings or broadcasts, or import such works for distribution, transmission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r provide them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zation, knowing that electronic data relating to copyright administration were removed or modified without authorization.

Any person who commits any of the preceding infringem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a period not less than six months and not more than one year.

90) Article 52. In all cases specified in this Chapter it is imperative to order the confiscation of the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and all implements used in the reproduction. A decision may also be taken to close down the establishment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month and not more than three years. In case of recurrence, the sanctions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shall be doubled, and the Court may also order the publication of the judgment in one or more newspapers at the expense of the convicted party.

91) Article 47. (a)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of the owner of the right or any of his successors or hirers, take the following procedure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 (1) grant injunctions to prohibit the committing of infringement;
- (2) order the seizure of the infringing copies or any part thereof;
- (3) seizure of infringing copies and implements used in the reproduction;
- (4) ordering the appropriate indemnification;
- (5) seizure of profits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b) If it is proved that the plaintiff is the owner of the right and that his right has been infringed or subject to an imminent infringement, the Court may order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ubsection (a) of this Article as a conservatory measure to prevent infringement or to preserve an evidence related to the infringement.

(c) in cases where delay may prejudice the holder of the right beyond compensation or in cases where there is a proved risk of losing material which constitutes evidence related to the infringement, the Court may take any of the measures provided or in subsection (a) of this Article, as conservatory measures, without notifying the defendant and in his absence, and the prejudiced parties shall be notified by the measures taken by the Court as soon as such measures are implemented. The defendant may request a hearing, within thirty days after his notification by the measures. The Court shall decide, in such a session, to endorse, modify or repeal the conservatory measure.

(d) the petition for conservatory measures shall be submit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b) and (c) of this Article, with an appropriate financial deposit, to prevent abuse and secure damages for the defendant, if the petition does not prove true.

(e) upon request from the defendant, the conservatory measures take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b) and (c) of this Article shall be repealed if the action is not filed within fifteen days from the date of the Court's order to take the measures.

(f) in the cases where the conservatory measure taken according to paragraphs (b) and (c) of this Article is repealed because of the expiry of the period for filing the action, the inability of the plaintiff or where it is proved that there is no

한편 예외조항으로는 사적이용, 정당한 인용, 교육목적으로의 이용,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종교기사 등으로의 이용 등 정당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92 제19조93).

(6) 우리나라 제도와외의 비교 및 시사

카타르는 지식재산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을 식 개별의 법제로 입법하고 있다.

카타르의 특허 보호요건을 살펴보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상표의 보호요건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대상 요건에 있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해 그 적격을 부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다만,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종교적 요건이 있는 것이 차이로 볼 수 있다. 디자인 보호요건은 ‘혁신적(innovative)’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실용신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는 우리 제도와 차이가 있다.

한편, 저작권에 있어 카타르는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기사뿐만 아니라 유사 방송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용 또는 복제할 수 있는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타르의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보호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타르 저작권

infringement or an imminent infringement, the Court may, upon request of the defendant, order appropriate indemnification for prejudice caused by such measures.

(g) the Court may order the petitioner, who arbitrarily requested any of the measures stipulated in this Article, payment of adequate indemnification to the party against whom the measures were taken, to compensate the damages sustained as a result of such abuse.

92) Article 18. The following uses of a protected work are permitted without the Author's authorization:

- (1) using the work exclusively for personal use, through reproduction, translation, quotation, musical arrangement, acting, broadcast listening, television viewing, photography or by any other means;
- (2) using the work by way of illustration for teaching, through publications, broadcasts, sound or visual recordings, films or by any other means, to the extent justified by the purpose, provided that the use is nonprofit making and the source and the name of the author are indicated. The uses provided for in the two preceding items shall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or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 (3) citing paragraph of a work in another work for the purpose of illustration, demonstration or criticism, within the acceptable practice and as justified by the purpose, provided that the source and the name of the author are indicated.

93) Article 19. The reproduction in a newspaper or periodical, the broadcasting or othe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n article published in a newspaper or a periodical on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or religious topics or a broadcast work of the same character, shall be permitted. This permission i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clearly indicate the source and the name of the author, when known.

Nevertheless, this exception shall not apply where the authorization right of reproduction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s explicitly reserved by the author.

It is also permitted to reproduce any work that can be seen or heard through informatory display of current events, photography or television or any other information massmedia, provided it remains within the information objective determined, with an indication to the author's name.

법은 저작권을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사후 70년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단기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타르의 심사제도는 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한편 카타르 특허, 상표, 디자인의 심사기준·가이드라인은 없다. 또한, 이의신청 및 심판의 청구는 가능하나 그 구체적인 절차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카타르의 지식재산 보호요건은 이슬람 율법의 개입이 명시된 바와 같이 상당히 엄격하다. 이는 외국인이 출원하거나 지식재산의 국제교류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종교나 법제도는 개별 국가의 고유 권한의 영역이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지식재산 출원 및 보호를 위한 예외요건 마련 등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카타르의 지식재산 출원은 증가세에 있으나 심사나 심판 등에 있어서 제도적 미비와 제한된 인력으로 대규모의 출원을 소화하거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효율적인 심사의 진행 및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절차적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글로벌 스탠드에 따르는 특허, 상표, 디자인의 심사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심사지침 등의 제공은 지식재산 출원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장차 대상물이 보호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이다. 카타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자 관련 법체계 정비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지식재산 국제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II 국제지식재산 지표를 통한 분석

1.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⁹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 및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민간회의로 1971년에 창립되었다. WEF는 매년 전 세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국가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CR)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쟁력 순위를 발

94)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표하고 있다. 2019년 평가⁹⁵⁾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체계⁹⁶⁾ 하에 4대 분야, 12개 부문, 103개 항목(통계 56개, 설문 47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⁹⁷⁾

카타르는 2018년 5G 상용망 구축을 발표한 중동 지역 최초의 5G 도입국으로 성인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99.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휴대전화 보급률 142% 등 ICT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⁹⁸⁾ 2019년 국가경쟁력보고서(GCR)에 따르면 카타르의 국가경쟁력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한 29위(총 141개국)로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이스라엘(20위), 아랍에미리트(25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 보호 점수는 74.5점으로 전체 141개국 중 2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권 부분의 경우 74.1점으로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3-31 2019년 WEF 국가경쟁력 주요지수

	IP 보호	재산권	국가경쟁력
카타르	74.5(23위)	74.1(26위)	72.9(29위)
이집트(Egypt)	47.5(89위)	69.0(34위)	54.5(93위)
이스라엘(Israel)	76.0(17위)	74.0(27위)	76.7(20위)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71.7(27위)	78.9(15위)	70.0(36위)
터키(Turkey)	47.9(87위)	54.2(78위)	62.1(61위)
아랍에미리트(UAE)	75.8(19위)	77.7(18위)	75.0(25위)
쿠웨이트(Kuwait)	51.8(71위)	57.3(64위)	65.1(46위)
레바논(Lebanon)	38.5(120위)	50.8(95위)	56.3(88위)
잠비아(Zambia)	44.1(106위)	52.3(85위)	46.5(120위)

카타르의 경우 국가경쟁력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순위는 29위로 한국(13위)보다 낮지만 지식재산권 및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한국(50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이스라엘이 20위, 아랍에미리트가 25위를 기록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7위, 19위로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카타르의 경우 국가경쟁력 및 지식재산 보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95) 2020년의 경우 데이터 수집부족과 코로나 위기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지 않고 37개국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특별 판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Special Edition 2020)를 발간하였다.

96) 2018년부터 평가체계 개편(시의성·객관성이 부족한 항목 삭제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 추가).

97) 통계 및 설문은 WEF가 IMF, WB, WTO 등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통계를 직접 수집하거나 해당 국가의 파트너 기관을 통해 실시하였다.

98) 류강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카타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1.4.30), 6면.

2. 소프트웨어연합(BSA)의 Global software survey 보고서⁹⁹⁾

소프트웨어 연합(The Software Alliance¹⁰⁰⁾, BSA)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중심으로 1988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단체이다. 미국 본부(워싱턴 DC)와 30개국 이상에 지부를 두고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 증진과 함께 기술혁신 촉진 및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공공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¹⁰¹⁾ BSA에는 어도비, 애플, 오라클, 인텔과 같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저작권 보호 활동 및 연구의 일환으로 IDC와 협력하여 11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률 및 상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Global Software Survey)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SA는 세계 주요국의 SW 불법 복제율 및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손해액)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격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2018년 보고서가 발간되어 있다. SW 불법 복제율은 불법 소프트웨어 총합계를 대상 년도에 인스톨된 소프트웨어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총수는 인스톨된 소프트웨어 총수로부터 정규소프트웨어 총수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정규 소프트웨어 총수는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를 소프트웨어 평균단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인스톨된 소프트웨어 총수는 소프트웨어가 인스톨된 컴퓨터 대수에 1대당 소프트웨어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불법 복제에 따르는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은 불법 소프트웨어 총수에 소프트웨어 평균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표 3-32 2017년 주요국의 SW 불법복제율

구분	SW 불법복제율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미 달러 기준)
카타르	47%	\$64(6400만)
이집트(Egypt)	59%	\$64(6400만)
이스라엘(Israel)	27%	\$165(1억6500만)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47%	\$356(3억5600만)
터키(Turkey)	56%	\$208(2억800만)
아랍에미리트(UAE)	32%	\$210(2억1000만)
쿠웨이트(Kuwait)	57%	\$86(8600만)
모로코(Morocco)	64%	\$52(5200만)
레바논(Lebanon)	69%	\$61(6100만)
잠비아(Zambia)	80%	\$4(400만)
세계평균	37%	\$46,302(463억200만)

99) BSA, "Global Software Survey", 2018.6, <https://gss.bsa.org/wp-content/uploads/2018/05/2018_BSA_GSS_Report_en.pdf>.

100) 설립 당시의 명칭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usiness Software Alliance)였으나 2012년 Business를 삭제하고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01) BSA 홈페이지(<https://www.bsa.org/about-bsa>, 2021.6.15. 최종방문).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2015년 39%에서 2017년에는 사용률이 37%로 낮아졌으며,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역시 전년도 대비 8% 낮아진 약 4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불법 복제율이 감소했다는 점은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여전히 불법 복제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SW 불법복제율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27%, 3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잠비아는 무려 80%로 높은 복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47%로 세계평균 보다 10% 높은 복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3.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¹⁰²⁾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국제통상교섭이나 통상정책을 소관하는 대통령 직속의 연방정부기관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는 USTR 외에 상무성, 국무성 등이 있으나 USTR은 이들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의하여 대외교섭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제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동법에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당해 국가와의 협의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국가를 감시하여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USTR은 동법 제182조에 따라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감시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비하고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이 곤란하여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이며, 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문제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국가이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02) USTR (2021), "2021 Special 301 Repor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

표 3-33 2021년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중동·아프리카)

구분	경계수준
카타르(Qatar)	-
이집트(Egypt)	감시대상국(WL)
이스라엘(Israel)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우선감시대상국(PWL)
터키(Turkey)	감시대상국(WL)
아랍에미리트(UAE)	-
쿠웨이트(Kuwait)	감시대상국(WL)
모로코(Morocco)	-
레바논(Lebanon)	-
잠비아(Zambia)	-

2021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감시대상국(PWL)의 경우 중국, 인도 등 9개¹⁰³⁾ 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다. 감시대상국(WL)의 경우 캐나다, 베트남, 태국 등 23개¹⁰⁴⁾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터키, 쿠웨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카타르의 경우에는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의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¹⁰⁵⁾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은 미국 내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의 연합단체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필름제작자협회(AFMA), 미국출판협회(AAP), 미국영화제작자협회(MPAA), 미국음악출판협회(NMPA) 및 미국음반제작자협회(RI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저작권 환경 개선, 진입 장벽에 의해서 폐쇄적인 상황에 있는 국외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IIPA는 저작권 산업의 번영을 위해 외국 시장들이 높은 보호 수준의 저작권법을 갖고, 효율적인 저작권 집행과 건전한 라이선싱이 가능한 법적 구조를 제공하며, 시장 진입 장벽과 불공정 경쟁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USTR이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간에 IIPA가 작성한 각국별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자료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IIPA가 USTR의 보고서 발간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03)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04) 알제리,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05) IIPA, "2021 SPECIAL 301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ND ENFORCEMENT", 2021.1.28.

표 3-34 2021년 IIPA의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

구분	경계수준
카타르(Qatar)	-
이집트(Egypt)	-
이스라엘(Israel)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
터키(Turkey)	감시대상국(WL)
아랍에미리트(UAE)	감시대상국(WL)
쿠웨이트(Kuwait)	-
모로코(Morocco)	-
레바논(Lebanon)	-
잠비아(Zambia)	-

USTR의 보고서와 달리 IIPA의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11개의 우선감시대상국(PWL)과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9개의 감시대상국(WL)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IIPA의 보고서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의 경우에는 IIPA의 보고서에서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터키의 경우에는 IIPA 및 USTR의 보고서에서 모두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IIPA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분야에서의 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세계혁신정책센터(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¹⁰⁶⁾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¹⁰⁷⁾)는 2012년부터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분석한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를 개발 및 발표해 왔다. 2021년에는 3월 24일 2021 국제지식재산지수(2021 GIPC international IP Index Report(제9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는 국가별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수준 등 제반 현황을 분석하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로 각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자산의 사업화, 지식재산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같은 9개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106) GIPC, "US Chamber 2021 International IP Index", 2021.3.24., <https://www.valueingenuity.com/wp-content/uploads/2021/03/GIPC_IPIndex2021_FullReport.pdf>.

107) (舊) 글로벌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표 3-35 2021년 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

구분	점수
카타르(Qatar)	-
이집트(Egypt)	32.59점
이스라엘(Israel)	72.57점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40.38점
터키(Turkey)	51.07점
아랍에미리트(UAE)	41.98점
쿠웨이트(Kuwait)	27.86점
모로코(Morocco)	59.62점
레바논(Lebanon)	-
잠비아(Zambia)	-

2020년에는 전체 글로벌 IP 환경이 개선되어 53개 국가 중 32개 국가에서 IP 지수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난 9년 동안 많은 인도와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점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95.31점을 받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영국 93.90점, 독일 92.27점, 프랑스 91.43점이었으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72.57점, 터키 51.07점, 아랍에미리트 41.98점, 사우디아라비아 40.38점 등을 기록하였다. 카타르는 평가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재산권연맹(PRA)의 국제재산권지수 보고서¹⁰⁸⁾

재산권 연맹(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은 전미세계개혁협의회의 관련단체이다. 미국 내외의 제외국을 포함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재산권지표(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재산권 보호 지표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며,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IPRI는 평가지표에 지식재산권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는 최저 0점부터 최고 10점으로 산정하고 있다.

108) PRA,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20 Report", 2020.10.20., <<https://atr-ipri2017.s3.amazonaws.com/uploads/IPRI+2020+Full+Report.pdf>>.

표 3-36 2020년 PRA의 국제재산권지수

	지식재산권	국제재산권 지수
카타르(Qatar)	6.376(35위)	7.100(26위)
이집트(Egypt)	5.628(63위)	5.506(63위)
이스라엘(Israel)	7.606(20위)	7.120(25위)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6.001(48위)	6.462(36위)
터키(Turkey)	5.648(61위)	5.404(66위)
아랍에미리트(UAE)	7.192(23위)	7.495(21위)
쿠웨이트(Kuwait)	4.742(80위)	5.676(57위)
모로코(Morocco)	5.879(54위)	5.926(53위)
레바논(Lebanon)	3.474(120위)	4.349(108위)
잠비아(Zambia)	3.624(117위)	4.504(104위)
전체평균(129개국)	5.545	5.728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국제재산권 지수는 아랍에미리트가 7.495점으로 129개국 중 21위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카타르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이어 7.100점으로 26위를 기록하였다.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이스라엘이 7.606점으로 20위를 기록하였으며, 카타르의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6.376점을 기록하며 35위를 기록하였다.

7. 유럽위원회(EC)의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¹⁰⁹⁾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1958년에 설립된 유럽연합(EU)의 정책집행기관이다. 28명의 위원에 의한 합의체로 운영되고 법안 제출, 예산 관리, 국제협정 및 교섭 등을 포함한 EU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EC는 2006년부터 격년으로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월 20일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EU 이외의 국가들을 제3국으로 지칭하고 이들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상황이 EU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려되는 국가들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그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9) EC,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april/tradoc_159553.pdf>.

2021년 보고서에서 우선순위로 구분된 국가는 모두 13개 국가이며, 우선순위의 설정은 높은 쪽으로부터 1에서 3까지 3단계로 평가된다. 우선순위1에 지정된 국가는 중국이며, 우선순위2에 지정된 국가는 4개국이다. 중동·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터키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순위3에는 8개국이며, 중동·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다.¹¹⁰⁾ 카타르는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3-37 2021년 EC의 제3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우선순위(경계수준)
카타르(Qatar)	-
이집트(Egypt)	-
이스라엘(Israel)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3
터키(Turkey)	2
아랍에미리트(UAE)	-
쿠웨이트(Kuwait)	-
모로코(Morocco)	-
레바논(Lebanon)	-
잠비아(Zambia)	-

8. 평가

카타르는 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왕이 통치하고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육로로 인접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및 이란과는 해상에서 인접하고 있다. 카타르는 그 면적이 11,400 평방 피트에 달하며 작은 규모의 국토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석유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인 도하는 2006년 아시안 게임의 개최지이기도 하다. 2020년 6월 기준 약 2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1인당 70,780 달러(세계 6위)의 GDP를 기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특허법, 경쟁보호 및 독점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상의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이 있으며,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상표법에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상표법 규정이 적용된다. 카타르는 걸프 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¹¹¹⁾ 특허청의 회원국으로 GCC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증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서 발명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카타르 특허청은 2012년 9월부터 PCT 국내 단계 출원을 받기 시작했으며 카타르에는 별도의 실용신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110) (우선순위1) 중국 (우선순위2)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우선순위3)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111) GCC는 아랍 국가의 국제 경제 협력체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회원국이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으로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설립협약(1967년), WIPO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특허 협력 조약(2011년) 등이 있다. 카타르는 1996년 WTO 가입을 통해 121번째 회원국이 됨으로써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2005년 10월 28일부터 WIPO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카타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표 3-38 카타르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정리

구분	주요내용			
WEF(지재보호)	5.8(20/138) (2016-2017)	5.8(22/137) (2017-2018)	5.3(27/140) (2018)	5.5(23/141) (2019)
BSA(불법복제)	50%(2011)	49%(2013)	48%(2015)	47%(2017)
USTR(경계수준)	감시대상국(2002)	-	-	-
IIPA(경계수준)	-	-	-	-
PRA(지재권)	6.56/5.50(127개국) (2017)	6.51/5.54(125개국) (2018)	6.27/5.55(129개국) (2019)	6.38/5.55(129개국) (2020)

세계경제포럼(WEF)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낮아졌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4위가 상승하며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연합(BSA)의 보고서에 따라 2011년 50%에서 2017년 47%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권연맹(PRA)의 국제재산권지수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카타르는 2001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행위와 함께 TRIPS 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해 저작권 및 상표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인정받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해당 법안의 미시행 및 지속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2002년에 바하마와 함께 다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¹¹²⁾ 이듬해인 2003년 6월 저작권법과 상표법 개정, 같은 해 8월 상표 감독을 위한 위원회 설립 등을 인정받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¹¹³⁾ 이후 2014년 USTR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지난 25년간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 많은 발전을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는데¹¹⁴⁾ 이를 통해 중동지역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의 평가에 있어서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112) USTR, 2002 Special 301 Report(2002), p.32.

113) USTR, 2003 Special 301 Report(2003), pp.34-35.

114) USTR, 2014 Special 301 Report(2014), p.2.

III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

1. 지식재산 출원(거주자 + 해외, 지역 포함)과 경제성장

WIPO의 IP 통계(2010-2019)에 따르면, 카타르의 특허 및 상표(분류별 건수) 신청(filing) 건수는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그 후 소폭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의 경우 2013년 84건에서 2014년 17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후 2016년 142건, 2017년 134건, 2019년 130건을 기록하였다. 상표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역대 최고치인 6,873건을 기록하였고, 그 후 2017년 4,480건, 2019년 4,595건을 달성했다. 산업디자인(디자인 건수)의 경우 0건을 기록하였으며, GDP(2017년 미국 달러 고정가)의 경우 2010년 186.92에서 211.92로 대폭 향상한 뒤 큰 변동 없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표 3-39 IP 신청(거주자 + 해외, 지역 포함)과 경제 성장

연도	특허	상표 (분류별 건수)	산업디자인 (디자인 건수)	GDP (2017년 미국 달러 고정가)
2010				186.92
2011		3,620		211.92
2012	71	2,324		221.85
2013	84	4,723		231.63
2014	174	6,873		240.85
2015				249.66
2016	142			254.98
2017	134	4,480		259.01
2018				262.88
2019	130	4,595		262.39

Source: WIPO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03/2021

2.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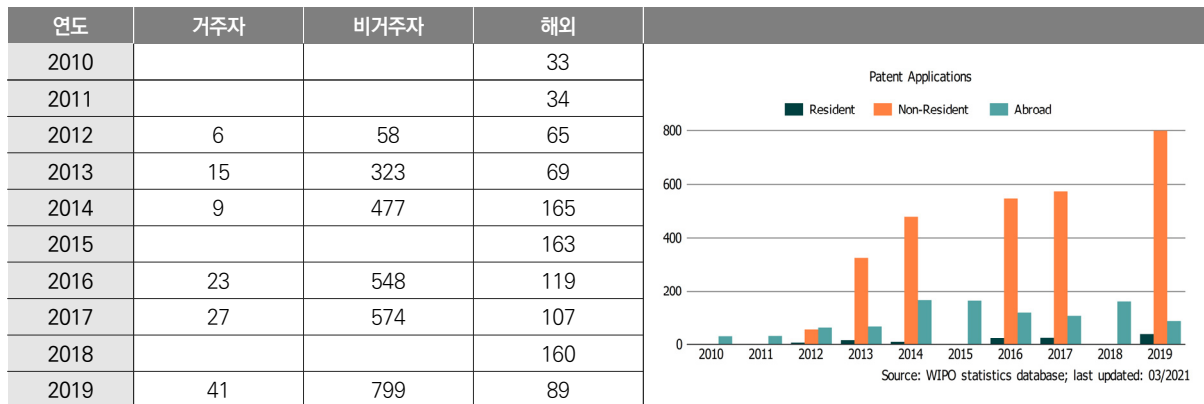
(1) 특허 출원 현황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거주자에 의한 출원은 적으며 주로 카타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와 해외 출원인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주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출원 건수가 40건을 넘기지 않았다.

비거주자의 경우 2012년 58건에서 2013년 323건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후에도 2014년 477건, 2016년 548건, 2017년 57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799건으로 또 한번 크게 증가하였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2010년, 2011년, 2015년, 2018년에는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 출원인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출원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69건에서 2014년 165건으로 급증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 107건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8년 다시 16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89건으로 급감하는 등 불규칙하게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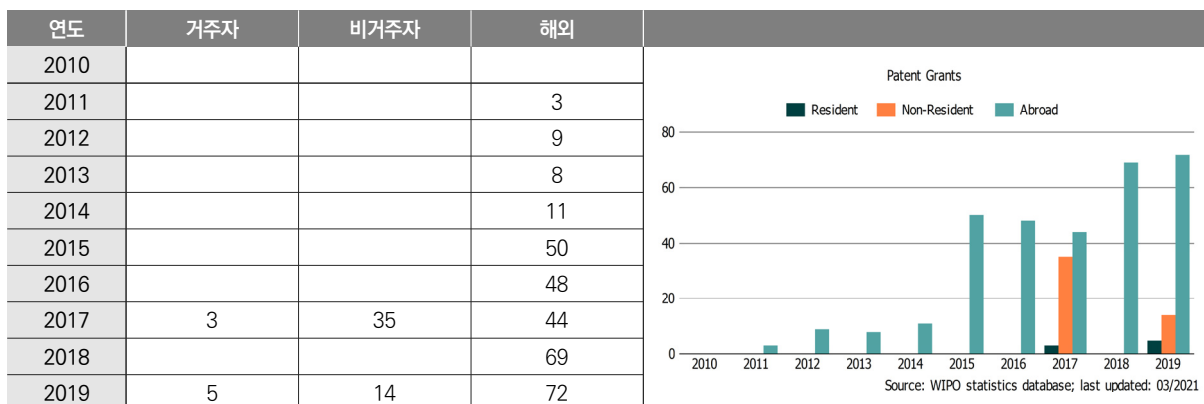
표 3-40 특허출원



(2) 특허 등록 현황

특허 등록도 거주자에 의한 등록은 극히 적으며 비거주자와 해외 출원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의 등록은 2017년과 2019년에만 이루어졌고, 해외의 경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등록은 2014년 11건에서 2015년 50건으로 그 건수가 급증하였으며, 그 후 2016년 48건, 2017년 44건으로 소폭 감소하더니 2018년 69건, 2019년 72건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1 특허등록



3. 실용신안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의한 실용신안 출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외의 경우 2011년 1건, 2019년 1건이 유일하다.

표 3-42 실용신안 출원

연도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
2010			
2011			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Utility Model Applications

Legend: Resident (dark blue), Non-Resident (orange), Abroad (teal)

Source: WIPO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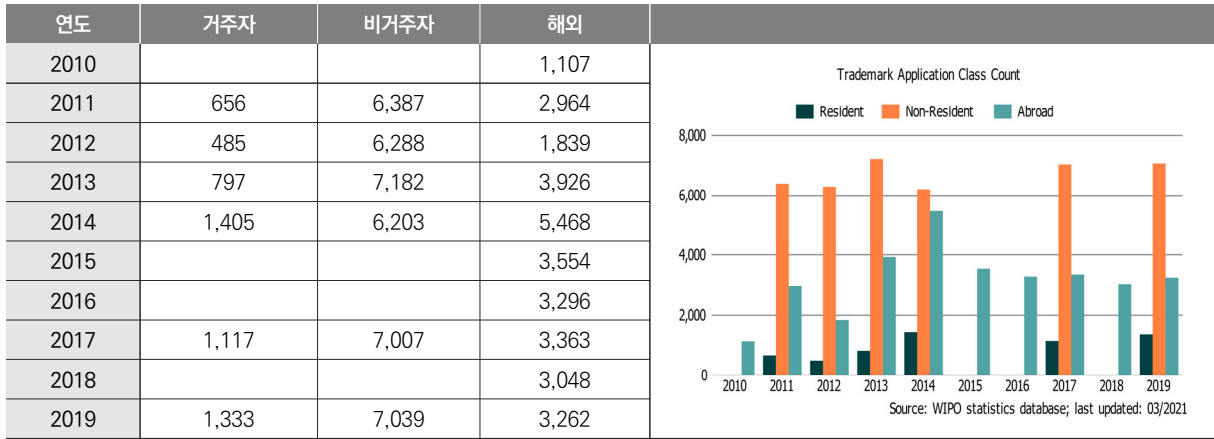
4. 상표

(1) 상표 출원 현황(분류별 건수)

상표 출원(분류별 건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해외 출원인 모두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거주자, 해외, 거주자의 순서로 비중이 큰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400-700건대를 기록하다 2014년 1,40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7년 1,117건, 2019년 1,333건을 기록하였다.

비거주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6,000건-7,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2015년과 2016년, 2018년에는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 출원인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출원이 이루어졌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최저 1,108건(2010년), 최고 5,458건(2014년)으로 불규칙한 변동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는 꾸준히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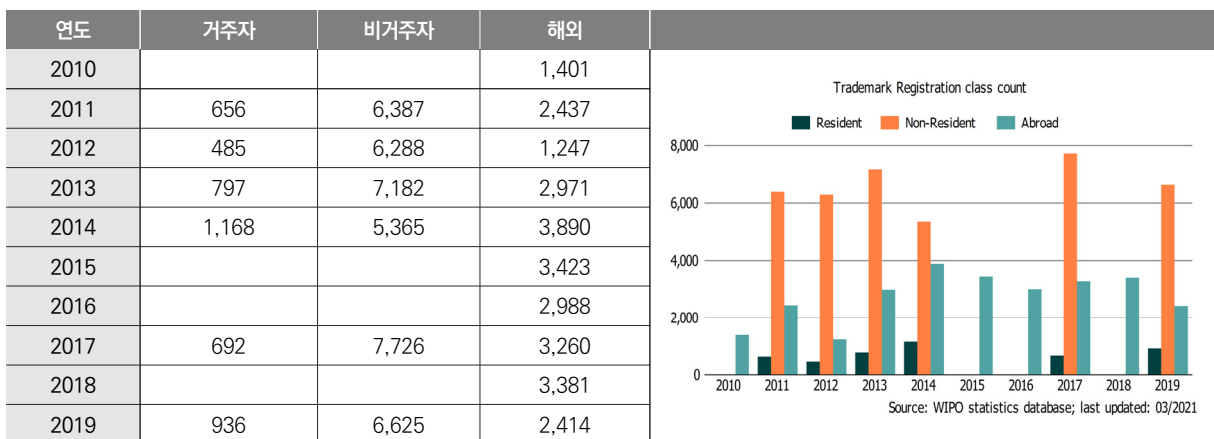
표 3-43 상표 출원 현황(분류별 건수)



(2) 상표 등록 현황(분류별 건수)

상표 등록(분류별 건수)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해외 출원인 모두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거주자, 해외, 거주자의 순서로 비중이 큰 편이다. 구체적으로, 거주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00-700건대를 기록하다 2014년 1,168건으로 급증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2017년 692건, 2019년 936건으로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비거주자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6,000-7,000건대를 기록하다가 2014년 5,365건으로 급감하였으며 그 후 2017년 다시 7,726건으로 증가하고 2019년 6,625건을 기록하는 등 불규칙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2015년, 2016년, 2018년에는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록된 건수도 없다. 해외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일정한 패턴이 없이 불규칙한 증감이 기록되고 있다.

표 3-44 상표 등록 현황(분류별 건수)



5. 디자인

(1) 디자인 출원 현황

산업디자인 출원 중 디자인 건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의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해외 출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 해외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간 동안 최저 출원 건수는 4건(2018년), 최대 출원 건수는 810건(2016년)으로 그 변동 폭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표 3-45 산업디자인 출원 중 디자인 건수

연도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
2010			
2011			
2012			36
2013			95
2014			423
2015			34
2016			810
2017			244
2018			4
2019			230

Industrial Design Application Design Count

Legend: Resident (dark teal), Non-Resident (orange), Abroad (light teal)

Source: WIPO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03/2021

(2) 디자인 등록 현황

산업디자인 등록 중 디자인 건수도 출원 현황과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출원이 없었으므로 등록 건수도 없으며, 해외 등록만이 발생했다. 해외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 등록 건수는 25건(2018년), 최대 등록 건수는 787건(2016년)으로 변동 폭이 매우 크다.

표 3-46 산업디자인 등록 중 디자인 건수

연도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
2010			
2011			
2012			30
2013			94
2014			369
2015			35
2016			787
2017			243
2018			25
2019			203

Industrial Design Registration Design Count

Legend: Resident (dark teal), Non-Resident (orange), Abroad (light teal)

Source: WIPO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03/2021

제 4 절

한국의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 방안

I 서설

향후 한국형 IP 행정서비스를 더 많은 신흥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의 경제/산업 환경과 IP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상국에 환경에 맞는 지식재산 인프라, IP 법률, 제도, 전략 등을 수출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IP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검토하고 카타르의 경제 및 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지식재산 지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법 제도와 국가지식재산권청 등의 IP 행정 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이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카타르에 한국형 IP 행정서비스를 수출 및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각 분야별 IP 행정서비스 협력 방안

1. 국가지식재산청의 역할 확대

국가지식재산청은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관련 행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카타르의 경우, 경제통상부의 지식재산부(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s)과 산업재산권청(Industrial Property Offices)의 역할을 하고 있다.¹¹⁵⁾ 특히 산업재산권청의 경우, 특허는 지식재산부의 특허 및 직접 회로 부문(Patents and

115) https://www.wipo.int/members/en/contact.jsp?country_id=145 참고.

Integrated Circuits, 이하 특허국)이 관할하고, 상표는 지식재산부의 상표·디자인·지리적 표시·라이선싱 부문(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Geographical Indication, Commercial Registration and Licensing, 이하 상표국)이 관할한다.

전통적으로 국가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권리 부여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국가지식재산청은 업무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자신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허청(KIPO)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보호 및 권리 부여 외에도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청문 수행, 지식재산 인식 제고, 전문가 훈련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87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998년 특허심판원 등을 설립하였다. 현재 한국 특허청은 총 1관 9국 59관 13팀, 3개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정원은 총 1,767명이다.¹¹⁶⁾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카타르의 산업재산권청도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고 기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카타르의 경우, 한국에 비해 특허국과 상표국의 규모가 매우 협소하다. 특허국의 직원 수는 10명으로 심사관이 5명, 심판관이 2명, 기타 직원이 3명이며, 상표국의 직원 수는 30명으로 내역은 심사관이 10명, 심판관이 5명, 기타 직원이 15명이다(2016년 기준). 적은 인원으로는 업무의 확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산업재산권청의 역할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가장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조사와 출원 및 등록과 같은 전통적인 보호 업무에서 더 나아가 특허 심판, 지식재산 인식 제고, 전문 인력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산업재산권청의 정책 기능 강화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심사 역량 강화

카타르의 IP 신청 건수는 2019년 기준 특허가 130건, 상표(분류별 건수)가 4,595건으로 IP 출원이 절대적으로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카타르 재단을 중심으로 카타르 대학, QSTP에서 IP 창출과 사업화를 중요한 아젠다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앞서 WIPO의 IP 통계를 살펴본 결과, 카타르는 전반적으로 거주자에 의한 출원은 적으며 주로 카타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와 해외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카타르가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의 출원 보다는 자국민의 해외 시장 확보 또는 해외 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한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116) 특허청, 2020 지식재산 백서, 2021, 487면.

이처럼 산업적 목적으로 IP를 출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개인 등은 IP 출원에서 더 나아가 신속하게 권리 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카타르는 IP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빠른 권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카타르는 산업재산권청 특허국의 심사관 수가 5명, 상표국의 심사관 수가 10명으로 심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별도의 특허 및 상표 심사기준이나 심사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 약 26~36개월이, 상표의 경우 약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심사관 파견, 특허심사대행 등의 우리 IP 행정서비스를 수출하여 카타르의 심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한국 특허청(KIPO)은 지난 2014년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의 심사관을 파견하여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하는 등 한국형 특허행정서비스를 꾸준히 수출해 왔다. 또한, UAE 수출 성공을 기반으로 2019년에는 사우디와 지식재산 4대 분야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심사관 및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우디의 심사대행과 심사관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우디 현지에서 파견된 민/관 전문가는 2021년 4월 기준 16명에 이르며, 동 사업을 2023년까지 지속하는 경우 연평균 900만 불, 총 3,600만 불(416억 원)의 수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¹⁷⁾

현재 카타르에는 현대건설, GS건설, LG전자, 삼성전자, LS전선, 한화테크윈 등 약 16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건설, 전력, 전자, 정보통신, 플랜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IP 심사 컨설팅과 행정서비스의 수출 사업은 카타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IP를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점차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카타르로 심사관 파견, 심사대행 등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과 카타르의 심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Win-win 전략이 될 것이다.

3.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동화 및 현대화

카타르는 아직까지 특허 및 상표의 심사결과를 특정 장소의 게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고, 특허/상표국의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특허/상표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불복심판에 대한 의사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 카타르의 IP 권리화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원인으로는 IP 행정정보시스템이 자동화되어있지 않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IP 출원 및 심사에 관한 행정 처리를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업무의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효율성이 저하되며 파일 분실이나 부정확한 정보기록과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많은 국가지식재산청은 IP 행정시스템의 자동화를 국가지식재산전략의 최우선사항으로 두었다.

1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허청 지식재산 행정한류 수출 'K-특허행정'은 순항 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7115>

따라서 한국은 카타르를 대상으로 전자출원, 검색서비스 등 한국형 IP 행정정보 전자시스템을 수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 특허청(KIPO)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온라인 기반의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인 특허넷은 1999년부터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 국가지식재산권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특허청(KIPO) 2020년 브라질과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특허행정 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1년에는 우루과이,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특허행정 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미주개발은행과 협력하여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9년 10월에는 이집트 특허청에 KOICA와 공동으로 전자출원, 전자화, 검색서비스 등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 교육 지원 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UAE와는 온라인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 2021년 말까지는 시스템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통 이후 UAE의 온라인 출원율은 90%이상을 기록하였다.¹¹⁸⁾

카타르에 자동화된 IP 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면, IP 출원 및 등록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IP 문서 발행에 관한 업무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관련 IP 문서의 제출이나 IP 권리화 처리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관련 특허자료의 조사 및 분석이 용이해져 심사 및 심판 역량을 제고 할 수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IP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자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카타르 특허/상표국은 조직 인력과 규모가 매우 협소한 만큼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IP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화가 필요하다.

4. 지식재산법의 현대화

카타르는 자국의 지식재산권법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근 2020년 4월 18일, 산업디자인 보호법(Law No. 10 of 2020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을 공포하였다.¹¹⁹⁾ 그 전까지 카타르에서는 디자인에 관한 규정이 상표법 제42조 내지 제45조에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상표법 규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기 발행되는 지역 신문에 경고 공지(cautionary announcements)를 게시함으로써 디자인 분쟁 발생 시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미래의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IP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디자인의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자국의 디자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카타르는 신규 산업디자인 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산업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공포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명확한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카타르는 아직 별도의 실용신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 일부 국가들은 중소기업

118) 특허청, 2020 지식재산백서, 2021, 240면.

119) <https://wipo.int/en/legislation/details/20025> 참조.

이나 개인 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허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특허법과 별도로 실용신안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먼저 특허제도를 운용하였는데, 기술의 발전과 다양화로 인해 특허제도로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결국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하였다.¹²⁰⁾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는 선진 공업국가의 기본 발명을 도입 또는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 및 등록함으로써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경험 및 노하우를 현재 산업적·경제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신흥 개발도상국인 카타르에 제공하여 국가 산업 및 경제 환경에 걸 맞는 실용신안 제도의 도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용신안은 기술적 발명이 미미하여 특허로 보호하지 못하는 작은 발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용신안 제도는 기술 혁신이 크지 않고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로 도입하는 편이다. 따라서 오히려 기술의 완전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흥 개도국인 카타르에 유익할 제도가 될 것이다.

5. 국제 조약, 협약 및 협정에 부합하는 국제화

IP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IP 관련 국제 조약, 협약 및 협정에 대한 가입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다. 카타르는 1996년 WTO 가입을 통해 121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2015년 10월 28일에는 WIPO의 회원국이 되었다.

카타르가 가입한 주요 국제조약, 협약, 협정으로는 WIPO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 보호를 위한 WIPO 로마 협약,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공연 및 음반 조약(WPPT), 특허 협력 조약(PCT), 시청각 공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부다페스트 조약, 나이로비 조약, TRIPS 협정 등이 있다. 국제 조약, 협약 및 협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국의 규범 체계가 복잡하고 상이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조화시키고 통일된 지식재산권 규범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여 카타르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국제적인 수준까지 향상할 필요가 있다.

120) 박종렬·노상욱,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재검토, 2013, 203면.

국제지식재산 지표 측면에서 카타르는 2021년 미국통상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국제 지식재산권연맹(IIPA)의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 유럽위원회(EC)의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재산권연맹(PRA)의 국제재산권지수 보고서에서는 UAE에 이어 6,376점으로 35위를 기록하였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 중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카타르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카타르는 2002년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후 저작권법과 상표법 개정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03년에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연합(BSA)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카타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직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을 보였다고 평가받지만,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문제는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한·미 FTA 협정을 통해 중앙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등을 마련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령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단속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SW 불법복제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중심으로 검찰 및 일반경찰이 함께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 중이다.¹²¹⁾

그 결과 BSA의 2018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은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 32%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이 42%, 이탈리아는 43%, 브라질은 46%로 나타났다. 한국이 이들보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한국 공공기관의 망 분리와 한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불법복제 단속, 인식제고 활동 등의 행정체계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시스템 및 단속 체계 구축 경험을 토대로 카타르에 SW 관리체계에 대한 컨설팅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에 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면 카타르의 국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 제공

통상 IP 교육의 목적은 크게 전문적인 IP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과 일반적인 IP 출원인 또는 사용자의 IP 인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카타르 특허국/상표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

121) 문화체육관광부, 정정당당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2017, 4면.

는 전문성을 가진 IP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IP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IP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카타르 특허국의 인력은 총 10명으로 심사관 5명, 심판관 2명, 기타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표국 인력은 총 30명으로 심사관 10명, 심판관 5명, 기타 직원 15명이다. 통상 IP 전문 인력이라 함은 지식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IP 창출 인력과 경영 인력으로 구분되는데, 카타르 특허/상표국의 IP 창출 인력은 총 22명, 경영 인력은 1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IP 전문 인력의 부족은 IP 창출의 지연, IP 서비스의 제한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카타르는 단기 압축식으로 IP 전문 인력 양성이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국가의 IP 교육 시스템을 학습 및 도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특허청(KIPO)의 국제지식재산연구원은 1987년 개원 이래 국내외의 IP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심사관, 학생, 기업인 등 다양한 교육 대상에게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의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WIPO 공식 파트너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외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의 선도 교육기관으로서 입지를 갖추었다.¹²²⁾ 1987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055명의 외국인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2020년에는 WIPO 협력과정, KOICA 협력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등 총 9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364명의 해외 전문가를 교육했다.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IP 교육 노하우와 명성을 토대로 IP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카타르에 한국형 IP 교육 시스템 및 과정을 수출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특허국/상표국의 IP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특히 심사관, 심판관, 기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20년 WIPO와 공동으로 필리핀, 이란, 나이지리아 등 세계 각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관(또는 지식재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법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ASEAN 회원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KOICA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국가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호북성 심사협력센터의 특허심사관과 걸프협력회의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타르 특허/상표국의 공무원에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의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심사 노하우를 컨설팅 한다면 신규 IP 인력을 배출하고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22) 특허청, 2020 지식재산백서, 2021, 233면.

III 소결

카타르는 에너지 산업이 경제 근간을 구성하고 제조, ICT 등의 비에너지 분야가 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석유 산업은 2020년대 말까지 카타르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으로 국가의 제1위 재정수입 재원이었으나, 현재는 가스 산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LNG 수출국이다. 이러한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카타르는 세계에서 높은 대외신용도를 유지해왔고 이에 따라 외국 자본 유치와 자금 조달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즉, 카타르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용이한 자금 유지로 산업 투자 자본이 여윌롭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IP 환경은 비교적 열악한 상황이다. 총 10명의 특허국과 30명의 상표국이 국가지식재산청의 역할을 하며 지식재산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소한 조직 규모와 부족한 인력 때문에 관련 업무가 지식재산권 창출에 국한되어 있고, 그럼에도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IP 출원 건수는 미비하였다. 반면, 전반적인 국제 지식재산권 지표 수준은 감시대상국 포함 없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심각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있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한국의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의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카타르 산업재산권청(특허/상표국)이 특허심판, IP 교육 등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심사관 파견, 특허심사대행 등의 IP 행정서비스를 수출하여 카타르의 심사 역량을 제고하며, 한국형 IP 행정정보 자동시스템을 수출하여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IP 출원 및 등록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의 실용신안법 체계를 수출하여 아직 기술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흥 개도국 카타르의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의 소발명 창출 및 보호를 독려하고, 불법 SW 단속 시스템과 정부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체계를 수출하여 카타르의 국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제고하며, 세계 IP 심사관/공무원 전문 교육 과정과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수출하여 카타르의 IP 인적자원 창출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카타르에는 현대건설, GS건설, LG전자, 삼성전자, LS전선, 한화테크윈 등 약 16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건설, 전력, 전자, 정보통신, 플랜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점차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카타르로 한국형 IP 행정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은 카타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IP를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 4 장

우크라이나의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 제1절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 제2절 우크라이나 경제 및 산업분석
- 제3절 우크라이나의 IP 환경분석
- 제4절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 방안

제 1 절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I 수교 관계¹²³⁾

한-우크라이나 양국은 1992년 2월 수교 이래 자동차, 합성수지, 사료, 곡물 등 경제 분야 중심으로 관계에서 최근에는 협력 분야 다변화를 위해 투자, 보건의료 등 非 경제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표 4-1 한-우크라이나 외교관계 수립

- 1992.2 한·우크라이나 수교
- 2005.9 이해찬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
- 2006.10 임채정 국회의장 우크라이나 방문방문
- 2006.12 유센코 대통령 한국 방문
- 2011.9 김황식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
- 2018.12 파루비 국회의장 한국 방문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2017년 과기공동위, 2018년 무역경제협력위에 이어 2019에는 정책협의회가 2012년 이후 7년만에 개최되었다.

표 4-2 한-우크라이나 정책협의회

- 한-우크라이나 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 (제1차) 1996.9월, 키예프 / (제2차) 2002.11월, 서울 / (제3차) 2004.12월, 키예프 / (제4차) 2006.10월, 키예프 / (제5차) 2009.2월, 서울 / (제6차) 2010.3월, 키예프 / (제7차) 2012.2월, 서울
- 제4차 무역경제협력위(2018.4, 서울) / 제5차 과학기술공동위(2017.3월, 키예프)

123) kotra(김주연), 우크라이나진출전략, 202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30>> 참조.

한-우크라이나간 양국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술 자립 경험과 원자력안전분야 등에 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정체결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1998년부터 협정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2001년 7월 23일 서명, 2007년 6월 11일에 협정이 발효되었다.

표 4-3 한-우크라이나 협정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과학기술협력협정	1994년 05월 20일	과학기술협력협정
외무부간 협력의정서	1995년 11월 30일	외무부간 협력의정서
정보통신부 간 협력 약정	1995년 05월 15일	정보통신부 간 협력 약정
통상산업부 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1996년 12월 01일	통상산업부 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무역협정	1997년 04월 25일	무역협정
투자상호증진 및 보호협정	1997년 11월 03일	투자상호증진 및 보호협정
상용 복수사증협정	2001년 11월 15일	상용 복수사증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2002년 03월 19일	이중과세 방지 협정
항공업무협정	2003년 03월 06일	항공업무협정
세관협정	2004년 04월 27일	세관협정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2005년 10월 25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외교관여권소지자 사증면제여행 협정	2006년 09월 15일	외교관여권소지자 사증면제여행 협정
무상원조기술협정	2006년 10월 20일	무상원조기술협정
원자력협정	2007년 06월 11일	원자력협정
우주협력협정	2007년 08월 20일	우주협력협정
방산군수협정	2007년 08월 29일	방산군수협정
관광협정	2009년 07월 08일	관광협정
해운협정	2009년 08월 02일	해운협정
문화협정	2009년 08월 03일	문화협정
관용-공무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	2014년 09월 17일	관용 및 공무여권소지자 사증 면제

II 경제협력 관계

1. 교역 동향¹²⁴⁾

코로나 이전 우리나라의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입은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지속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력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화장품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한-우크라이나 교역량은 2019년 대비 약 9% 감소하였다.

124) kotra(김주연), 앞의 보고서 참조.

표 4-4 한국-우크라이나 수출입 통계

(단위: 천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2015년	194,367	-42.6	661,468	-12.8	-467,101
2016년	222,247	14.3	472,357	-28.6	-250,111
2017년	258,560	16.3	539,313	14.2	-280,754
2018년	341,333	32	386,688	-28.3	-45,355
2019년	348,736	2.2	455,828	17.9	-107,092
2020년(1~8월)	229,944	-0.6	511,059	55.3	-281,115

우리나라의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 품목은 주로 자동차, 화장품, 철강판, 합성수지, 고무제품, 자동차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K-beauty,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 및 수출액 급성장하고 있다. 2018년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품목 7위에서 2019년 2위로 무려 5계단 상승하였으며, 2018년 기준 화장품 수출액 1,403만 달러(2017년 대비 105% 증가), 2019년 기준 화장품 수출액 3,051만 달러(2018 대비 약 117% 증가)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수입 품목은 곡물, 철광과 같은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 비중이 곡물에 집중 높다.

표 4-5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10대 수입 품목

순번	MTI	품목	2019	2020(1~8월)	
			금액	금액	증감률
		Total	455,828	511,059	55.3
1	0136	사료	203,949	371,263	161.4
2	0111	곡류	13,017	62,095	377.2
3	1120	철광	103,811	10,825	-86
4	0131	식물성 유지	12,764	10,459	6.9
5	2289	기타 정밀화학 원료	3,964	7,282	188.1
6	8259	기타 난방 및 전열기기	3,691	5,543	115.7
7	6181	합금철	40,566	5,510	-79.7
8	0135	박류	8,670	5,474	-23.7
9	0312	제재목	14,992	5,162	-57.4
10	6290	기타 비철금속 제품	9,739	5,604	-39.4

2. 투자 진출 현황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16일 기준 신고 건수는 총 89건, 누적 신고 금액 3억 5,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누적 투자 금액은 3억 45만 달러로 조사되었다. 주요 진출 업종은 도매·소매업, 제조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사태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주재 우리 기업들은 철수 혹은 규모 축소된 상태로 현재 우크라이나 주재 기업은 삼성전자, LG 전자, 현대·기아 자동차, 포스코대우, 현대종합상사, GS건설, 한국타이어, 에코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 10개 내외가 진출해 있다.

2016년 이후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재 시장 진출 문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은 없으며 정치적 불안에 따른 국가 리스크가 높아 아직까지 우리 기업 입장에서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 2 절

우크라이나 경제 및 산업분석

I 주요 경제·산업 및 정책 현황

1. 경제 및 산업 현황¹²⁵⁾

우크라이나는 2021년 3%대의 경제 성장률 전망되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크라이나 시장 내 불확실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 정부 부채 금액으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경제 및 시장 전망 역시 급변할 수 있으나, World Bank(3%), 우크라이나 중앙은행(4%), EBRD(5%) 등 대내외 전망 보고서 등을 종합해볼 때 2021년 3~4%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 확산 및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2020년 -6%의 역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또한 고질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IMF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금융지원을 받고 있어 재정이 취약한 상태이다.

소비지출의 근간이 되는 가계소득이 2020년에 감소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가계소득은 감소하였으나 향후 회복세는 전세계 평균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성장예비해 가파르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계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소비지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은 노동송금 확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

125) kotra, 우크라이나 2021년 경제 전망, 202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7612>> 참조.

가 전망되며¹²⁶⁾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소비자 지출은 3.7%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온라인 시장의 발전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기준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556억 흐리브나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800억 흐리브나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2021년에는 900억 흐리브나를 넘어서고 2022년 1,000억 흐리브나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의 3G/4G 등의 온라인 인프라가 개선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소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동안 온라인 상거래의 걸림돌이 되었던 지급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식의 상품구매 필요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시장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온라인 시장에서 식료품 부문의 성장은 107%를 기록하여 시장을 견인하였고 전체 소매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은 8%¹²⁷⁾에 달했다.

2. 우크라이나 산업 경제 특성

(1) 경제 분석¹²⁸⁾

코로나19 방역조치가 2020년 3월 12일부 시행 이후 수차례 연장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산세도 점차 심해져 각종 경제지표 하락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마이너스 영향을 주었으며, 2021년 코로나 확산 추세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좋지 않다. 2020년 8월 기준, 우크라이나 총 교역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물운송 제약, 대내외 수요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640억 2,000만 달러로 2019년 동기 대비 10.78% 감소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2월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 달러당 28그리브나로 2014년보다 3배 이상 폭락 하였다. 경기 회복세 추세에 따라 현지화 가치가 상승하며 연중 25~26그리브나까지 회복했으나, 연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29그리브나로 급등 이후 현재 28그리브나 선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록다운) 발표 후 5영업일 만에 달러 수요 21억 달러로 급증하여 일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인한 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126) Euromonitor International, "Country Profile: Ukraine," 12, Oct.2020, p.6.

127) "Ukraine becomes leader in e-commerce growth in Eastern Europe in 2020," 16, Oct.2020

128) Kotra, 2021 국별진출전략 보고서(우크라이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30&pageViewType=&column=title&search=%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el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참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실업률은 약 11.5~12%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5월 기준 실업자 수는 45만 6,800명으로 전년 동기 30만 8,300명 대비 무려 48%나 증가한 수치로 1년동안 약 15만 6,000명이 실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크라이나의 큰 수입원인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이 전체 GDP의 10%에 달해 2019년 158억 달러로 었으나 코로나19 송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산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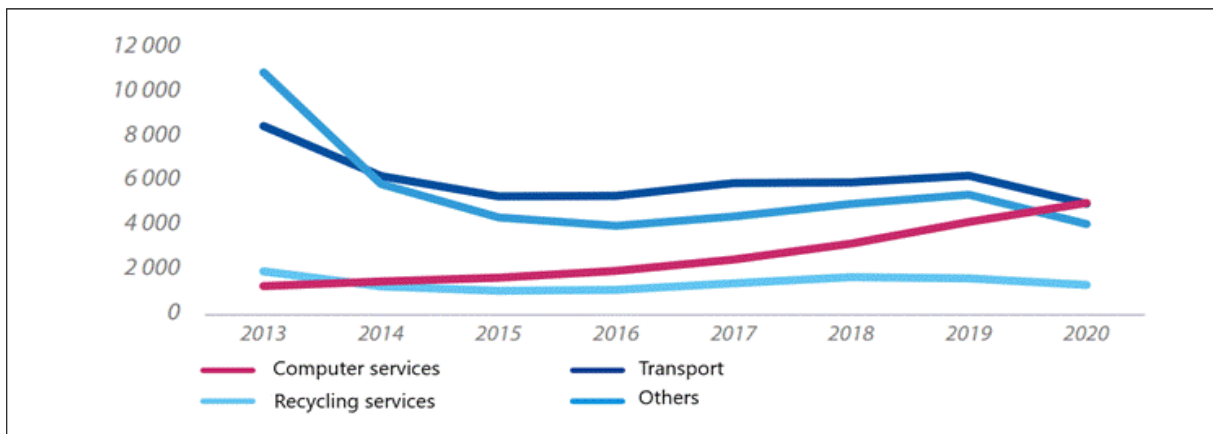
1) 우크라이나 IT 산업 현황

우크라이나의 IT 산업은¹²⁹⁾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수출규모가 5년 동안 157% 성장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에 따르면 몇 년 안에 IT 시장이 총 GDP의 10% 차지, 중앙&동유럽의 IT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EBA)에 따르면, IT 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 비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 평균 20%대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 지수(Good Country Index)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163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증된 IT 전문가 보유국가로 3위를 차지했고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아웃소싱 분야에서 동유럽 최고의 국가이다. 2020년 IT 서비스 수출 규모는 50억 26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20.4%(8억 5300만 달러) 증가했다.

그림 4-1 카테고리 별 수출 현황

(단위: 십억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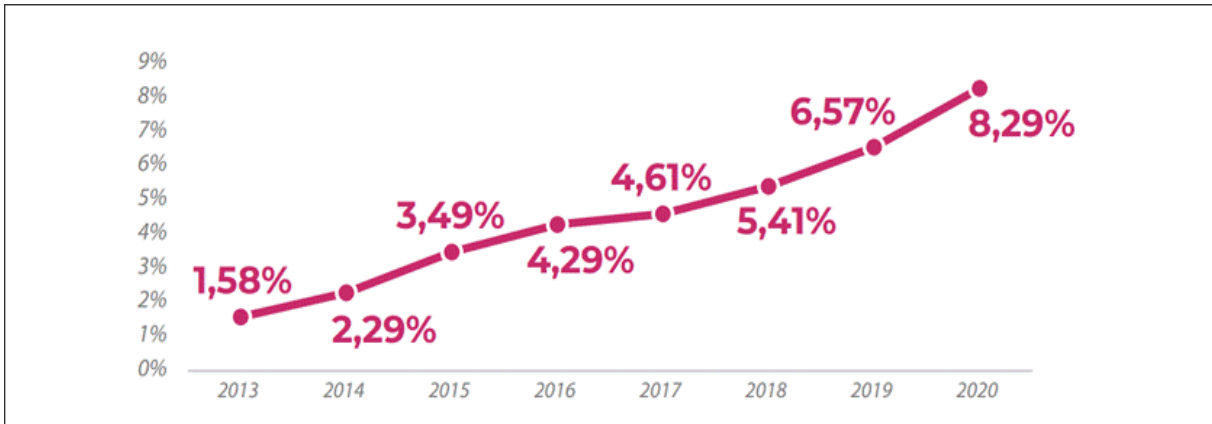


자료: BRDO(우크라이나 키예프무역관)

129) kotra 키예프무역관, 우크라이나 IT 산업 정보, 2021. 6.(<<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88852>> 참조.

2020년 IT 산업의 수출비중은 8.29%으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4-2 IT 산업 수출 비중



자료: BRDO(우크라이나 키예프무역관)

우크라이나 IT 산업에는 약 20만명 이상의 전문가가 종사하고 있으며 약 5,600여 개의 IT service 기업이 활동하여 아웃소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아웃소싱협회(IAOP)에서 발표한 2020 글로벌 100대 아웃소싱 기업에 우크라이나 소재 기업 13개사 포함되어 있다.

표 4-6 글로벌 100대 IT 아웃소싱 회사

구분	기업명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	AMC Bridge, Ciklum, Computools, Eleks, Infopuls, Innovecs, Magnise, Miratech, N-iX, Program Ace, Sigma Software, Softengi, Softjourn
우크라이나 R&D 센터 보유 해외기업	EPAM(미국), Luxoft(스위스), Ciklum(덴마크), TEAM International Services(미국), Softjourn(미국), AMC Bridge(미국), Artezio(러시아)

인건비는 개발자의 직급과 전문 분야에 따라 다지만, 중간급 개발자는 평균 월급은 월 1,500달러에서 2,600달러이다. 이는 연봉 1만 8천~3만 3천 달러 수준이며 핀란드 4만 7천 달러, 미국 9만 2천 달러 연봉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IT 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성장해 왔다. 산업 특성 상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개발 비용의 약 80%를 IT 기업이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 군에 비해 세금에 민감한 편이나, IT기업의 경우 직원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DIA CITY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세법 개정안 통과 & 추진에 정이다. 우크라이나의 IT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IT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지원 DIA CITY(<https://city.diia.gov.ua/>) 프로젝트를 2021년 하반기 통과 및 추진 예정이다. 우크라이

나가 중앙 및 동유럽의 IT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세금혜택, 정부차원의 IT 비즈니스 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공 예정이다. 정부는 DIA CITY 프로그램을 통해 45만 일자리 창출과 165억 달러의 이익금을 가져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4-7 우크라이나 주요기업 현황

기업명	설립연도	직원수	활동분야
EPAM	2005	10,300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지털 플랫폼 엔지니어링
SoftServe	1993	7,900	Cloud&&DevOps, 빅데이터&Analytics, AI&ML
GlobalLogic	2000	5,712	Digital Production&solution development
Luxoft	2005	3,469	IT solution, 전자부품
Ciklum	2002	2,725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QA, 데이터분석서비스

우크라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 분야를 살펴보면 E-commerce 17.4 %, Enterprise 15.7%, Finance 12% 등으로 조사된다.

아울러, IT 전문 인력 양성 분야 역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대학에서 배출하는 IT 전문가 수는 연 3만여 명에 달하나, IT 시장에 필요한 인력은 5만 명이 넘는다. 대학을 졸업한 IT 전문가들이 실무에 즉각 투입되기도 어려우며, 유능한 인력은 해외로 유출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풍부한 IT 산업에서의 경험과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한 교육 사업 또한 유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IT협회는 우크라이나 IT 산업 성장세가 지속되어 2025년까지 IT 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 IT 전문 인력은 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T 산업 성장세에 따라 IT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 추세이나, 우크라이나 대학에서 배출하는 IT 전문 인력(연 2만 명)의 다수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자국내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IT 전문인력 -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미약 -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에 대한 과도한 수입관세(약 40%)
Opportuniti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전문 양성 기관(대학) 수 증가 - IT 기업 직원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기업 대상 추가 과세 가능성 - 국내 IT 핵심 인력 및 두뇌 유출

3. 산업정책 현황

(1) 우크라이나 2020전략¹³⁰⁾

2014년 우크라이나는 2020년 EU 가입을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 2020 전략”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7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명문화한 개헌안 승인(찬성 334표, 반대 35표)하였다.

그림 4-3 우크라이나 2020전략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 전략을 통해 62가지 개혁·프로그램을 확정, 이 중 8개 분야 개혁 및 2개 국가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키로 확정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상기 8개 분야 개혁 및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핵심 성과 지표(KPI) 25가지를 상정하였으며, 현재 EU 표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법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4-4 2020년 목표 우크라이나 정부의 25가지 핵심 성과 지표(KPI)



자료: 신북방 서부권 3개국 보건으로 산업진출전략 보고서(보건산업진흥원, 2020)

13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정책 국가별 비전·전략, 2020.<<http://www.bukbang.go.kr/bukbang/>> 참조.

(2) 국가경제전략 2030(National Economic Strategy 2030)¹³¹⁾

2020년 8월 14일 우크라이나 총리의 주도 하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국가경제전략 2030 구상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관계자, 부처별 관계자 등 정부 각료, 약 50여 개의 기업체 CEO와 경영자들 대상으로 해당 전략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발전을 위한 제안과 비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0년 9월 7일 우크라이나 경제통상 및 농업개발부 장관 주재 국가경제전략 2030 실무단 창립총회 개최하고 주요 방향성 제시하였다.

- ① (공공행정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 책임소재 명확한 분배, 권력의 집중 및 부패 척결, 법치의 보장
- ② (경제 성장의 질적 변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 극복 및 전 국민 계층의 생활수준 향상
- ③ (고용정책의 변화) 적정한 임금 지불을 통해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켜 불평등 해소
- ④ (건강 및 교육의 변화) 미래 트렌드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발전, 교육기준 갱신, 교육과정의 디지털화, 교육 및 과학 클러스터의 형성 및 개발

성공적인 국가경제전략 2030 수립을 위해 정부부처, 분석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비즈니스협회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0개 실무그룹을 경제회복센터(Center for Economic Recovery) 플랫폼에 발족 예정이며, 해당 전략에 명시되는 이니셔티브들은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I 연구개발(R&D) 및 과학기술정책 현황

1.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World Bank(2018)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연구개발 지출 비중(GDP 대비)은 0.47%(약 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에 발표된 글로벌 혁신지수(WIP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전체 랭킹은 49위로 조사되었다. R&D 혁신 관련 지표 중 산학연 협력 67위로 전체 지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논문 창출 지수가 90위로 매우 낮게 랭크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인적자원의 교육 수준은 23위로 상위 그룹에 포진되어 있으나 R&D 투자와 연구자는 국가 혁신 지수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131) 2021 국별진출전략(우크라이나)

2. 과학기술정책 현황¹³²⁾

(1)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제 정책

2018년 1월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8~2020년 우크라이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발전개념과 실행 계획(이하 ‘2020 디지털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2020 디지털 전략’의 목적은 가장 유망한 영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2020의 디지털 아젠다(디지털 전략)’의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것이다. 동 전략은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디지털 불평등 해소, 디지털 영역에서 EU와의 협력 강화, 국가의 혁신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8 우크라이나의 2020 디지털 전략 목표

- 디지털화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성
- 농촌까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지털 산업 및 비즈니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
-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IT 아웃소싱)
- 혁신 지수 달성(WEF 30위 달성, GII 40위 달성, ICT 개발 지수 50위 달성, 세계경쟁력 지수 60위)

우크라이나 의회에 디지털 전환으로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디지털화 및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적 기반 형성 문제,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망의 관리, 운영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위한 작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 및 정부 프로그램, EU의 ‘단일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Market, EU4Digital)’과 기타 디지털 협력 프로그램, 전자정부와 공공 전자 서비스, 스마트 인프라(도시, 커뮤니티),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방어 문제들에 관여한다.

또한, 집행 당국의 중앙 조직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 전자 관리청을 기반으로 재조직한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가 설립되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의 목적은 전자 신탁 서비스 분야의 중앙 조직으로서 디지털화, 디지털 발전, 디지털 경제, 디지털 혁신, 전자관리와 전자민주주의, 정보사회발전, IT 산업발전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형성 및 실현을 보장하는 것 등이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분야 발전의 중요 방향은 ① 모든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 인터넷 접근성 보장 ② 첨단 디지털 네트워크 규제를 위한 조건 형성 ③ 투자유치, 상호 운용성,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발전이다. 우크라이나는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발전을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 낙후, 규제기관의 낮은 효율성, 기술(특히, 산업 4.0 기술)에 대한 국내 수요부족 등으로 설정한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3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협력 방안: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중심(산업연구원 2020 김학기)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63개국 중에서 60위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디지털 전환 시스템에서의 구조적 결함, 부족한 디지털 숙련도 수준, 자본시장으로의 접근 제한, 혁신문화 개방의 부재, 도시에서는 95%가 광대역 접속이 가능하지만, 시골에서는 20%를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019년 디지털 경쟁력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9 우크라이나 디지털 경쟁력 지표(2019, World Economic Forum)

경쟁력 지수	지표
전자정부 지수(전자참여)	0.69
정부의 미래 지향성(1~7)	3.23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국가의 법적 기반 적용성(1~7)	3.3
모바일 이동통신 가입자(100명당)	122.6
인터넷 사용자(인구 대비 %)	58.9
활동인구중 디지털 기술의 지식 및 컴퓨터 활용 능력	4.5
혁신기업의 성장 속도(1~7)	3.6
R&D 지출(GDP 대비 %)	0.4
과학연구기관의 우수성(0~100)	0.04

현재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수준의 IT 산업발전, IT 개발자들의 발달, 우수한 고등교육 시스템 등으로 성장 잠재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수한 고등교육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 IT 전문가 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에 20만 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IT 분야는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00개의 IT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약 1,600개가 IT 서비스 기업들이다. PwC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IT 서비스 수출국 상위 20위(국제무역센터 자료에 따르면 상위 25위)에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의 IT 산업은 수출 능력에서 3위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IT서비스 수출의 70% 이상이 주문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ICT는 서비스 수출 규모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총 서비스 수출에서의 비중은 20%에 달했다.

우수한 IT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들어 2011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Reface(이전 이름: Doublicat)가 개발한 GIF 및 동영상 얼굴을 대체하는 Reface 앱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의 미국 앱 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짧은 시간에 디자이너를 찾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플랫폼 전문 스타트업 Startup Awesomic은 유럽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지방 대부분이 4G망 접속이 가능하며 우크라이나는 인구수 대비 세계 1위의 암호화폐를 사용 하는 국가로 디지털 경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 우크라이나의 부문별 디지털 정책¹³³⁾

우크라이나 정부가 '2020 디지털 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 세 가지는 ① 디지털 인프라 개발, ② 실물경제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 농업과 전자민주주의 등이다. '2020 디지털 전략'의 주요 방향의 하나는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통한 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제의 토대를 만들어 기업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컴퓨팅 인프라, 가상화 및 스토리지, 인프라, 사이버보안, 특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광대역 고정 통신 인프라와 모바일 통신 인프라, 디지털 TV와 라디오, 기술 인프라 등이 그 대상들이다.

실물경제 부문의 디지털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IT 전문가 양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Industry 4.0을 산업 전반에 확산을 위해 IT 인력 교육 프로그램 설계, 디지털 산업의 모범사례를 전 산업에 확산을 위한 로드맵 수립, Industry 4.0 관련 표준 작업에 참여하는 기술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발명장려 활동 및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재권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농업과 전자민주주의도 '2020 디지털 전략'의 주요 정책이다. 디지털 농업 추진을 위해 지리 정보시스템, 스마트 장비의 사용, 식물 신종 보호 및 개량 등 농업 프로세스 개선에 디지털화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농촌에 광대역 고속 인터넷 연결은 농촌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향후 5~10년이면 우크라이나 경제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선 광대역 통신 전략, e-Trade, eTrust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현금 없는 경제를 위한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e-Skills, e-Health 및 e-Trade의 분산 및 도입에 중점을 둔 '스마트 도시-스마트 지역'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 디지털 인프라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4차산업혁명(Industry 4.0)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유망산업 분야는 ① 엔지니어링, ② 야금 및 광업, ③ 가공 및 식품산업, ④ 경공업, ⑤ 에너지(생산, 운송, 에너지 지원 분배), ⑥ 인프라 대상-네트워크(가스, 석유), 항구 및 공항, 철도, 자동차도로, ⑦ 도시 인프라(보안, 교통, 건물, 공급처리시설 및 전력망), ⑧ 농산물 가공 분야, ⑨ 방위산업, ⑩ 항공우주 분야 등이다.

13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협력 방안: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중심(산업연구원 2020 김학기)

표 4-10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제 가속화 시나리오 목표

목표	주요내용
2020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총 GDP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 65% - 우크라이나 가정의 99.9%가 광대역 인터넷망 접속 - 우크라이나 영토의 100% 4G~5G 커버 - 모바일 인터넷 기술로 모든 도로와 철도의 99%, 시골의 95% 커버 - 시민 99.9%가 디지털 식별(시민 카드, 모바일 ID)
디지털 인프라 (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MB/s 이상의 고정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변수 결정 - 모바일 및 위성통신과 관련된 기술 등급에 부합하는 입법 표준화 - 시민의 약 80%가 인터넷망의 적극적인 이용자 - 시골의 80% 가구가 인터넷 접속 - 저소득층, 특히 시골 지역에서, 디지털 인프라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 모든 도로와 철도의 99% 모바일 인터넷 커버 - 사물인터넷을 위한 최소 2개 이상의 국가통신망 출시, 센서 및 장치의 총 수량은 50억 개 도달 - 서비스 분야 기관의 99%가 비현금 지불 서비스 제공 - 현금 없는 거래 규모는 총 거래 규모의 90% 도달 - 시민 99.9%가 디지털 이해 - 우크라이나의 IT 산업 및 지역 비즈니스에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는 최소 5개 이상의 기술적 생산 분야 도입과 운영
디지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M 전문성(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을 위한 중학생 수의 증가(최대 5배), 고등학교 졸업생은 3배 - 총학생 수 1만 5,000명의 국립 기술, 디지털화 및 혁신 대학교 3개 설립. 최소 3개 이상의 국제 기술연구기관(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등)의 교수법 이용 - 각 주 센터의 고등교육기관에 '디지털 전환과 경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4차산업혁명(산업 4.0)', '정보 통신시스템의 디자인 및 설계', '혁신적 기업활동과 관리' 등의 교과목을 가진 최소한 한 개 이상 학과 개설 - 최소 100개 이상 디지털 직업을 국가 직업 목록에 포함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관리와 시민 서비스를 위해 200개 도시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 - 교통 인프라, 관광 코스, 자연 보호구역, 문화적 및 역사적 대상,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핵심 연결점을 Wi-Fi로 100% 커버 - 학교의 100%가 인터넷 소스와 디지털 기술 이용 - 사회 안전과 운영 활동 조정, 파견 및 지역자치 서비스의 지능형 시스템 적용 - 비즈니스와 국가 공무원의 70%가 직장 내 디지털 기술(원격을 포함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패키지 포함) 이용 - 지능형 도로교통 관리시스템과 디지털 기술 이용으로 대도시 교통혼잡 80% 축소 - 마을의 99%가 원격의료와 지능형 시스템 이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국가 수준에서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도화
- ②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
- ③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4차산업혁명(산업 4.0) 분야의 클러스터화 촉진
- ④ 핵심 산업 부문들, 에너지 및 인프라의 완전한 디지털화
- ⑤ 국가의 방위 및 안보 전략에서 4차산업혁명(산업 4.0)의 혁신 통합
- ⑥ 첨단기술 산업 분야를 위한 수출 프로그램 출시
- ⑦ 세계적 4차산업혁명과의 통합과 국제화
- ⑧ 고부가가치의 산업 분야 경쟁력 및 성장 전망 평가
- ⑨ 'IT화' ICT 분야의 모범사례를 산업 분야로의 이전을 위한 프로그램
- ⑩ 엔지니어링 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

디지털 경제 이니셔티브와 발전 방향에 부합되게 10대 디지털 경제 세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첨단기술 개발의 제도화(우크라이나 첨단기술 제품 부문의 산업생산 촉진을 위한 개혁, 구체적인 목표, 거시경제 지표 설정, 4차산업혁명 관련 요소 도입을 위한 시스템 활동과 프로그램의 보장과 투자장려, 우선적 자금지원 등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발전 가속화를 위한 여건 조성)
- ② 혁신적 생태계 조성(우크라이나 국립 과학아카데미의 고등교육 및 연구소 시스템, 과학단지 등의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젝트 운영, 우크라이나 과학기관, 과학단지와 연구소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센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기술이전, Industry 4.0 생태계의 효과적인 구조적 요소들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Industry 4.0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센터, 과학 실험실, 테크노파크,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등 육성)
- ③ 지역 및 국가 수준의 클러스터(생태계 가치사슬의 성장과 수출 성장을 위한 일련의 과제 수행, 정부 구조 수준에서 클러스터 정책 및 이니셔티브의 제도화, 유럽의 협력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클러스터의 활동 계획과 조정, 키예프, 하르키프, 드니프로, 자포로제와 같은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에서 4차산업혁명(산업 4.0) 발전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출범)
- ④ 핵심 산업 인프라의 디지털화(Industry 4.0 환경에서 디지털화의 가속을 위한 규제 촉진 형성, 목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 구성, 산업 부문의 대규모 IT화)
- ⑤ 방산 분야 혁신 통합(방위산업의 경쟁력과 기술적 재정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 Industry 4.0의 기술에 의한 방위산업 공장들의 전환을 위한 전문적인 국가프로그램 출시와 혁신성 향상, 국가의 중요 인프라와 에너지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자산관리와 예측 분석 시스템으로 기술적 위험 제거를 위해 국가프로그램 통합)
- ⑥ 첨단산업 분야 수출 프로그램(Industry 4.0 분야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전문업 육성,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수출 잠재력 향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출시)
- ⑦ 국제화(Horizon 2020, I4MS/DIH, Factory of the Future뿐만 아니라 개별 유럽 국가들의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전문통합 프로그램 구성, 국제사회와 국가 수준의 부가가치 사슬로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Industry 4.0 관련 IEC/ISO 표준 등 유럽표준으로의 전환 가속화)
- ⑧ 산업 분야 연구 및 평가(자동차산업, R&D, 엔지니어링 등 개별 산업별 잠재력과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 확보, R&D 수준, 인적 잠재능력, 생산기술 수준, 수출 잠재력, 성장 전망등 중요 요소 평가 등 연구, 연구기관의 육성을 위한 조직 예산 등 확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 ⑨ 산업분야 교육과 it화(Industry 4.0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ICT 및 산업계 리더로 구성된 '산업 ICT 리액터' 그룹 운영)
- ⑩ 엔지니어링 클러스터(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발굴, 신기술개발, 산업 디자인, 프로토타입 형성 등 지원)

3.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제 분야 대외협력¹³⁴⁾

(1) EU와의 협력

우크라이나의 경제발전, 투자유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발전 등 많은 것들이 유럽과 협력에 달려있어 유럽 정책과 부합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8~2020년 우크라이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발전개념과 이 개념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는 ① 상호운용성과 전자 서비스(Interoperability & eServices), ② 공공데이터(Open data), ③ 전자식별(eID) 등 3가지 방향에 따라 유럽 법률에 부합하는 기존의 또는 새로운 법률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크라이나는 EU와 정책적 동조를 통해 ICT 인력 및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활동기회를 높여 우크라이나는 사회 및 경제발전 보장,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러시아와의 협력

2020년 10월 러시아 상공회의소(CCI)와 우크라이나의 기계제작자와 고용주협회(Ukrmachstroy)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역과 산업협력에 관한 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양국 상공회의소 간 회의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유대관계 회복과 고용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우크라이나 SW 제품을 CIS 시장으로 재수출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통합과 돈바스 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호 경제 제제를 가하여 관계가 급격히 악화 되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제재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2020년 우크라이나의 의회 관계자(Medvedchuk)가 우크라이나의 여러 경제 제제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 총리는 이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하고, 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재 대상이었던 우크라이나 3개 기업의 제품 공급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그후 Rubezhansky Cardboard, Container Plant(Lugansk 지역), Bratslav 및 Barsky Machine-Building Plant(Vinnytsia 지역)의 장비와 제품 공급이 재개되었다.

(3) 한국과의 협력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협력 관계는 25년 이상 지속되었다. 양국 간에는 경제협력위원회,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우주 분야 협력위원회, 방위산업 및 물류 분야 협력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간 과학 기술 분야 협력은 1992년 7월에 체결하여 1994년에 발효된 양국 '과학기술협

134) 김학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협력 방안: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중심, 산업연구원, 2020

력 협정'에 따른다.

1995년 한국과학재단과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아카데미는 과학 및 기술협력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재료과학연구소(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материаловедения), 바쿨라 초경질 재료 연구소(Институт сверхтвердыхматериалов им ВМ Бакуля), 물리 연구소(Институт физики), 우시코바 방사선 물리 및 전자 연구소(Институт радиофизики и электроники им А Я Усикова), 지구화학 환경 연구소(Институт геохими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기타 우크라이나 국립과학 아카데미 연구기관들이 한국 연구기관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아카데미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분야에서 한국-우크라이나 협력센터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선적 협력 분야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반도체 기술, 정보학, 광학, 센서, 기타과학 분야 등이었다.

2006년 8월에 우크라이나 발사체의 도움으로 다목적 위성 'Koreasat-5'가 발사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로켓-우주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우크라이나 국립기술대학교 키예프 폴리텍 연구소(Київський політехнічний інститут імені Ігоря Сікорського: НТУУ 'КПІ')와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이 키예프 폴리텍 연구소에 우크라이나-한국정보기술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여 2011년에 센터가 개소되기도 하였다.

2017년 3월 「제5차 한-우크라이나 과기공동위」에서 양국은 공동연구 재개와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전파탐지 및 교육ICT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였다.¹³⁵⁾ 과기부(전 미래부)와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는 그동안 중지되었던 공동연구 재개를 합의하며, 공동연구 분야, 기간 및 재정분담 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인 연구협력 추진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크라이나의 국가우주청 및 유즈노예를 비롯한 우주청 산하 3개 기관(SDO Yuzhnoye, RPE Hartron Arkos Ltd, NSFCTC(National Space Facilities Control & Test Center))과 한국형 발사체 관련 기술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한국 연세대학교와 우크라이나 유지코프 연구소(Usikov Institute)는 전파탐지센터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과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대 등 2개 대학교와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하였다.¹³⁶⁾

135) (보도자료)미래부, 영국, 우크라이나와 과학기술협력 확대(2017.3)

136) 韓과학기술, 영국&우크라이나와 협력 확대(전자신문, 2017.3)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한-우크라이나 기술협력을 위해 해외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크라이나 기업화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우크라이나 기술도입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다.¹³⁷⁾

Ⅲ 산업재산(IP) 관점에서의 경제·산업·정책 진단

1. 우크라이나 경제 및 산업 현황¹³⁸⁾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다. 우라늄, 석탄, 망간,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보리, 옥수수, 밀, 콩 등의 농업 생산이 활발하며,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4,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우크라이나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IMF, EU,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공부채가 매우 높아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농업과 철강 산업이 핵심산업으로 GDP 대비 농업 비중이 12%, 전체 수출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 산업은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13위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농산물과 철강의 수출 비중과 에너지의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우크라이나에서 IT 산업은 코로나19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며 수출규모가 5년 동안 157% 성장하였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에 따르면 향후 몇 년 안에 IT 산업이 우크라이나 GDP의 10% 차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IT 산업은 내수(2%)보다는 수출(98%) 중심으로 미국, 영국, EU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T.Kearney가 2019년 발표한 글로벌 서비스 로케이션 인덱스(Global Service Location Index)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매력적인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국가 Top 20위에 랭크되어 있다.

2020년 IT 산업의 수출비중은 8.29%으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IT 산업에는 약 200,000명의 전문가가 종사하고 있으며 약 5,600여 개의 IT service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글로벌 포춘 500개 기업 중 100개사가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으며, Google,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우수 인력을 활용하고자 R&D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137) (보도자료)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상담회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20.9.17)

138) kotra, 우크라이나 IT 산업 정보, 202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88852>> 참조.

우크라이나는 IT 산업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고, 다른 산업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우수한 IT 인력이 비해 이들 인력이 창출하는 지재권 건수는 미비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우수 인력의 산업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 발명자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지재권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지금보다 지재권 출원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산업 현황(농업, 철강 등 원자재 중심 사업)은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 창출 현황 또는 특성과의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디지털 경제정책 등 국가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Industry 4.0 제조업 기반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 및 Start up 기업이 증가되어 향후 지재권이 증가될 전망이다.

2. 우크라이나 지재권 현황¹³⁹⁾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는 헌법, 민법, 상법, 관세법, 기타 특별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utility model), 디자인(industrial design),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동일한 법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실용신안(utility model)에 대해 보호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디자인은 제품 또는 그 일부의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것이면 등록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상표권은 법에 정한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등록가능하다. 등록된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법으로 정한 특별한 표시를 사용하여 권리를 고지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협정은 특허권 관련 파리 협약 및 PCT, 식물 신제품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등이 있다.

139)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대사관,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특기사항, <https://overseas.mofa.go.kr/ua-ko/brd/m_20837/view.do?seq=72> 참조.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관련기관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감독 기능을 하는 경제개발무역농업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Agriculture), 지식재산권의 등록, 보호, 인수 등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특허청, 신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를 관세청 지식재산권 등록부(Ukrainian Customs Reg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bjects)에 등재하고, 해당 상품들의 수입·수출을 관리하는 관세청이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확정·증명되었을 경우, 침해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대통령 소속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ntimonopoly Committee), 경제개발무역농업부 소속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 및 전문가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식재산권실(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도 있다

표 4-11 우크라이나 지식재산 현황

연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475	2,356	25,355	26,072	4,962	3,516
2015	2,271	2,226	36,339	22,403	4,294	3,487
2016	2,233	1,862	45,880	23,634	5,382	3,632
2017	2,283	1,764	47,531	24,494	4,954	3,393
2018	2,107	1,861	51,195	25,323	5,261	2,905
2019	2,097	1,755	54,298	25,118	4,660	2,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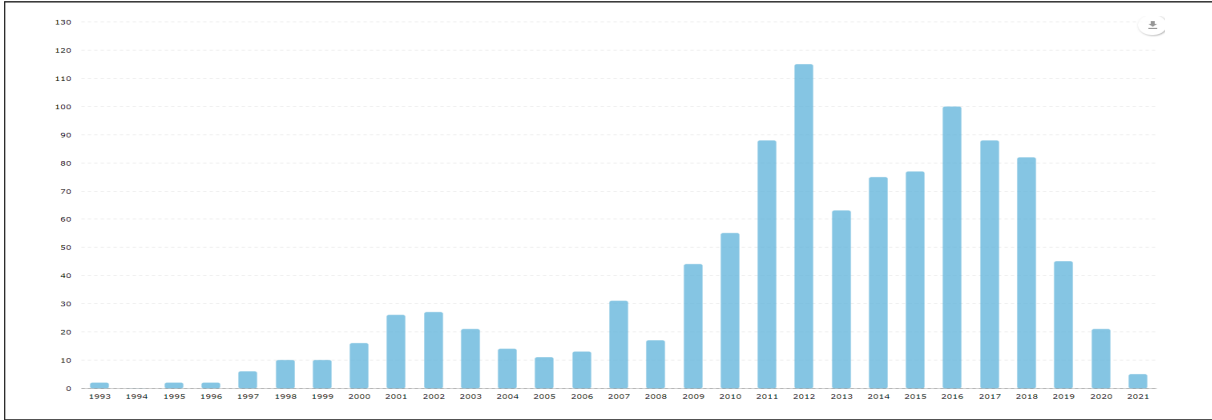
자료: WIPO 통계자료

우크라이나의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를(2007~2017)를 살펴보면 특허는 20,626건, 실용신안은 100,709건으로 실용신안권이 특허권보다 5배 이상 많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⁰⁾ 가장 앞선 분야로 IT, agriculture, renewable energy, pharmaceuticals, mechanical engineering, robotics 등으로 조사되었다.

우크라이나 국적 출신 발명자들의 특허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PCT 기준 5,484건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40) 자체분석자료

그림 4-5 우크라이나 특허출원 현황



미국에서 1,21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유럽 598건, 한국 403건으로 조사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발명자들이 미국, 유럽,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여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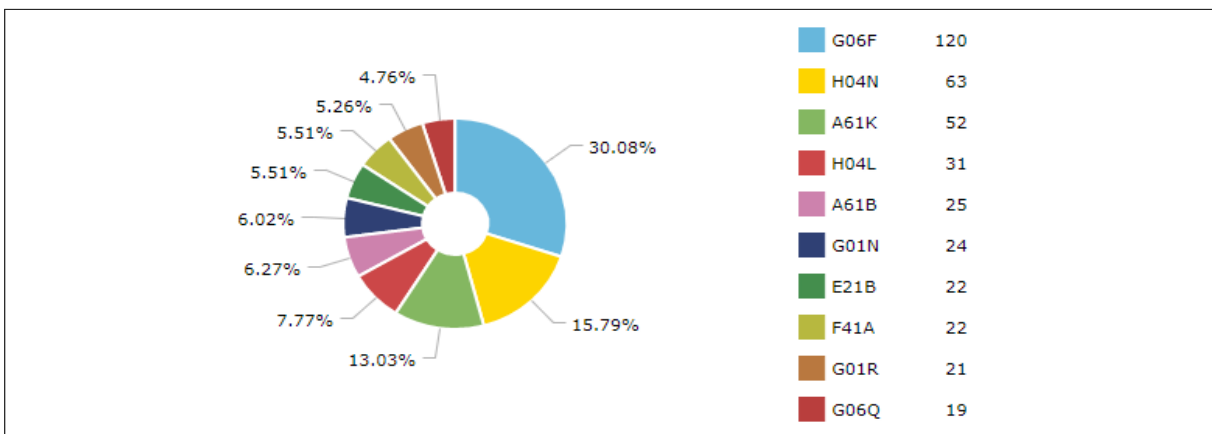
표 4-12 우크라이나 국적 발명자 현황

국가별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PCT
건수	403	1,215	6	598	48	3,214

PCT 출원을 제외한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코로나 이후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IPC 별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G06F 분야 30%, H01N 16%, A61K 13%, H04L 7%로 전기전자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분야는 20%인 분포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4-6 IPC 별 출원건수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항공우주, 자율주행, 항공우주 등 ICT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데 특허분포에서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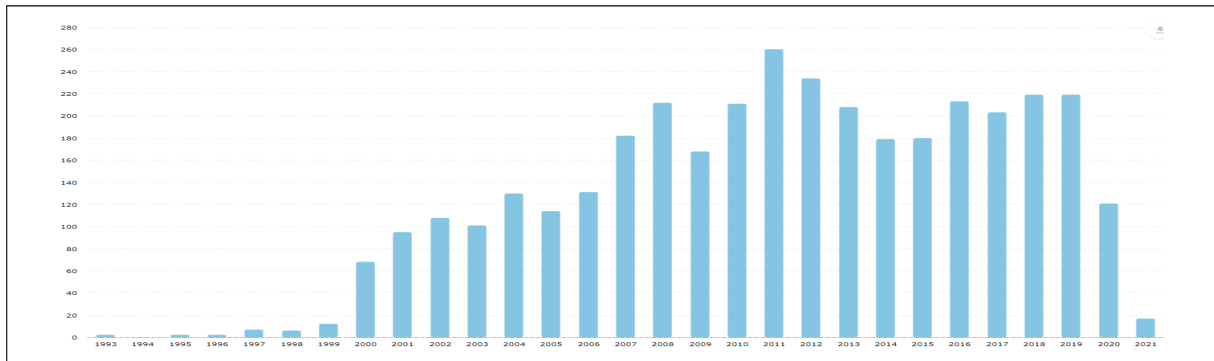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611건으로 최다 출원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럽 209건의 출원을 보이고 있다.

표 4-13 우크라이나 국적 출원인 현황

국가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PCT
건수	30	611	209	28	33	2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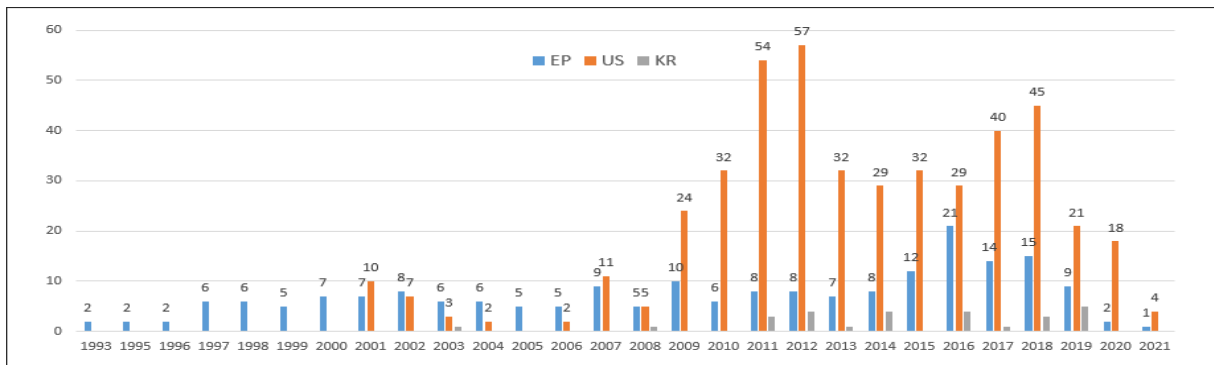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국적 출원인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2014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 후 200건 내외에서 출원을 전세계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4-7 우크라이나 국적 출원인 출원 현황



한국은 2003년부터 출원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출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술분야는 통신,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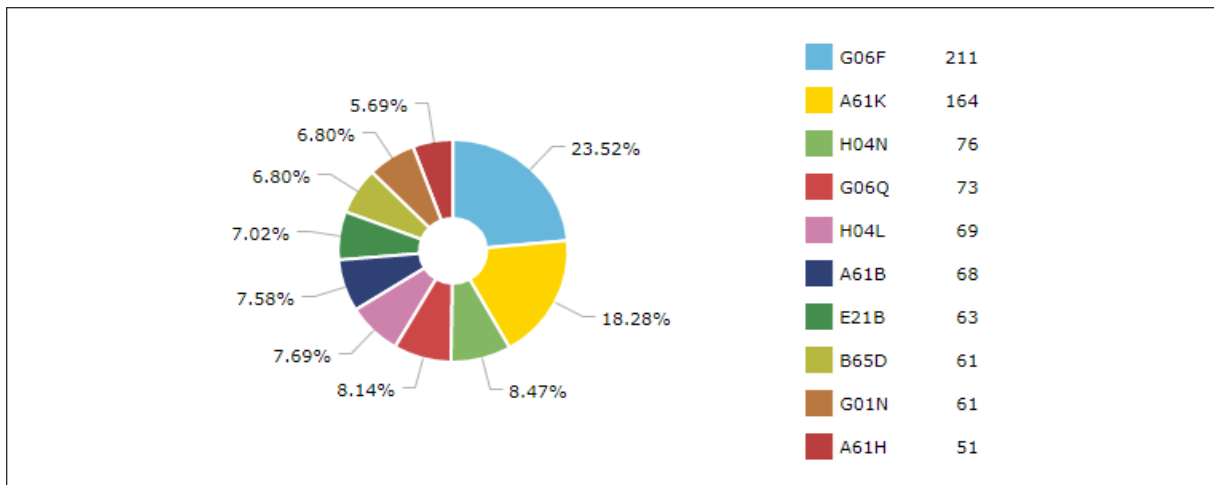
그림 4-8 우크라이나의 주요국 출원 현황



미국 출원은 2001년 최초 출원 이후 2007년부터 출원량이 크게 증가되어 평균 30건씩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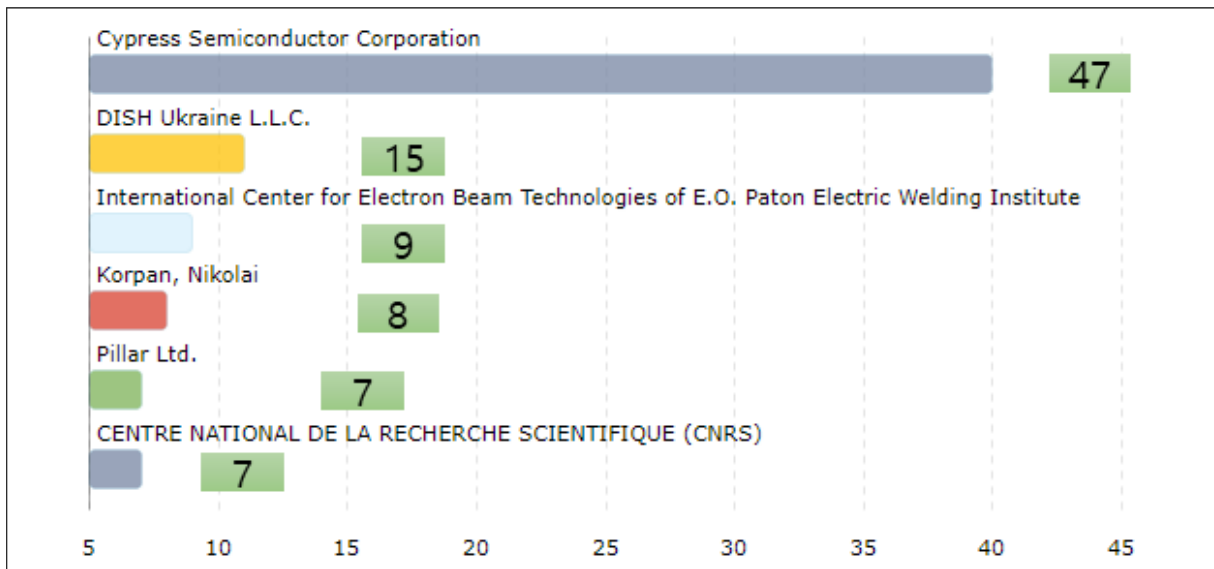
IPC 별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G06F 분야 23%, A61K 18%, H04L 8%로 전기전자분야(G06, H04, G01)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분야(A61)는 30%인 분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9 IPC 별 출원동향



주요 출원인으로 Cypress Semiconductor사가 미국에 47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DISH사는 미국에 15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0 주요 출원인 현황



3. 정리

한국은 상용화 기술이 매우 발달된 나라이며, 우크라이나는 우주, 물리, 수학, IT 등 기초 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어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수립 할 수 있다. 양측은 무역경협 공동위원회와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에 관해 논의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양국간 교류가 일시 중단되고 있지만 최근 웨비나 등을 통해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IT 산업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이며, 약 22만 명이 IT 산업에 종사하고, 매년 평균 20~2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IT 전문가들 중 80%가 외국 회사와 일하고 있으며, 구글, 삼성, 아마존 등 세계 대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R&D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삼성 R&D센터는 2009년 설립되었으며 약 9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우수 인력을 활용하여 기초과학, 우주기술, ICT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지재권을 확보하고 유럽 및 CIS 국가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제정책과 산업 잠재력, EU와의 협력 동향, 한국과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등의 첨단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2020 디지털 전략'에서 명시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유망산업 분야 중 특히 농산물 가공,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가 협력 잠재력이 클 수 있다. 또한 농업국인 우크라이나의 핵심산업인 농업 분야와 연계된 '디지털 농업' 분야와 e-Skills, e-Health, e-Trade를 포함하는 '스마트 도시-스마트 지역' 프로젝트에도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AI, 무인이동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현지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한-우크라이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기술도입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상품이 불법적으로 수출/수입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관세청에 신고하여, 해당 상품에 대해 △전체 파괴, △일부분 제거, △압류 등을 요청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상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할 지식재산권 고등법원(High Court on Intellectual Property)을 설립중(2020년 중 정상운영 예상)에 있으며, 특허침해시 동 법원에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법원에서 특허 침해 결정이 난 이후, 피해 당사자는 우크라이나 반독점 위원회(Antimonopoly Committee)에 특허권 침해자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 3 절

우크라이나의 IP 환경분석

I IP 행정 거버넌스 및 지식재산 제도 구축 현황 조사

1. IP 행정 거버넌스 현황 조사

우크라이나는 2020년 6월 16일 “국가 지식재산청 설립에 관한 특정 법률 개정” No. 703-IX(이하, ‘NIPO법’)이 채택되어 2020년 10월 14일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3일 우크라이나 내각 조례 No. 1276-r “국가 지식재산청”에 따라 “Ukrainian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Ukrpatent)”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주요업무로는 “① 산업재산권 신청 접수, 심사, 결정, ②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에 대한 국가의 저작권 등록 및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 등록, 해당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고려, ③ 국가 산업 디자인 등록 및 인증서 발급, ④ 지리적 표시의 국가 등록, ⑤ 발명 및 실용신안의 국가 등록,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 발행, ⑥ 국 상표 등록, 상표 인증서 발급, ⑦ 반도체 제품 레이아웃(레이아웃)의 국가 등록, 레이아웃 인증서 발급, ⑧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증 발급, ⑨ 산업 디자인에 대한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 무효화, ⑩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의 무효화, ⑪ 산업 디자인, 상표, 레이아웃, 지리적 표시, 발명 및 실용 신안에 대한 공식 정보의 게시, ⑫ 주 등록부 유지, ⑬ 상표 출원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관리, ⑭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관한 공식 게시판의 출판물, ⑮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대표자 교육, 증명 및 등록(변리사), ⑯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주 대표 등록부 유지(특허 변호사), ⑰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영역에서 국가 정책의 구현에 관한 정보 및 설명 제공, ⑱ 헤이그 및 제네바 법률이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규정된 “국내 관청” 및 “관청”의 기능 수행,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서 규정한 “국내 사무소”의 기능 수행,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기능을 수행” 등을 들고 있다.¹⁴¹⁾

2016년부터 우크라이나 경제개발통상부(MEDT)는 국가 정책의 형성과 실현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중앙 기관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IP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한 국영 기업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연구소"는 MEDT 관리 영역에서 운영되는 심사기관으로, 주요 책임은 발명, 실용 신안을 위해 제출된 출원의 심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산업 디자인 및 상표. 2016년부터 MEDT와 WIPO 국제사무국 간의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식재산 연구소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IP 시스템을 구축하는 또 다른 기관으로는 2018년에 설립되어 MEDT 관리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조직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하, 'NIPO')"¹⁴¹⁾이다. NIPO의 주요 임무는 지식재산 분야의 제도적 인프라 개발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의 공동 프로젝트, 특히 TISC(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s)의 국가 네트워크 구축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지식재산교육원 설립, 지식재산 분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 국가 조직,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우크라이나 기관(UACRR)도 우크라이나의 국가 IP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2. 지식재산 제도 구축현황 조사

(1) 개요

우크라이나는 구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나, 사유화 지연, 군수산업 등 중공업 편중 경제구조, 과중한 에너지원 수입 부담으로 아직도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산업별 거래 대상 국가를 구분해 보면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들은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크라이나의 기계산업은 사실상 구소련 역내 시장에 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항공·우주, 군수, 원자력 등은 러시아와의 협업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러시아가 주요 시장이다.

산업과 교역 구조로 볼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결별하고 EU와 통합할 경우 EU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높은 핵심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부가가치가 낮고 가공도도 낮은 농업 등에 특화된 위험을 안을 수 있다.¹⁴²⁾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친러 편중 산업경제구조에 벗어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는 헌법, 민법, 상법, 관세법, 기타 특별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허(inventions and utility model), 실용신안(utility model), 디자인(industrial

141) <<https://ukrpatent.org/en/articles/about>> 참조.

142) 김학기, 우크라이나 산업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 러시아와 연계된 산업구조로 동 - 서 지역 간 갈등 장기화 우려, KIET 산업경제분석 (2014.04).

design), 상표(trademarks for goods and services),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저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등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된다.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은 정책·감독 기능을 하는 경제개발무역농업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Agriculture), 지식재산권의 등록, 보호, 인수 등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특허청(Ukraini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출원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를 관세청 지식재산권 등록부(Ukrainian Customs Reg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bjects)에 등재하고, 해당 상품들의 수입·수출을 관리하는 관세청 등으로 나뉜다.¹⁴³⁾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 국제규범으로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특허법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설립협약 1967년(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문학·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1년(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WIPO 로마협약 1961년(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등이 있다.

(2) 특허제도¹⁴⁴⁾

1)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우크라이나 특허법에서 발명(실용신안)은 기술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소산이라고 정의한다. 특허(발명(실용신안)특허, 발명(실용신안)의 선언적 특허, 비밀발명(실용신안)특허, 비밀발명(실용신안)의 선언적 특허 등)는 우선권, 창작자로서의 신분 및 발명(실용신안)의 권리를 증명하는 보호증서를 말하고, 발명특허는 특허의 일종으로, 출원한 발명을 실제심사를 한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1조).¹⁴⁵⁾

우크라이나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특허법에서 보호하고 있고, 동 법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143) https://overseas.mofa.go.kr/ua-ko/brd/m_20837/view.do?seq=72

144) 정식명칭은 “Law of Ukraine on the Protection of Rights to Inventions and Utility Models”이다.

145) Article 1. (Definitions) “Invention (utility model)” means a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f a human being in any field of technology; “Patent (patent for an invention, declarative patent for an invention, declarative patent for a utility model, patent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invention,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utility model)” means a protection document that certifies the priority, authorship, and property right to invention (utility model); “Patent for an invention” means a kind of a patent granted under the results of the qualified examination of an application for invention;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동 법 제7조).¹⁴⁶⁾ 발명은 제품(장치, 물질) 또는 모든 기술 분야의 방법(프로세스)에 관한 것일 수 있다(동 법 제6조).¹⁴⁷⁾

발명은 선행기술의 일부가 아니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¹⁴⁸⁾ 선행기술은 특허출원일(우선일)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¹⁴⁹⁾ 특허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이 된 경우에는 신규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¹⁵⁰⁾ 발명은 당업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진보성이 인정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산업 또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동 법 제7조).¹⁵¹⁾

146) Article 7. (Patentability Requirements to an Invention, Utility Model)

1. An invention meets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provided that it is new, involves an inventive step and is industrially applicable.
2. A utility model meets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provided that it is new and industrially applicable.

147) Article 6. (Conditions of Granting the Legal Protection)

1. The legal protection shall be granted to an invention (utility model) that does not contradict the public order, humanity and morality and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2. The object of an invention (utility model), to which the legal protection is granted under this Law, may be:
 - a product (device, substance, microorganism strain, plant or animal cells culture etc.);
 - a process (method) as well as the novel use of a known product or process.
3. According to this Law, the legal protection shall not extend to such technology objects:
 - plant varieties and animal breeds;
 - processes of the reproduction of plants and animals that are biological in its basis and do not belong to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 topographies of integrated circuits;
 - results of art constructing.

148) Article 7. (Patentability Requirements to an Invention, Utility Model)

3. An invention (utility model) shall be considered to be new provided that it does not form part of the state of the art. Objects that are a part of the state of the art shall be considered only separately when determining the novelty of an invention.

149) Article 7. (Patentability Requirements to an Invention, Utility Model)

4. The state of the art comprises everything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out the world before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with the Office or, if the priority has been claimed, before the date of its priority.
5. The state of the art also includes a content of any application for granting a patent in Ukraine (includ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in which Ukraine is designated) in the wording, in which this application has been primarily filed, provided that the date of its filing (if the priority has been claimed, the date of the priority) is prior to the date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nd that the application has been already published on or after this date.

150) Article 7. (Patentability Requirements to an Invention, Utility Model)

6. The recognition of an invention (utility model) as a patentable one does not depend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invention (utility model) by an inventor or by a person which has received such an information directly from an inventor or indirectly within 12 months before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with the Office or, if the priority has been claimed, before the priority date. In this case, the person, who is interested in using this provision, is obliged to prove the circumstances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151) Article 7. (Patentability Requirements to an Invention, Utility Model)

7.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involving an inventive step provided that it is not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e. an invention does not proceed obviously from the state of the art. The content of applications mentioned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ile estimating the invention level.
8. An invention (utility model) shall be considered to be industrially applicable provided that it may be used in industry or other field of activity.

2) 권리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 10년)이고, 특허가 의약품이나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인 경우에는 관련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동 법 제6조).¹⁵²⁾

특허권은 권리자임이 인정된 자에게 교부하고,¹⁵³⁾ 특허권자는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3자는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동 법 제28조).¹⁵⁴⁾

152) Article 6. (Conditions of Granting the Legal Protection)

4. The priority, authorship and property right to an invention are certified by a patent (declarative patent). The priority, authorship and property right to a utility model are certified by a declarative patent. The term of the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be 20 years a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with the Office. The term of the declarative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be 6 years a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with the Office. The term of the patent for an invention, the object of which is a drug, means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means for the protection of plants and for the use of which a permission of the relevant authorized body is required, may be extended at the request of the owner of this patent for a period that is equal to the period between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and the date of the receipt of such a permission, but for no more than 5 years. The filing of a request is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respective fee.

In this case the Office shall define the procedure for filing a request and extending the validity period of a patent. The term of a declarative patent for a utility model shall be 10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with the Office. The term of a patent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invention and of a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utility model is equal to the period of the classification of an invention (utility model), but may not be longer than the period for the protection of an invention (utility model) defined under this Law. The validity of a patent shall be terminated before the appointed time under conditions prescribed in Article 32 of this Law.

5. The scope of the granted legal protection is defined by the patent (utility model) claims.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 claims shall be accomplished within the description of a patent (utility model) and relevant drawings.

6. The validity of a patent (declarative patent) that has been granted for a method of obtaining a product shall also extend to the product directly obtained by such method.

153) Article 25. (Granting a Patent)

1. The Office shall grant a patent within a month from the date of its state registration. A patent shall be granted to a person, which has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If several persons have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they shall obtain a single patent. The declarative patent for an invention (utility model) shall be granted at the responsibility of the patent owner for the conformity of an invention (utility mode) to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154) Article 28. (Rights Deriving From a Patent)

1. The rights deriving from a pat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publishing the data on granting a patent. The rights deriving from a patent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invention or from a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utility model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entering data on them into the relevant Register.

2. A patent shall give the exclusive right to the owner of a patent to use an invention (utility model) at his own discretion if such a use does not infringe rights of other owners of patents. The use of a secret invention (utility model) by the patent owner shall be accomplished in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of the Law of Ukraine "On the State Secret" and shall be agreed with the State Expert. The relationships, while using an invention (utility model), a patent for which belongs to several persons, shall be defin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m. If such agreement is not available, each patent owner may use an invention (utility model) at his own discretion, but none of them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a permission (a license) for the use of an invention (utility model) and transfer the property right on an invention to another person without consent of other patent owners.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use of an invention (utility model):

- manufacturing a product with the use of a patented invention (utility model), the use of this product, an offer of a product

for the market, including an offer via the Internet, selling, import (coming-in) and other its introduction into the commercial circuit as well as storing a product for defined purposes;

- the use of a process protected by a patent or an offer of a process for the use in Ukraine, provided that the person offering a process shall know that the use of a proces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atent owner is prohibited or,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t is obvious.

A product shall be considered to be manufactured with the use of a patented invention (utility model) provided that each indication included to independent item of invention (utility model) claims or equivalent indication is used while manufacturing a product. The patented process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used one provided that each indication included to independent item of invention (utility model) claims or equivalent indication is used.

Any product,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which is protected by a pat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manufactured with the use of this process provided that there are no evidences of the contrary and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s fulfilled:

- a product manufactured with the use of the patented process is new;
- there are reasons to consider that a product has been manufactured with the use of this process and the patent owner cannot determine a process that has been using in the course of manufacture of a product by the way of acceptable efforts.

In such a case, the obligation to prove that a process for manufacturing the product, which is identical to the product manufactured with the use of the patented process, differs from the said patented process, shall be placed on the person with respect to which there are grounded reasons to consider that this person infringes the patent owner's rights.

3. The exclusive rights of the owner of a patent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invention or a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utility model shall be restricted by the Law of Ukraine "On the State Secret" and the relevant decisions of the State Expert. The owner of a patent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invention or a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utility model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from the state body defined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money compensation to refund the expenses for the payment of fees provided by this Law. The court shall resolve any disputes on amounts and the procedure of obtaining money compensation.
4. The patent owner may use a precautionary marking with the indication of the patent number on a product or the package of a product that has been manufactured with the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
5. The patent shall give to his owner the exclusive right to forbid other persons to use an invention (utility model) without his permission, excluding the cases when according to this Law such a use is not considered to be the infringement of rights granted by a patent.
6. The patent owner may transfer, by an agreement, the property right to an invention (utility model) to any person, which shall become his successor in title. Secret inventions (utility models) could be transferred only on the approval of the State Expert.
7. The patent owner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the permission (a license) for the use of an invention (utility model) to any person at the basis of a license agreement and with respect to a secret invention (utility model) such permission may be granted only on the approval of the State Expert.
8. The agreement for transferring the property right to an invention (utility model) or the licensing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valid provided that they have been executed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arties.
Each party of the agreement has the right to officially inform other persons about transferring the property right to an invention (utility model) or granting the license for using an invention (utility model). Such a notification shall be provided by publishing the data in the official bulletin in the volume and under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Office with simultaneous entering this data into the Register.
Publication of the mentioned data as well as of the changes to the data proposed by the contracting party is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respective fee.
9. The patent owner, excluding the owner of a patent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invention or a declarative patent for a secret utility model,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with th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 a declaration on the consent to permit any person to use the patented invention (utility model). In this case, the annual fee for maintaining the validity of a patent shall be reduced by 50 percents from the next year after the year publishing the said declaration.
The person, who wishes to use the mentioned permission, shall conclude with the patent owner an agreement on payments. The court shall resolve any disputes that may occur during the fulfillment of this agreement.
If not a single person has notified the patent owner on his intention to use an invention (utility model), the patent owner may file with the Office a written request for withdrawing the said declaration. In this case, the annual fee for maintaining the validity of a patent shall be paid in full amount from the next year after the year of publishing the said request.

동 법 제28조에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위반행위는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로 간주하여 우크라이나의 현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특허권자가 청구 한 때에는 위 침해는 정지되어야 하고,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이선스를 허여 받은 실시권자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동 법 제34조).¹⁵⁵⁾

(3) 절차법

1) 심사절차

특허 심사절차는 우크라이나 과학기술부의 특허상표청(Ukrainian Patent Trademark Office)에서 이루어지며 동 절차는 ① 특허출원, ② 방식심사, ③ 실체심사, ④ 특허허여의 공표, ⑤ 특허등록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크라이나는 파리조약 가입국으로서, 다른 파리조약 가입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 출원하면 해당 출원은 파리조약 가입국에 최초 출원한 날과 동일한 날에 우크라이나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동 법 제15조).¹⁵⁶⁾ 또한 PCT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출원인은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 출원일로부터 31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서 특허등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동 법 제14조).¹⁵⁷⁾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신청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특허출원 및 모든 관련 서류는 우크라이나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동 법 제12조).¹⁵⁸⁾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된 우크라이나

10. The rights deriving from a patent do not infringe any other personal property or moral rights of an inventor, which are regulated according to other laws of Ukraine.

155) Article 34.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Patent Owner

1. Any offence against rights of the patent owner that are defined in Article 28 of this Law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infringement of the patent owner rights, which is prosecuted according to the current legislation of Ukraine.

2. On the request of the patent owner, the said infringement shall be terminated, and the infringer shall indemnify the actual damage to the certificate owner.

The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 license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demand the restoration of the affected rights of the patent owner by the patent owner consent.

156) Article 15. (Priority)

1. The applicant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the priority of an earlier application on the same invention (utility mode) within 12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with the Office or the relevant body of the State, which is a member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rovided that the priority has not been claimed on the earlier application.

157) Article 14. (International Application)

2. The examination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be accomplished provided that the examination institute obtains the translation of this application into Ukrainian and the document on the payment of the respective fee for filing of the application before the expiry of 31 months from its priority date. The said period shall be extended for no more than 2 months provided that the relevant request has been filed before the expiry of the period and the respective fee for filing of a request has been paid. Upon the receipt of the said documents within the established period, the notification on the accept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examination shall be sent to the applicant.

158) Article 12. (Application)

5.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in Ukrainian and shall contain:

특허 변호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동 법 제5조).¹⁵⁹⁾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은 특허출원을 접수하면 2~3개월간 방식심사¹⁶⁰⁾를 한다.¹⁶¹⁾ 그리고 출원인이 실제심사¹⁶²⁾를 요청하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실제심사를 한다. 실제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등록이 된다(동 법 제16조).¹⁶³⁾

심사청구제도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방식심사는 출원인의 표시에 관한 기재, 서류의 유무, 수수료 납부 등의 형식적인 요건 충족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진다. 실제심사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실제적인 요건 충족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에 동법 제7조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 a request for granting a patent for an invention or a declarative patent for an invention (utility model);
- a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utility model);
- invention (utility model) claims;
- drawings (if there is a reference to them in a description);
- an abstract.

159) Article 5. (Rights of Foreign Persons and Stateless Persons)

1. Foreign persons and stateless persons shall have equal rights with persons of Ukraine provided by this Law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of Ukraine, provided that the Verhovna Rada (Parliament) of Ukraine has approved the obligation of these international agreements.
2. Foreign persons and stateless persons residing or having a permanent location outside Ukraine exercise their rights in relations with the Office via representatives o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patent attorneys) registered under the Law.

160) Article 1. (Definitions) "Formal examination (examination by formal signs)" means the examination, in the course of which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object designated in an application belongs to the list of objects that may be recognized as inventions (utility models), and whether an application and its execution correspond to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161) Article 16. (Examination of Application)

9. In the course of the formal examination:
 -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is Law;
 -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the claimed object belongs to the technology objects specifi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of this Law as well as to the technology objects specified in Paragraph 3 of Article 6 of this Law;
 - the application shall be examined for conformity with the formal requirements of Article 12 of this Law and the regulations issued by the Office in compliance with this Law;
 - the document on the payment of the respective fee for filing of the application shall be examined for conformity with established requirements.

162) Article 1. (Definitions) "Qualifying examination (examination by substance)" means the examination, which determines the conformity of an invention with the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novelty, inventive step,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163) Article 16. Examination of Application

17. In the course of the qualifying examination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examined on the conformity with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defined by Article 7 of this Law.

The examination institute shall carry out the qualifying examination after the receipt of the relevant request of any person and the document on the payment of respective fee for the examination.

The applicant may file the said request and the document on the payment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Another person may file the said request and document after publication of the data on the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but not later than 3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This person shall not make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and shall only receive the conclusion of the examination on the application approved by the Office.

The period for filing of the said request and document shall be extended but for no more than 6 months provided that the relevant request has been filed and the fee for filing of the request has been paid before the expiry of this period. This period defaulted due to important reasons shall be renewed provided that the relevant request is filed and the fee is paid within 12 months after the expiry of this period. If the applicant fails to file the said request and document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withdrawn, and the applicant shall be notified accordingly.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반 여부, 제6조에서의 부등록사유 등을 검토한다. 특허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및 법원에 대한 무효심판 제도 등을 두고 있다.

2) 이의신청

출원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서 또는 청구한 서류의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대해 법원 또는 심판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가 등록된 후 출원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동시에 그에 관한 특허의 유효성 사항을 심리하여야 한다. 발명특허(선언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언으로 특허를 받기위한 국가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재심위원회에 불복할 권리는 상실된다. 출원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이의 신청에 대해 제시한 이유 및 이의신청의 심리 중에 밝혀진 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은 심판위원회 결정을 승인하기 전에 또한 당해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결정에 대해 이유를 붙인 이의 표명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이의 표명서는 1개월 이내에 심리되어야 한다. 이의 표명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행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그 결정은 법원만이 취소할 수 있다.¹⁶⁴⁾

164) Article 24. (Appellation against the Decision on an Application)

1. The applicant may appeal to the court or the Appellate Chamber against the Office decision on an application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ffice decision or copies of documents required according to the Paragraph 3 of Article 16 of this Law.
2. If the Office decision on an application was appealed to the court after the state registration of a patent, the court shall consider simultaneously the issue on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patent.
3. The right to appeal the Office decision in the Appellate Chamber shall be lost after the payment of the state fee for granting a patent (declarative patent) for an invention or a declarative patent for a utility model.
4. The appeal against the Office decision in the Appellate Chamber shall be accomplished by submitting the objection on the Office decision under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is Law and the regulations of the Appellate Chamber approved by the Office. Submission of the objection is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respective fee. If the fee is not paid within the period fix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objection shall be considered not submitted, and the applicant shall be notified accordingly.
5. After receiving by the Appellate Chamber the objection and the document on the payment of the fee for submitting the objection,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shall be terminated until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hamber is approved.
6. The objection against the Office decision on the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Appellate Chamber regulations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and the document on the payment of the fee for submitting the obje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asons presented in the objection by the applicant and during the consideration of the objection. The period for consideration of the objection shall be extended on the initiative of the applicant, but for no more than 2 months, provided that the relevant request has been filed and the fee for its filing has been paid.
7. On the results of the consideration of the objection, the Appellate Chamber shall make a grounded decision that shall be approved by the order of the Office and sent to the applicant.
If the objection was fully or partially satisfied, the fee for submitting the objection shall be returned to the applicant.
8. Before approving the Appellate Chamber decision, within a month from the date of making the decision, the Head of the

3) 무효심판

출원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한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¹⁶⁵⁾ 한편, 정정심판제도는 없다.

(3) 상표제도¹⁶⁶⁾

1)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표지 또는 표지의 조합은 표장의 대상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해당 표지에는 특히 사람의 이름을 포함한 단어, 문자, 숫자, 그림, 색채 및 색채의 조합 및 이들 표지의 조합도 포함된다(상표법 제5조 제2항).¹⁶⁷⁾ 또한 표장은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로부터 식별하는 표지라고 정의되어 있다(상표법 제1조).¹⁶⁸⁾ 기타 등록 가능한 상표로 단체표장(Collective Trademarks)이 있는데, 공통 특성을 갖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중 하나를 생산하는 단체에 관련된 표장은 단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상표법 제5조 제5항, 상표규칙 2.1.4).¹⁶⁹⁾ 또한, 음향, 입체, 빛, 색채 자체 또는 색채의 조합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상표규칙 1.4 상표규칙 2.1.24).¹⁷⁰⁾¹⁷¹⁾

상표법 제6조는 표지가 다음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이 될 수 있는 경우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타인의 명의로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표장, ②

Office may present a grounded written protest against this decision, and this protest shall be considered within a month.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hamber made on the protest is final and may be cancelled only by the court.

165) Article 24. (Appellation against the Decision on an Application)

9. The applicant may appeal to the court against the Appellate Chamber decision approved by the Office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decision.

166) 정식명칭은 "Law of Ukraine on Protection to Trademarks for Goods and Services"이다.

167) Article 5. (Conditions for Granting the Legal Protection)

2. The object of a mark may be any sign or any combination of signs. Such signs may be, among other, words, including personal names, letters, numerals, pictorial elements, colors and combinations of colors, as well as any combination of such signs.

168) Article 1. (Definitions) "mark" is a sign by which goods and services of persons differ from goods and services of other persons:

169) Article 5. (Conditions for Granting the Legal Protection)

5. Any person, associations of persons, or their legal successors shall be entitled to the right to obtain a certificate in the order established by the present Law.

170) 1.4. The protection is granted to the following trade marks:

- word marks in the form of words or combinations of letters;
- figurative marks in the form of graphic compositions represented in any form on a plane;
- three-dimensional figures or their compositions;
- combinations of the above-mentioned signs.

Such trade marks may be represented in colour or in combination of colours. As a trade mark may be registered light, as well as a colour per se or combination of colours, etc. Such trade marks are registered by the Office provided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enter them in the Register and thus make information on their registration available to public.

171) 2.1.24. If light is applied for registration as a trade mark, it is necessary to provide characteristics of light symbols/signals, their sequence, duration of luminescence and other features.

파리조약 제6조의2에 따른 주지저명한 표장과 같이, 우크라이나가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등록 없이도 보호되는 타인의 표장, ③ 주지저명한 상호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타인이 당해 상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표장, ④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와인과 주류 포함), ⑤ 적격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증명표장, ⑥ 타인에 속한 경우 해당 디자인을 복제한 표장, ⑦ 주지 저명한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제목 또는 동 저작물의 인용 및 등장인물, 예술작품 및 일부를 저작권자 또는 법적 승계인의 허락 없이 복제한 표장, ⑧ 주지저명한 사람의 성, 아호 및 그것에서 파생된 명칭, 초상화 및 모사이며,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복제한 표장.¹⁷²⁾

또한, 상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장은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 ① 공공질서, 인간성 및 도덕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② 국가의 문장, 국기, 기타 국가 엠블럼 및 기타 국가의 표상, 공식 국가명, 국제정부간기구의 표상 및 약칭 또는 전체명칭, 관리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적표지 및 품질인증표시, 검증인, 인장, 훈장 및 기타 명예표지 등을 표시 또는 모조하는 경우,¹⁷³⁾ ③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사용 결과로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④ 특정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지로만 구성되는 경우, ⑤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기술하는 표지나 데이터로만 구성된 경우, 특히 표지나 데이터가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품질, 구성, 수량, 속성, 용도, 가격, 상품 및 서비스가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⑥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상 및 용어를 구성하는 표지만을 갖고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⑧ 상품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또는 특정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한 필요에서 생기는 형상 또는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인 경우¹⁷⁴⁾

172) Article 6. (Grounds for Refusal of the Legal Protection)

3. Signs shall not be registered as marks if they are identical or misleadingly similar to such an extent that they can be confused with:

- marks that were earlier registered or filed for the registration in Ukraine on behalf of another person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and services;
- marks of other persons if these marks are protected without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Ukraine is a party, in particular the marks recognized as well-known marks according to Article 6bis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trade names that are known in Ukraine and belong to other persons who have acquired the right to the said names before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s to the Institution with respect to identical or similar goods and services;
- qualified indications of the origin of goods (including alcohols and alcohol drinks) that are protected according to the Law of Ukraine "On the Protection of Rights to Indication of the Origin of Goods"; the said signs may be used only as non-protected elements of marks of the persons who have the right to use the said indications;
- conformity marks (certification marks) that have been registered in the order established.

4. Signs shall not be registered if they reproduce:

- industrial designs, the rights to which in Ukraine belong to other persons;
- titles of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works known in Ukraine or quotations and characters from the said works as well as the artistic works and their fragments without the consent of copyright holders or their legal successors;
- surnames, first names, pseudonyms and their derivatives, portraits and facsimiles of persons known in Ukraine without their consent.

173) 앞에서 기술한 표지는 관계기관 또는 그 표지의 권리자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보호대상 외 요소로서 표장에 포함시킬 수 있다.

174) Article 6. (Grounds for Refusal of the Legal Protection)

2) 권리의 효력

등록된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동 법 제5조).¹⁷⁵⁾ 관할기관은 상표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공고와 동시에 표장에 관한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증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동 법 제14조).¹⁷⁶⁾

상표권자는 표장을 사용할 권리와 동 법에 의해 정해진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¹⁷⁷⁾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동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¹⁷⁸⁾ 상표권자는 계약에 의해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 According to the present Law, the legal protection shall not be granted for marks that represent or imitate:

- State armorial bearings, flags, and other State emblems, and other State symbols;
- official names of States;
- symbols and abbreviated or full name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official signs and hallmarks indicating control and warranty, assay marks, seals;
- decorations and other distinctions of honor.

Such symbols may be included in a mark as elements that are not protected, provided that the consent of the relevant authorized body or the proprietors of the signs was obtained. The authorized body regarding the name of the State is a collegial body established by the Institution.

2. According to the present Law, the legal protection shall not be granted for marks that:

- are usually devoid of any distinctive character and have not obtained such a character as a result of their use;
-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that are commonly used as the signs of goods and services of a certain kind;
-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or data that are descriptive while using for goods and services defined in the application or with respect to them, in particular signs or data that indicate kind, quality, composition, quantity, properties, purposes, value of goods and services, the place and time of manufacturing or sale of goods or rendering of services;
- are deceptive or liable to mislead as to goods, services, or the person that produces a good or renders a service;
-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that constitute commonly used symbols and terms;
- solely reflect the form caused by the natural state of goods, or by the necessity to obtain a specific technical result, or the form that imparts a significant value to a good.

The signs mentioned in paragraphs two, three, four, five and six of this paragraph may be used in a mark as elements that are not protected if these signs are not dominative in the image of a mark.

175) Article 5. (Conditions for Granting the Legal Protection)

3. The right of property to a mark shall be certified by a certificate. The validity period of the certificate is 10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an application to the Institution and may be extended by the Institution for 10 years each time at the request of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provided that the respective fee is paid under the procedure establish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8 of the present Law. The procedure for extend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certificate shall be determined by the Institution. The certificate validity shall be termina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pecified validity period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Article 18 of the present Law.

176) Article 14. (Granting a Certificate)

1. The Institution shall grant the certificate within a month from the date of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mark. The certificate shall be granted to a person that has the right to obtain the certificate. If several persons have the right to obtain the certificate, they shall obtain a single certificate.

177) Article 16. (Rights Deriving from a Certificate)

2.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shall be entitled the right to use the mark and exercise other rights provided by the present Law.

178) Article 16. (Rights Deriving from a Certificate)

5. Any proprietor of a certificate has the exclusive right to prohibit without his permission,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present Law, the use by other persons:

- the registered mark with respect to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the certificate;
- the registered mark with respect to the goods and services concerning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the certificate if

상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라이선스)을 허여할 수 있다. 상표권의 이전이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상품의 제조자 혹은 서비스의 제공자에 관해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동 법 제16조).¹⁷⁹⁾

상표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침해가 중지되는 것으로 하고,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실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상표권자는 또한 불법으로 사용된 상표에 현저히 유사하며,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으로부터 제거하거나 파괴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허여 받은 자도 상표권자의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 요구하는 권원을 가진다(동 법 제20조 제2항).¹⁸⁰⁾

(3) 절차법

1) 심사절차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와 등록받고자 하는 표장의 이미지와 설명, 니스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등을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Ukrainian Patent Trademark Office)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절차는 ① 등록출원, ② 방식전문심사, ③ 실체(적격성)전문심사, ④ 출원공고, ⑤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동 법 제10조 제1항).¹⁸¹⁾ 상표출원서 제출하면 먼저 방식심사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상표법의 형식 요건

such a use may result in a deception in relation to the person manufacturing the goods or rendering services;

- the sign that is similar to the registered mark with respect to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the certificate if the result of such a use is a risk of confusing the said sign with the mark;
- the sign that is similar to the registered mark with respect to the goods and services that are akin to those listed in the certificate if the result of such a use is a risk of the deception in relation to the person manufacturing the goods or rendering services or a confusion of the said sign with the mark.

179) Article 16. (Rights Deriving from a Certificate)

7.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may transfer, by an agreement, the property right to the mark to any person fully or with respect to certain part of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the certificate. Transfer of the property right to the mark shall not be allowed, if it may cause a deception of a consumer with respect to goods and services or to the person manufacturing goods or rendering services.

8.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has the right to grant a permission (license) to use the mark to any person by a licensing agreement. The licensing agreement shall contain a provision providing that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manufactured or rendered according to the licensing agreement will not be lower than the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and that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will provide the control under the fulfillment of the said requirement.

180) Article 20. (Infringement of Rights of Certificate Proprietor)

2. On the request of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the said infringement shall be terminated, and the infringer shall indemnify the actual damage to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may also request to remove illegally used mark or sign from goods or goods package, which is so much similar to the mark that the mark and the sign may be confused, or to liquidate the produced reproductions of the said mark or the sign, which is so much similar to it that they may be confused. The person who was granted a license shall be also entitled to the right to require the restoration of the affected rights of the proprietor of the certificate by the certificate owner consent.

181) Article 10. (Expert Examination of Application)

1. Expert examination of an application shall have the status of scientific and technical expert examination and consists of the formal expert examination and qualification expert examination (expert examination on the merits). The expert examination shall be conducted by an institution of expert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present Law and rules, determined by the

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¹⁸²⁾ 그 후 출원된 표장이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출원을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대리인으로 하여야 하고,¹⁸³⁾ 출원은 우크라이나어로 기재하여야 한다(동 법 제4조, 제7조 제4항).¹⁸⁴⁾

심사청구제도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체심사 과정에서 청구된 표지가 동 법에 규정된 법적보호를 부여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자료를 포함한 전문심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및 외부정보원 등 관련 공적 간행물을 사용한다. 전문심사기관은 동 표지가 법적보호를 부여 받기 위한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예비 결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상표등록될 사유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답변서는 출원에 관한 전문심사 결론서를 작성할 때 고려된다(동 법 제10조 제15항).¹⁸⁵⁾

상표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및 법원에 대한 무효신청 등이 있다.

Institution on the basis of the present Law.

182) Article 10. (Expert Examination of Application)

9. In the course of the formal expert examination:

- the date of filing an application is determined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present Law;
- the application is examined for conformity with the formal requirements of Article 7 of the present Law and the regulations issued by the Institution in compliance with the present Law;
- the document for payment of the respective fee for filing the application is examined for conformity with specified requirements.

183) Article 4. (Rights of Foreign and Other Persons)

1. Foreign and stateless persons shall have the rights equal with the rights granted to persons of Ukraine by the present Law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of Ukraine or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2. Foreign and other persons residing or having a permanent location outside Ukraine shall exercise their rights in the relations with the Institution through representatives registered under the Provisions regarding Representatives on Mat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pproved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184) Article 7. (Application)

4. The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in Ukrainian and contain the following:

- the request for the registration of a mark;
- an image of the sign being claimed;
- a list of goods and services for that the applicant requests to register the mark which are grouped according to the ICGS.

185) Article 10. (Expert Examination of Application)

15. In the course of the qualifying expert examination, the claimed sign shall be examined on the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for granting the legal protection defined by the present Law. In this case, a database of the institution of expert examination, including the materials of applications, as well as external information sources and relevant official publications are used.

16. If there are reasons to consider that the claimed sign does not meet fully or partially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the legal protection, the institution of expert examination shall send to the applicant the grounded preliminary conclusion with the proposition to give a motivated answer to support the registration of mark. The applicant shall give the answer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in Paragraph 6 of this Article for additional materials, and this answer is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conclusion of the expert examination on the application is being prepared.

2) 이의신청

출원인은 출원에 관한 관할기관의 결정에 대해 관할기관의 결정서 또는 청구한 서류의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 또는 심판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등록 후 출원에 관한 관할기관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그에 따른 등록증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동 법 제15조).¹⁸⁶⁾ 출원에 관한 관할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출원인에 의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심리 중에 나타난 사유의 범위 내에서 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한다(동 법 제 19조 제1항).¹⁸⁷⁾ 해당 결정서는 관할기관의 명령을 가지고 승인 출원인에게 송부된다.¹⁸⁸⁾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후 1개월 이내에 관할기관의 장은 그 결정에 대해 사유를 기재한 이의표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표명서는 1개월 이내에 심리된다. 이의표명서에 관해 이루어진 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하며 법원에 의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동 법 제15조).¹⁸⁹⁾

186) Article 15. (Appellation against the Decision on an Application)

1. The applicant may appeal to the court or the Appellate Chamber against the Institution decision on the application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Institution decision or copies of documents required according to the Paragraph 3 of Article 10 of the present Law.
2. If the Institution decision on the application was appealed to the court after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mark, the court shall consider simultaneously the issue on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certificate.

187) Article 19. (Invalidation of Certificate)

1. A certificate may be fully or partially invalidated by the court in the following cases:
 - a) The registered mark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the legal protection.
 - b) The certificate contains elements of the mark reproduction and the list of goods and services that were not presented in the filed application.
 - c) The certificate was granted in the result of the filing an application with the infringements of rights of other persons.
2. If the certificate is considered to be fully or partially invalid, the Institution shall inform about it in its official bulletin.
3. The certificate or a part of the certificate that have been considered to be invalid, are considered to be those that are out of effect from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188) Article 15. (Appellation against the Decision on an Application)

6. The objection against the Institution decision on the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Appellate Chamber regulations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and the document for payment of the fee for submitting the obje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asons presented in the objection by the applicant and during the discussion of the objection. The period for consideration of the objection may be extended on the initiative of the applicant, but for no more than 2 months, provided that the relevant request is submitted and the fee is paid with respect to the request.
7. On the results of the consideration of the objection, the Appellate Chamber shall make a grounded decision that shall be approved by the order of the Institution and sent to the applicant. If the objection was fully or partially satisfied, the fee for submitting the objection would be returned to the applicant.

189) Article 15. (Appellation against the Decision on an Application)

8. Before approving the Appellate Chamber decision, within a month from the date of making the decision, the Head of the Institution may present a grounded written protest against this decision, and this protest shall be considered within a month.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hamber made on the protest is final and may be cancelled only by the court.

3) 무효심판

출원인은 관할기관이 승인한 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¹⁹⁰⁾ 법원은 ① 등록상표가 법적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등록증이 제출된 출원에 상표 복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 출원 결과가 교부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등록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등록증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로 판정된 경우 관할기관은 그 취지를 그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무효로 판정된 등록증 또는 등록증의 일부는 출원일로부터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한편, 정정 심판 제도는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동 법 제19조).¹⁹¹⁾

4)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는 일반적으로 농산물, 식품류, 와인 및 주류, 공산품에서 사용되며,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표시와 적격표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단순표시(simple indication)는 지리적 원산지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나 이미지 등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단순표시의 법적 보호는 그 사용을 기반으로 하며, 사실이 아니거나(허위)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순표시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적격표시(qualified indication)는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일 수 있다. 원산지 표시는 그 장소에서 유래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지리적인 장소 이름으로, 이러한 상품은 해당 장소의 자연조건에 따라 특별한 특성을 가지게 되거나, 이러한 자연조건과 함께 그 장소 특유의 인적 요소와의 조합에 의해 특별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반면 지리적 표시는 해당 장소 특유의 자연조건, 인적 요소 또는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해 특별한 속성, 명성 기타 특성을 갖는 지리적 장소를 직간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나 이미지를 말한다. 적격표시는 우크라이나 지식재산청(NIPO)에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¹⁹²⁾

190) Article 15. (Appellation against the Decision on an Application)

9. The applicant may appeal to the court against the Appellate Chamber decision approved by the Institution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decision.

191) Article 19. (Invalidation of Certificate)

1. A certificate may be fully or partially invalidated by the court in the following cases:

a) The registered mark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the legal protection.
b) The certificate contains elements of the mark reproduction and the list of goods and services that were not presented in the filed application.
c) The certificate was granted in the result of the filing an application with the infringements of rights of other persons.

2. If the certificate is considered to be fully or partially invalid, the Institution shall inform about it in its official bulletin.

3. The certificate or a part of the certificate that have been considered to be invalid, are considered to be those that are out of effect from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192) 이민기 외,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KOTRA, 2020), 99-100면.

(4) 디자인제도¹⁹³⁾

1)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산업디자인(디자인)은 예술적 디자인 분야에서 인간의 창작 활동의 성과를 말하고,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 활동을 통해 디자인을 창작 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특허 디자인이라 함은 특허를 부여받은 디자인이라고 정의한다(디자인법 제1조).¹⁹⁴⁾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 특허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의 외관을 결정하며, 심미적 및 인체공학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형상, 도형, 채색 또는 이들의 조합은 디자인은 법적보호 대상으로 부여 될 수 있다(동 법 제5조 제1항, 제2항).¹⁹⁵⁾

디자인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① 건축물 (소형 건축형태 제외), 수력발전기술 또는 기타 고정구조물, ② 인쇄 자체, ③ 액체, 가스, 자유 유동성 물질 또는 유사한 물질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형태의 물체(동 법 제5조 제3항).¹⁹⁶⁾

디자인은 신규인 경우에는 특허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될 수 있다. 디자인이 출원일 전 또는 우선권이 주장될 경우에 이전에 그 주된 본질적인 특징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 신규인 것으로 간주된다.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은 출원일 전에 접수된 모든 출원의 내용을 참작하여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경우 출원일 전에 취하되거나 등록이 거절되고 심판청구의 가능성이 소진된 것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동 법 제6조).¹⁹⁷⁾

193) 정식명칭은 “Law of Ukraine on Protection to Industrial Design”이다.

194) Article 1. (Definitions) In this Law, terms presented below are used to denote the following: ‘industrial design’ means the result of a creative activity of a man in the field of artistic designing; ‘author’ means the man by whose creative work an industrial design has been created; ‘patent’ means a patent of Ukraine of an industrial design; ‘patented industrial design’ means the industrial design for which the patent has been granted;

195) Article 5. (Conditions of Granting Legal Protection)

1. The legal protection is granted to an industrial design that does not contradict the public order, principles of humanity and morals, and complies with the patentability conditions.
2. The object of an industrial design may be the shape, picture, or coloration, or their combination, which define the appearance of an industrial product and are intended to satisfy aesthetic and ergonomic demands.

196) Article 5. (Conditions of Granting Legal Protection)

3. According to this Law, the legal protection is not granted to: -objects of architecture (except small architectural forms), industrial, hydrotechnical, and other stationary structures; - printed products per se; -objects of an unstable form of liquid, gaseous, free-flowing, or like substances, etc.

197) Article 6. (Conditions of Patentability of an Industrial Design)

1. An industrial design meets patentability conditions if it is new.
2. An industrial design is considered new if the aggregate of its substantial features has not become universally accessible in the world before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with the Office or, if priority is claimed, before its priority date.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novelty of an industrial design ther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content of all applications received by the Office earlier, with the exception of those which as of said date are considered withdrawn, withdrawn or on which the Office has decided to refuse the grant of a patent and the possibilities of appealing against such decisions have been exhausted.

2) 권리의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나 5년을 넘지 못한다.¹⁹⁸⁾ 특허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증을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된다(동법 제18조 제1항).¹⁹⁹⁾

특허는 그 권리자에게 그 실시가 다른 특허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재량에 따라 디자인을 실시하는 배타권을 부여한다. 특허는 권리자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이 그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권자는 계약에 따라 디자인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허권자 권리의 승계인이 된다. 특허권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디자인의 실시를 허용할 수 있다.²⁰⁰⁾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범칙은 권리 침해로 간주되고, 특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는 금지되어야 하고 침해자는 특허권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침해된 특허권자의 권리 회복에 관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동 법 제26조).²⁰¹⁾

198) Article 5. (Conditions of Granting Legal Protection)

5. The property right on an industrial design is certified by a patent. The period of validity of a patent for an industrial design is of 10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to the Office and may be extended by the Office at the request of the patent's owner, bu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199) Article 18. (Grant of Patent)

1. A patent is granted by the Office within a month after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patent. A patent is granted to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obtain the patent. If several persons have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one patent is granted to them. A patent is granted within responsibility of its owner without a guarantee of validity of the patent.

200) Article 20. (Rights Deriving from Patent)

2. A patent grants its owner an exclusive right to use the industrial design at his/ own discretion, unless such a use infringes rights of other owners of patents.

3. A patent gives its owner the right to prohibit other persons from using the industrial design without his permission, with the exception of cases where such use is accordance to this Law not considered an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patent's owner.

4. The owner of a patent may transfer the right of ownership of the industrial design under an agreement to any third person, who becomes a successor in title of the patent's owner.

5. The owner of a patent may grant any person a permission (grant a license) for the use of the industrial design on the ground of a license agreement.

201) Article 26. (Infringement of Rights of Patent's Owner)

1. Any offence against the rights of the owner of a patent, provided by Article 20 of this Law, is considered an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owner of the patent, which entails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egislation of Ukraine.

2. On request of the owner of the patent, such an infringement is to be ceased and the infringer is bound to compensate the owner of the patent for inflicted losses. Restoration of infringed rights of the owner of the patent may also, by his consent, be demanded by a person who has acquired a license.

(3) 절차법

1) 심사절차

우크라이나는 파리조약 당사국으로서, 다른 파리조약 체결국에 선출원한 디자인을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 출원하면 해당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동 법 제13조)²⁰²⁾ 디자인 출원시 디자인이 실시된 제품의 외관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의 이미지들(제품 자체 또는 그 모델이나 그림)을 제출해야 하며, 그와 함께 출원 명세서와 도면 등도 제출해야 한다.²⁰³⁾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된 우크라이나 특허 변호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²⁰⁴⁾ 우크라이나 법률상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실질심사가 없고, 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2) 이의신청

출원인은 출원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대해 교육 과학 기술부의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 및 심판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원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대해 특허 등록 후에 법원에 항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동시에 또한 해당 특허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 결정한다.²⁰⁵⁾ 이의신청 심리 결과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채택하고 해당 결정은 교육과학기술

202) Article 13. (Priority)

1. An applicant has the right to priority of an earlier application on the same industrial desig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with a relevant body of a State which is a member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unless priority has been claimed for the earlier application.
2. The priority of an industrial design that has been used in an exhibit shown at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s held at the territory of a State which is a member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may be determined by the date of opening of the exhibition if the application has received to the Office within six months from the said date.

203) Article 11. (Application)

4. The application is drawn up in the Ukrainian language and is to contain:

- request for grant of a patent;
- set of images of the product (the product proper or in the form of its mock-up or drawings), which provide a full notion of its appearance;
- descrip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 drawings, diagram, map (where necessary).

204) Article (. Rights of Foreign and Other Persons)

1. Foreign and stateless persons have equal rights with persons of Ukraine provided by this law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of Ukraine or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2. Foreign and other persons residing or having a permanent location outside Ukraine exercise their rights in relations with the Office through representative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Representatives in Mat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pproved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205) Article 19. (Appeal against Decision on Application)

1. An applicant may appeal against a decision of the Office on an application to the court as well as to the Appellate Chamber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of the decision of the Office or of copies of materials,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4 of this Law.
2. If the decision of the Office on an application has been appealed against to the court after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술부의 명령에 의해 승인되어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기 전, 그리고 심판위원에 의한 당해 결정의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결정에 대해 사유를 기재한 이론 신청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심리되어야 한다. 동 이의신청에 대한 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원만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동 법 제18조).²⁰⁶⁾

3) 무효심판

출원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된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결정 수령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²⁰⁷⁾

법원은 ① 특허 디자인이 동 법이 정하는 특허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 출원에서 공개되지 않은 특징이 디자인의 본질적 특성 전체에 존재하는 경우, ③ 제3자의 권리침해에 의한 출원의 결과로 특허 부여된 경우에는 등록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인정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보에 이를 고시한다. 무효로 인정된 특허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는 특허 허여의 공고일로부터 무효로 간주된다(동 법 제25조).²⁰⁸⁾

patent, then the court decides at the same time also the issue of validity of the relevant patent.

206) Article 19. (Appeal against Decision on Application)

7. On results of consideration of an objection, the Appellate Chamber adopts a motivated decision which is approved by an order of the Office and sent to the applicant. In the event of a full or partial satisfaction of an objection, the fee for the filing of the objection is to be returned.

8. Before the approval of a decision of the Appellate Chamber, within a month from the date of its adoption, the Head of the Office may present a grounded written protest against this decision, which is to be considered within a month.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hamber, adopted as to this protest, is final and may be canceled only by a court.

9. An applicant may appeal against a decision of the Appellate Chamber, approved by the Office, to the court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of the decision.

207) Article 19. (Appeal against Decision on Application)

9. An applicant may appeal against a decision of the Appellate Chamber, approved by the Office, to the court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of the decision.

208) Article 25. (Recognition of Invalidity of Patent)

1. A patent may be recognized completely or partly invalid by the court in the following cases:

(a) nonconformity of a patented industrial design to patentability conditions defined by this Law;

(b) existence of features that were not presented in the filed application in the aggregate of substantial features of an industrial design;

(c) grant of a patent as a consequence of filing the application with infringement of rights of third persons.

2. When having recognized a patent or a part thereof invalid, the Office informs of this in its official bulletin.

3. A patent or a part thereof which have been recognized invalid are considered null and void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data about the grant of the patent.

(4) 저작권제도²⁰⁹⁾

1) 보호대상 및 요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로서, 문학 및 예술작품(글, 구술, 안무, 음악, 시청각 작품, 사진, 응용예술, 건축물, 번역, 편집 등 2차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설, 저널리즘, 과학, 기술 또는 기타 성격의 문학 작품(책, 브로셔, 기사 등), ② 연설, 강의, 연설, 설교 및 기타 구술 작업,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 ④ 데이터베이스, ⑤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⑥ 드라마, 뮤지컬 드라마 작품, 판토마임, 안무 및 기타 작품, ⑦ 시청각 작품, ⑧ 미술 작품, ⑨ 건축, 도시 건설, 정원 및 공원 예술 작품, ⑩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만든 작품을 포함한 사진 작품, ⑪ 장식 직조, 도자기, 조각, 주조, 예술 유리, 보석류 등의 응용 예술 작품, ⑫ 일러스트레이션, 지도, 레이아웃, 도면, 스케치, 지리, 지질학, 지형, 엔지니어링, 건축과 관련된 플라스틱 작품 등, ⑬ 파생물, ⑭ 통합된 부분으로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재의 선택, 편집, 배열을 포함한 창의적인 작업의 결과물로서의 작품 컬렉션, 민속 버전 컬렉션, 백과사전 및 선집, 일반 데이터 컬렉션 및 기타 복합 콘텐츠, ⑮ 우크라이나어 및 기타 언어 자막을 외국 시청각에 더빙, 사운드트랙, 추가하기 위한 번역문.²¹⁰⁾

209) 영문명칭은 “Law of Ukrain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이다.

210) Article 8. (Objects of Copyright)

1. Objects of copyright shall be works in the domain of science, literature and art, namely:
 - 1) literary written works of fiction, journalistic,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nature (books, brochures, articles, etc.);
 - 2) speeches, lectures, orations, sermons and other oral works;
 - 3) computer software;
 - 4) databases;
 - 5) musical works with or without lyrics;
 - 6) dramatic, musical drama works, pantomimes, choreographic and other works created for stage presentation and staging versions thereof;
 - 7) audiovisual works;
 - 8) works of fine art;
 - 9) works of architecture, city construction, garden and park art;
 - 10) photographic works, including works made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 11) works of applied art, including works of decorative weaving, ceramics, carving, casting, of art glass, jewelry, etc.: (item eleven of part one of Article 8 as amended, according to the Law of Ukraine No. 850-iv of 22.05.2003)
 - 12) illustrations, maps, layouts, drawings, sketches, plastic works relating to geography, geology, topography,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other spheres of activity;
 - 13) stage interpretations of work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part, and folklore versions that can be presented on stage;
 - 14) derivative works;
 - 15) collections of works, collections of folklore versions, encyclopedias and anthologies, collections of regular data, and other composite works, provided that they result from creative work involving the selection, co-ordination or arrangement of the contents without prejudice to the copyright of works which are included thereto as the integrated parts ;
 - 16) texts of translations for dubbing, soundtracking of and adding Ukrainian and other language subtitles to foreign audiovisual works;
 - 17) other works.
2. Protection under this Law shall be granted to all works specified in part one of this Article, both promulgated and non-promulgated, finished and unfinished, irrespective of their purpose, genre, volume, goals (education, information,

아이디어, 프로세스, 작동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으며,²¹¹⁾ 과학, 문학 및 예술 공연자, 음반 및 영상 제조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으로 보호된다.²¹²⁾

한편 다음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① 주 당국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위(법, 법령, 결의, 결정 등) 및 공식 번역본, ② 공공 기관이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폐, 엠블럼 등의 국가 상징, ③ 뉴스 또는 일반 언론 정보의 성격을 지닌 기타 사실에 대한 알림, ④ 법률에 의해 설정된 기타 저작물²¹³⁾

2) 권리의 내용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② 저작물의 사용을 허용 할 독점적 권리, ③ 저작물의 오용을 방지 할 수 있는 권리 (사용 금지 포함), ④ 법률로 정한 지식재산권의 기타 재산권.²¹⁴⁾

advertising, propaganda, entertainment, etc.)

211) Article 8. (Objects of Copyright)

3. The legal protection stipulated in this Law shall be extended only to the form of expression of a work, and shall not apply to any ideas, theories, principles, methods, procedures, processes, systems, manners, concepts, or discoveries, even if they are expressed, described, explained or illustrated in a work.

212) Article 35. (Objects of Related Rights)

Objects of related rights, irrespective of destination, contents, evaluation, or method and form of expression, shall be:

- a) performances of literary, dramatic, musical, musical drama, choreographic, folklore and other works;
- b) phonograms, videograms;
- c) broadcast organization broadcasts (programs).

213) Article 10. (Objects Not Covered by Protection)

The following items shall not be objects of copyright:

- a) daily news or current events information that are regular press information; b) works of folk art (folklore); c) official documents of a political,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nature (laws, decrees, resolutions, court awards, State standards, etc.) issued by government authorities within their powers, and official translations thereof;
- d) State symbols of Ukraine, government awards; symbols and signs of government authorities, the Armed Forces of Ukraine and other military formations; symbols of territorial communities; symbols and signs of enterpris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 e) bank notes;
- f) transportation schedules, TV and radio broadcast schedules and telephone directories and other similar databases that do not meet the originality criteria and to which the sui-generis right (a peculiar, special right) is applicable. The drafts of the official symbols and signs specified in clauses d) and e) of this Article, before they are officially approved, shall be considered as works and protected pursuant to this Law.

214) Article 15. (Proprietary Rights of an Author)

1. The proprietary rights of an author (or other copyright holder)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a) the exclusive right to use a work;
- b) the exclusive right to allow or prohibit the use of a work by other persons.

The proprietary rights of an author (or other copyright holder) can be assigned (alienated) to another person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of this Law, whereupon this person shall become a copyright holder.

- 2. An author's (or other copyright holder's) exclusive right to use a work shall allow him to use the work in any form and in any manner.
- 3. The exclusive right of an author (or other copyright holder) to allow or prohibit the use of a work by other persons shall entitle him to allow or prohibit: 1) reproduction of works; 2)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 of works; 3) public demonstration and public display of works; 4) any repeated promulgation of works, if carried out by an organization other than the one that carried out the first promulgation; 5) translations of works; 6) versions, adaptations, arrangements and

3) 권리의 효력

저작권은 저작물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법으로 정한 특별한 표시를 사용하여 권리를 고지 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권리(저작권재산권)는 저자의 사후 70년 동안 지속되며, 저작인격권은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된다. 공연자의 권리는 공연이 처음 녹음된 날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음반 제조업자 및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나 영상이 최초 공개된 때로부터 50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음반이나 영상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출판 또는 녹음시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첫 방송시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²¹⁵⁾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① 출판(출시), ② 어떤 방식 또는 어떤 형태로든 복제, ③ 번역, ④ 처리, 적응, 배열 및 기타 유사한 변경, ⑤ 컬렉션, 데이터베이스, 선집, 백과사전 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 ⑥ 공연, ⑦ 판매, 임대 (임대) 등, ⑧ 사본, 번역 사본, 변경 등 합법적으로 출판 된 저작물의 인용문 또는 연구용 출판물,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음반 및 비디오 그림의 삽화로, 관습에 따라 차용 출처와 저자 이름 (해당 출처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을 표시한 경우나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등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²¹⁶⁾

other similar alterations to works; 7) inclusion of works as components into collections, databases, anthologies, encyclopedias, etc.; 8) distribution of originals of works and their specimens by first sale or alienation by another method or by transferring for property lease or rental, and by other transfer prior to the first sale of specimens of a work; 9) general notification of the public of his works in such a manner that its representatives can access the works at any place and at any time at their own discretion; 10) transfer for property lease and (or) commercial rental after the first sale, alienation by another method of the original or specimens of audiovisual works, computer software, databases, musical works as sheet music, as well as of works fixed on a phonogram or videogram or in a computer-readable form; 11) import of specimens of a work.

215) Article 44. (Period of Validity for Related Rights)

1. A performer's proprietary rights shall be protected for 50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recording of a performance.
2. The rights of the manufacturers of phonograms and videograms shall be protected for 50 years from the first publication of a phonogram (videogram) or from the first sound or video recording thereof if the phonogram (videogram) is not published within said term.
3. Broadcast organizations shall enjoy the rights granted under this Law for 50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broadcast of a transmission.
4. The term of protection of related rights shall expire on January 1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protection term stipulated in this Article expires.
5. Performers' heirs and the successors of manufacturers of phonograms and videograms and broadcast organizations shall inherit the right to permit or prohibit the use of performances, phonograms, videograms, as well as broadcasts, and the right to receive remuneration within the term stipulated in this Article.

216) Article 10. (Objects Not Covered by Protection) The following items shall not be objects of copyright: a) daily news or current events information that are regular press information; b) works of folk art (folklore); c) official documents of a political,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nature (laws, decrees, resolutions, court awards, State standards, etc.) issued by government authorities within their powers, and official translations thereof; d) State symbols of Ukraine, government awards; symbols and signs of government authorities, the Armed Forces of Ukraine and other military formations; symbols of territorial communities; symbols and signs of enterpris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 bank notes; f) transportation schedules, TV and radio broadcast schedules and telephone directories and other similar databases that do not meet the originality criteria and to which the sui-generis right (a peculiar, special right) is applicable. The drafts of the official symbols and signs specified in clauses d) and e) of this Article, before they are officially approved, shall be considered as works and protected pursuant to this Law.

4) 절차법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자라는 사실, 공개(출판)되었다는 사실, 공개(출판) 날짜,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입증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서비스(Stat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of Ukraine)에 신청을 하여 저작권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저작권이 등록되면 해당 저작물이 기재된 날짜에 창작되었다는 사실과 등록자가 저작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17)

(5)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우크라이나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특허법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특허 보호요건을 살펴보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고, 실용신안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표의 보호요건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대상 요건에 있어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원칙에 반하는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해 그 적격을 부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디자인 보호요건은 신규성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217) Article 11. (Arising and Exercise of Copyright. Presumption of Authorship)

1. The author of a work shall be the primary holder with whom copyright vests. Unless proven to the contrary, the person indicated as the author on the original or a specimen of a work shall be deemed the author (presumption of authorship). This provision shall also apply when a work is published under a pseudonym identifying the author.
2. Copyright to a work shall arise by virtue of the work's creation. No registration of a work or any other special formalization thereof, nor performance of any other formalities shall be required for the onset and exercising of copyright.
3. In order to give notice of his rights, the person holding copyright (author of a work or any other person who was lawfully granted proprietary copyright to the work) can use the copyright protection sign. The sign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elements: an encircled Latin letter C - © the copyright holder's name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The copyright protection sign shall be applied to the original and to every specimen of a work.
4. If a work was published anonymously or under a pseudonym (except when a pseudonym unequivocally identifies the author), the publisher of the work (its name must appear thereon) shall be considered the author's representative and shall have the right to protect the latter's rights. This provision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the author of the work discloses his name and declares his authorship.
5. A copyright holder, in order to certify his authorship (copyright) with respect to a promulgated or non-promulgated work, the fact and date of publication of the work, or to certify contracts relating to the author's right to a work, may have its copyright registered at any time during the copyright protection term in the official State registers.
The State registration of copyright or of contracts relating to the author's right to a work shall be implemented by the Institution in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 approved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The Institution shall draw up and periodically issue catalogues of all State registrations.
The fees prescribed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shall be paid for the preparation by the Institution of the State registration of copyright and the contracts relating to the author's right to a work.
The Institution shall issue a certificate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copyright with respect to a work. The State duty shall be paid for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proceeds shall be transferred to the State budget of Ukraine. The amount of the State duty charged for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payment procedure shall be stipulated by legislation.
A person possessing the material object in which a work is embodied (expressed) shall not impede copyright registration by the person holding the copyright.

우크라이나의 특허 및 상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크라이나 디자인법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게 보호하는 데 우리나라 보다 보호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심사제도는 심사청구제도나 조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 우크라이나 특허청 심판위원회에 결정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무효심판의 청구는 법원에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자인 개인 이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되나, 우크라이나에서는 개인만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관련법의 지속적인 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 개별의 법제로 입법함으로써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있는 노력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건수가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등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크라이나의 IP 보호와 투자환경 및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인식 부족, 우크라이나 IP 관계기관들의 고질적인 부패와 비효율,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지식재산제도의 개혁 속도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우크라이나 경제연구소(IER)와 미국, EU 등의 평가가 따르고 있다.²¹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IP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많은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II 국제지식재산 지표를 통한 분석

1.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²¹⁹⁾²²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 및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민간회의로 1971년 창립되었다. WEF는 매년 전 세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국가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CR)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평가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체제²²¹⁾ 하에 4대 분야, 12개 부문, 103

218) <http://4liberty.eu/intellectual-property-rights-in-ukraine-sluggish-reforms/>

219)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220) 2020년의 경우 데이터 수집부족과 코로나 위기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지 않고 37개국 제한된 데이터에 기초한 특별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Special Edition 2020)를 발간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상술한 37개국에 포함되지 않은바 2019년 리포트를 기초로 기재하였다.

221) 2018년부터 평가체계 개편(시의성·객관성이 부족한 항목 삭제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 추가).

개 항목(통계 56개, 설문 47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²²²⁾

우크라이나는 우라늄, 석탄, 망간,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보리, 옥수수, 밀, 콩 등의 농업 생산이 활발하며,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4,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크림 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정치 및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극심한 경기 침체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²²³⁾ 2019년 국가경쟁력보고서(GC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국가경쟁력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2계단 하락한 85위(총 141개국)로 유라시아 국가들 중 러시아(43위), 카자흐스탄(55위), 아제르바이잔(58위), 아르메니아(69위), 조지아(74위)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 보호 점수는 39.4점으로 전체 141개국 중 11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권 점수는 38.6점으로 128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4-14 2019년 유라시아 지역 WEF 국가경쟁력 주요지수

	IP 보호	재산권	국가경쟁력
우크라이나	39.4(118위)	38.6(128위)	57.0(85위)
러시아(Russian Federation)	47.3(90위)	44.7(113위)	66.7(43위)
카자흐스탄(Kazakhstan)	51.8(72위)	56.4(67위)	62.9(55위)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70.4(30위)	68.1(37위)	62.7(58위)
아르메니아(Armenia)	53.8(65위)	63.7(46위)	61.3(69위)
조지아(Georgia)	46.5(94위)	62.5(48위)	60.6(74위)
몰도바(Moldova)	47.1(91위)	48.1(108위)	56.7(86위)
키르기스 공화국(Kyrgyz Republic)	40.2(116위)	42.3(122위)	54.0(96위)
타지키스탄(Tajikistan)	55.5(61위)	59.7(57위)	52.4(104위)

우크라이나의 경우 국가경쟁력의 전반적인 순위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한국보다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조사에 포함된 유라시아 지역 국가 9개국 중에서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에 이은 6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및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유라시아 지역 최하위인 118위, 128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222) 통계 및 설문은 WEF가 IMF, WB, WTO 등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통계를 직접 수집하거나 해당 국가의 파트너 기관을 통해 실시하였다.

223) 조영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우크라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19.7.11), 2-3면.

2. 소프트웨어연합(BSA)의 Global software survey 보고서²²⁴⁾

소프트웨어 연합(The Software Alliance²²⁵⁾, BSA)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중심으로 1988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단체이다. 미국 본부(워싱턴 DC)와 30개국 이상에 지부를 두고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 증진과 함께 기술혁신 촉진 및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공공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²²⁶⁾ BSA에는 어도비, 애플, 오라클, 인텔과 같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저작권 보호 활동 및 연구의 일환으로 IDC와 협력하여 11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률 및 상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Global Software Survey)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SA는 세계 주요국의 SW 불법 복제율 및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손해액)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격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2018년 보고서가 발간되어 있다. SW 불법 복제율은 불법 소프트웨어 총합계를 대상 년도에 인스톨된 소프트웨어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총수는 인스톨된 소프트웨어 총수로부터 정규소프트웨어 총수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정규 소프트웨어 총수는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를 소프트웨어 평균단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인스톨된 소프트웨어 총수는 소프트웨어가 인스톨된 컴퓨터 대수에 1대당 소프트웨어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불법 복제에 따르는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은 불법 소프트웨어 총수에 소프트웨어 평균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표 4-15 2017년 유라시아 지역 주요국의 SW 불법복제율

구분	SW 불법복제율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미 달러 기준)
우크라이나	80%	\$108M(1억800만)
러시아	62%	\$1,291M(12억9100만)
카자흐스탄	74%	\$62M(6200만)
아제르바이잔	81%	\$50M(5000만)
아르메니아	85%	\$17M(1700만)
조지아	81%	\$22M(2200만)
몰도바	83%	\$35M(3500만)
세계평균	37%	\$46,302(463억200만)

224) BSA, "Global Software Survey", 2018.6, <https://gss.bsa.org/wp-content/uploads/2018/05/2018_BSA_GSS_Report_en.pdf>.

225) 설립 당시의 명칭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usiness Software Alliance)였으나 2012년 Business를 삭제하고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26) BSA 홈페이지(<https://www.bsa.org/about-bsa>, 2021.10.5. 최종방문).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2015년 39%에서 2017년에는 사용률이 37%로 낮아졌으며,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 역시 전년도 대비 8% 낮아진 약 4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불법 복제율이 감소했다는 점은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여전히 불법 복제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SW 불법복제율은 80%에 이르고, 그 규모도 1억 8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SW 불법복제율 세계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SW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의 사정으로, 62%의 러시아와 74%의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8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복제율은 매우 높지만 총액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라시아 7개국의 불법 복제에 따른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러시아를 합치더라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의 3.4%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²²⁷⁾

3.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²²⁸⁾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국제통상교섭이나 통상정책을 소관하는 대통령 직속의 연방정부기관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는 USTR 외에 상무성, 국무성 등이 있으나 USTR은 이들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의하여 대외교섭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제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동법에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당해 국가와의 협의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국가를 감시하여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USTR은 동법 제182조에 따라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감시 경계수준을 기준으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비하고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이 곤란하여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이며, 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문제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국가이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27) 러시아를 제외할 경우 유라시아 6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은 2억 9,400만 달러 규모로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총액의 0.6% 수준이다.

228) USTR (2021), "2021 Special 301 Repor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

표 4-16 2021년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유라시아 지역)

구분	경계수준
우크라이나	우선감시대상국(PWL)
러시아	우선감시대상국(PWL)
카자흐스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
조지아	-
몰도바	-
투르크메니스탄	감시대상국(WL)
우즈베키스탄	감시대상국(WL)

2021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감시대상국(PWL)의 경우 중국, 인도 등 9개²²⁹⁾ 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감시대상국(WL)의 경우 캐나다, 베트남, 태국 등 23개²³⁰⁾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되어 있다.

USTR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2018년 이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1)로열티를 징구하고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책임이 있는 집 단관리기구(CMO)를 위한 시스템의 관리에 대한 점, (2)우크라이나 정부 기관들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지속 사용하는 점, (3)광범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CMO들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며, 불공정하고, 로열티를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수혜국으로서의 권리를 일부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18년 7월 우크라이나는 CMO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2019년 우크라이나가 CMO 개혁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인정하여 중단된 혜택의 일부를 복구하였다. 201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인가된 6개의 CMO 중 일부는 로열티 협상을 완료하고 권리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CMO들이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크라이나가 합법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국가조달시스템을 사용하면 정부 기관의 불법 소프트

229)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230) 알제리,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웨어 사용 비율은 2016년 이래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들이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합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된 라이선스 수 보다 사용 대수가 많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온라인 불법 복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특히 불법 캠코더 촬영에 의한 불법 복제 영화가 다수 제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불법 캠코더 촬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온라인은 물론 일부 오프라인 극장에서도 이용가능하다. 2017년 우크라이나 의회는 온라인 불법 복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항을 담은 “영화의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불법 캠코더 촬영 및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2019년 우크라이나 경찰은 침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자금을 대는 광고 회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온라인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4.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의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²³¹⁾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은 미국 내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의 연합단체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필름제작자협회(AFMA), 미국출판협회(AAP), 미국영화제작자협회(MPAA), 미국음악출판협회(NMPA) 및 미국음반제작자협회(RI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저작권 환경 개선, 진입 장벽에 의해서 폐쇄적인 상황에 있는 국외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IIPA는 저작권 산업의 번영을 위해 외국 시장들이 높은 보호 수준의 저작권법을 갖고, 효율적인 저작권 집행과 건전한 라이선싱이 가능한 법적 구조를 제공하며, 시장 진입 장벽과 불공정 경쟁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USTR이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간에 IIPA가 작성한 각국별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자료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IIPA가 USTR의 보고서 발간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31) IIPA, “2021 SPECIAL 301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ND ENFORCEMENT”, 2021.1.28.

표 4-17 2021년 IIPA의 저작권 보호 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 (유라시아 지역)

구분	경계수준
우크라이나	우선감시대상국(PWL)
러시아	우선감시대상국(PWL)
카자흐스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
조지아	-
몰도바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USTR의 보고서와 달리 IIPA의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11개의 우선감시대상국(PWL)²³²과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9개의 감시대상국(WL)²³³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IIPA의 보고서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IIPA의 보고서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8년 처음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된 이래 2021년까지 꾸준히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301조 조사대상국 등으로 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에 매우 취약한 국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4-18 1989-2021년 우크라이나의 감시대상국 지정 연혁

구분	감시대상국 등 지정 연혁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지위	-	-	-	-	-	-	-	-	-	WL	PWL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위	PWL	PFC	PFC	PFC	PFC	PFC+OCR	PWL	PWL	WL	WL	WL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위	WL	PWL+GSP	PFC	301	PWL	PWL	PWL	PWL	PWL	PWL	PWL

301: 301 Investigation, PFC: Priority Foreign Country, PWL: Priority Watch List, WL: Watch List, OCR: Out-of Cycle Review to be conducted by USTR, GSP: GSP IPR review initiated June 2012

IIPA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취약한 형사 집행이 우크라이나 저작권 산업 성장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였다. 형사 집행이 불충분한 이유로는 온라인 불법 복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는 낡은 법적 제도, 자원의 부족, 대규모 불법 운영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캠페인의 부재를 들었다.

232)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우크라이나, 베트남
 233)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케냐, 스위스, 태국, 터키, UAE

또한, IIPA는 우크라이나에 음악 저작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음악 산업 집단관리기구(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의 인증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조치²³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0년에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평가하였다. 2020년에 이루어진 조치들의 아쉬운 점은 첫째로 UACRR과 같은 인증되지 않은 음악 산업 CMO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을 들 수 있다.²³⁵⁾ 둘째로 저작권법의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저작권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의 의미 있는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일부 대규모 침해 웹사이트와 서비스의 폐쇄라는 긍정적인 조치가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범죄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억제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IPA는 우크라이나에서 2021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조치로 형사 집행과 법률 정비를 꼽았다. 형사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률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특히 (1) 불법 스트리밍, P2P, BitTorrent 사이트 소유자 및 운영자, (2) 외국 권리자를 포함한 저작권 소유자들의 법적 승인 없이 운영되는 CMO, (3) 캠코딩 작업의 주체 및 참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에 전문 지식재산권 조사부 설치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수사 및 기소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률 정비와 관련해서는 (1) WIPO 인터넷 조약²³⁶⁾의 완전한 이행, (2) ISP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는 전기통신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3) 2018년 CMO 법 및 저작권법의 개정, (4) 필름 인쇄물 제조 요건 폐지 및 미디어법 개정안이 우크라이나 양자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의무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5. 세계혁신정책센터(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²³⁷⁾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²³⁸⁾)는 2012년부터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분석한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를 개발 및 발표해 왔다. 2021년에는 3월 24일 2021 국제지식재산지수(2021 GIPC international IP Index Report(제9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는 국가별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수준 등 제반 현황을 분석하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로 각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234) 2020년에 저작권 관련 법안이 2가지 제정되었다. 법안 제2255호를 통해 2016년 폐쇄된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청(Stat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of Ukraine, SIPSU)을 대신하는 국가지식재산청(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IPO)의 권한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법안 제3377호를 통해서도 CMO 절차의 사소한 변경을 가했다.

235) UACRR은 미국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36) WIPO Copyright Treaty(WC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WPPT)를 포함함.

237) GIPC, "US Chamber 2021 International IP Index", 2021.3.24., <https://www.valueingenuity.com/wp-content/uploads/2021/03/GIPC_IPIndex2021_FullReport.pdf>.

238) (舊) 글로벌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자산의 사업화, 지식재산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같은 9개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표 4-19 유라시아 지역 2021년 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

구분	점수
우크라이나	39.54점
러시아	46.58점
카자흐스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
조지아	-
몰도바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2020년에는 전체 글로벌 IP 환경이 개선되어 53개 국가 중 32개 국가에서 IP 지수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난 9년 동안 많은 인도와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점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95.31점을 받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영국 93.90점, 독일 92.27점, 프랑스 91.43점 순이다.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이 평가 대상국에 포함되었다. 우크라이나는 39.54점으로 전체 53개 국가 중 39위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는 46.58점으로 31위를 기록하였다.

우크라이나의 9개 평가 분야 각각에 대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36.11점으로 이집트와 함께 공동 39위를, 저작권과 관련하여 26.14점으로 43위를, 상표권과 관련하여 43.75점으로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요르단, 쿠웨이트와 함께 공동 39위를,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62.50점으로 모로코, 파키스탄과 함께 공동 25위를,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25.00점으로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공동 38위를, 지식재산 자산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29.17점으로 알제리와 함께 공동 45위를, 지식재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16.98점으로 50위를, 시스템 효율성과 관련하여 20.00점으로 브루나이와 함께 공동 50위를,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관련하여 100.00점으로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하였다. 상술한 IIPA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지식재산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부분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 재산권연맹(PRA)의 국제재산권지수 보고서²³⁹⁾

재산권 연맹(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은 전미세계개혁협회의의 관련단체이다. 미국 내외의 제외국을 포함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재산권지표(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재산권 보호 지표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며,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IPRI는 평가지표에 지식재산권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는 최저 0점부터 최고 10점으로 산정하고 있다.

표 4-20 유라시아 지역 2020년 PRA의 국제재산권지수

	지식재산권	국제재산권 지수
우크라이나	4.563(90위)	4.466(105위)
러시아	5.376(66위)	4.998(88위)
카자흐스탄	3.888(109위)	5.006(85위)
아제르바이잔	4.471(96위)	5.348(67위)
아르메니아	3.439(121위)	5.032(83위)
조지아	3.273(122위)	5.236(73위)
몰도바	3.205(123위)	4.329(111위)
전체평균(129개국)	5.545	5.728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라시아 지역 중 국제재산권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5.348점으로 67위를 기록한 아제르바이잔으로 조사되었다. 우크라이나는 4.466점으로 10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국에 포함된 유라시아 지역 7개국 중 6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유라시아 지역 중 러시아가 5.376점, 66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4.563점을 획득하여 전체 129개국 중 90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7개국 중 러시아 다음으로 높은 점수이나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에 해당한다.

7. 유럽위원회(EC)의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²⁴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1958년에 설립된 유럽연합(EU)의 정책집행기관이다. 28명의 위원에 의한 합의체로 운영되고 법안 제출, 예산 관리, 국제협정 및 교섭 등을 포함한 EU의 운영 전

239) PRA,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20 Report", 2020.10.20., <<https://atr-ipri2017.s3.amazonaws.com/uploads/IPRI+2020+Full+Report.pdf>>.

240) EC,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april/tradoc_159553.pdf>.

반을 담당하고 있다. EC는 2006년부터 격년으로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월 20일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EU 이외의 국가들을 제3국으로 지칭하고 이들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상황이 EU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려되는 국가들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그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보고서에서 우선순위로 구분된 국가는 모두 13개 국가이며, 우선순위의 설정은 높은 쪽으로부터 1에서 3까지 3단계로 평가된다. 우선순위1에 지정된 국가는 중국이며, 우선순위2에 지정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4개국이다. 우선순위3에는 8개국이 포함되어 있다.²⁴¹⁾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우선순위2에 지정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외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1년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우선순위2 지정을 유지한다고 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심각한 시스템적 문제가 존재하고, 지난 보고서 발간 시와 비교해서도 특별히 나아진 점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베트남, 브라질과 함께 최근 수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불법 복제 문제(특히 온라인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위조품이나 불법 복제품이 종종 집행 당국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시장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이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²⁴²⁾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제한적인 특허성 기준으로 인해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가 약해져서, 의약품 분야에서 보관이 쉽거나, 더 안전하거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형태의 화합물을 찾기 위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하였다.²⁴³⁾ IIPA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EC 보고서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단관리 시스템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창의적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침을 지적하고 있다.²⁴⁴⁾

보고서는 입법 미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91년 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241) (우선순위1) 중국 (우선순위2)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우선순위3)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242)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시장 유출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적되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약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태국, 터키, 베트남이 지적되었다.

243) 우크라이나와 같은 제한적인 특허성 기준을 가진 나라로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를 언급하였다.

244) 저작권 집단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나라로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나이지리아, 러시아, 태국, 터키를 언급하였다.

협약에 따른 식물 다양성 권리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보호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²⁴⁵⁾

표 4-21 2021년 EC의 제3국에서의 지재산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유라시아 지역)

	우선순위(경계수준)
우크라이나	2
러시아	2
카자흐스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
조지아	-
몰도바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8. 평가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원집정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1991년 독립이후에도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하여왔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었다. IMF, EU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수령하였으며, 러시아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EU와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2016년 1월 1일 EU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 등으로 EU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2019년까지 경제회복 추세를 이어나갔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GDP가 전년 대비 4.4%가량 감소하였으나, 2021년 들어 코로나 19가 안정세로 돌아서며 약 3.8~4.1%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12,710 달러를 기록한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로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등 7개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이다. 그 면적이 60.3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2021년 5월말 기준 인구수는 약 4,19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티타늄 매장량이 세계의 1/4, 망간 채굴량이 세계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유 매장량도 2억 톤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넓고 비옥한 영토와 온화한 기후 등의 조건을 보유한 농업 대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이 반영되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도 농산물, 광물, 축산품을 위주로 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245) 식물 다양성 권리 보호에 대한 법률적 결함이 존재하는 나라로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러시아, 터키를 언급하였다.

농산물, 광물 위주이나, 우크라이나는 우주 발사체, 항공기, IT 분야에 있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IT 산업 종사자가 약 20만 명으로 인도,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아웃소싱 거점지역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헌법, 민법, 상법, 관세법 및 특별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호법, 상품출처표시에 대한 권리 보호법, 상표 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집적회로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법 등이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동일한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데,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되며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갖고 있으며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2018년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특허출원된 1,861건 중 46.9%가 외국인 또는 우크라이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특허출원이었고, 이 중 22건은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의 출원이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으로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설립협약(1967년), WIPO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특허 협력 조약(2011년)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25일 WIPO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파리 협약, 베른 협약, 마드리드 의정서, 저작권 조약(WCT), 특허법 조약(PLT),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에 가입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농업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Agriculture)는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0년 6월 16일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청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 10월 14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특허청(UKRPATENT)이 국가지식재산청(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IPO)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보호, 인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²⁴⁶⁾

우크라이나 관세청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model),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상표(trademark)를 관세청 지식재산권 등록부(Ukrainian Customs Reg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bjects)에 등재하고, 해당되는 상품들의 수입 및 수출을 관리한다. 지식재산권 등록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와 같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품이 불법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관세청에 해당 상품에 대한 파기, 압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확정되거나 증명되었을 경우, 우크라이나 반독점 위원회는 침해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46) 우크라이나 특허청의 구체적 업무범위는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s://ukrpatent.org/en/articles/about>

이하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표 4-22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정리

구분	주요내용			
WEF(지재보호)	3.2(125/138) (2016-2017)	3.3(119/137) (2017-2018)	3.4(114/140) (2018)	3.4(118/141) (2019)
BSA(불법복제)	84%(2011)	83%(2013)	82%(2015)	80%(2017)
USTR(경계수준)	우선감시대상국(2018)	우선감시대상국(2019)	우선감시대상국(2020)	우선감시대상국(2021)
IIPA(경계수준)	우선감시대상국(2018)	우선감시대상국(2019)	우선감시대상국(2020)	우선감시대상국(2021)
PRA(지재권)	3.424(123/127) (2017)	4.282(110/125) (2018)	4.432(109/129) (2019)	4.466(105/129) (2020)

세계경제포럼(WEF)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4계단 하락하여 141개국 중 118위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기록하였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경우 소프트웨어연합(BSA)의 보고서에 따라 2011년 84%에서 2017년 80%로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여러 보고서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기관에서부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USTR과 IIPA의 보고서에서는 꾸준히 우선감시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외국 권리자에게 저작권 로열티 분배를 하지 않는 CMO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CMO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산권연맹(PRA)의 국제재산권지수에 있어서 2017년 이래 꾸준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문 지식재산권 고등법원 설립 추진, 국가지식재산청 창설 법안 통과,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세계 혁신정책센터(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항목 중 하나인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다수의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무색하게 독립 이래 꾸준히 USTR 및 IIPA의 감시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유럽위원회(EC)에서도 우선순위2 국가에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정부 기관에서부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는 개선된 제도가 잘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IT 산업 분야 기술력이 이러한 온라인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 조약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보호 환경을 높게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III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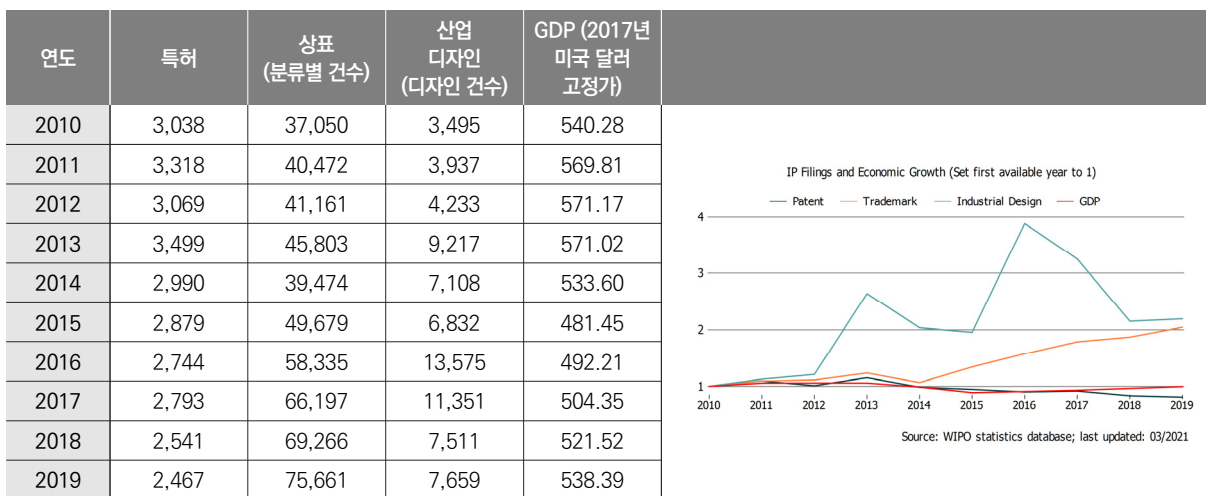
1. 지식재산 출원(거주자 + 해외, 지역 포함)과 경제성장

WIPO의 IP 통계(2010-2019)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특허 신청(filing) 건수는 전반적으로 2014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3,499건에서 2014년 2,990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후 2015년 2,879건, 2016년 2,744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7년에 2,793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8년 다시 2,541건, 2019년 2,46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상표(분류별 건수)의 경우, 2014년 39,474건에서 2015년에 49,67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 2016년 58,335건, 2017년 66,197건, 2018년 69,266건, 2019년 75,661건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디자인(디자인 건수)의 경우, 매우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3,575건, 11,351건으로 만 건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GDP(2017년 미국 달러 고정가)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81.45와 492.21을 기록하며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회복하여 2017년 504.35, 2018년 521.52, 2019년 538.39를 기록하는 중이다.

표 4-23 IP 신청(거주자 + 해외, 지역 포함)과 경제 성장



2. 특허

(1) 특허 출원 현황

특허 출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의한 출원이 많고 해외 출원인의 출원은 적은 편이다. 해외 출원의 경우, 최고 출원 건수가 669건이었다.

거주자의 경우, 2014년부터 출원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년에는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건수인 2,097건을 기록하였다. 특허 출원 양상이 불규칙한 편이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2,000건 이상의 출원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특허 출원 건수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1,862건을 기록하며 2,000건 이하로 하락했다. 그 후에도 2017년 1,764건, 2018년 1,861건, 2019년 1,755건을 기록하며 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출원인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출원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5년에는 608건을 기록하였다가 2016년부터 511건, 2017년 510건, 2018년 434건, 2019년 370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24 특허 출원

연도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
2010	2,556	2,756	482
2011	2,649	2,604	669
2012	2,491	2,464	578
2013	2,856	2,556	643
2014	2,457	2,356	533
2015	2,271	2,226	608
2016	2,233	1,862	511
2017	2,283	1,764	510
2018	2,107	1,861	434
2019	2,097	1,755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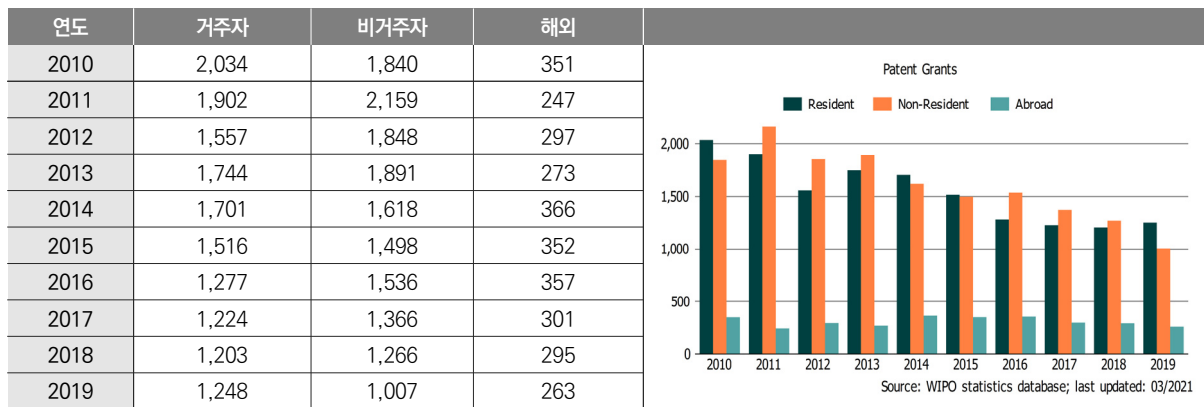
Source: WIPO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03/2021

(2) 특허 등록 현황

특허 등록도 해외 출원인에 의한 등록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등록은 전반적으로 1,000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출원인에 의한 등록은 400건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등록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거주자의 경우 2010년에는 2,034건이었으나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248건을 기록하였다. 비거주자도 2011년에는 2,159건이었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2019년에는 1,007건을 기록했다. 해외 출원인의 경우, 2~300건대에서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표 4-25 특허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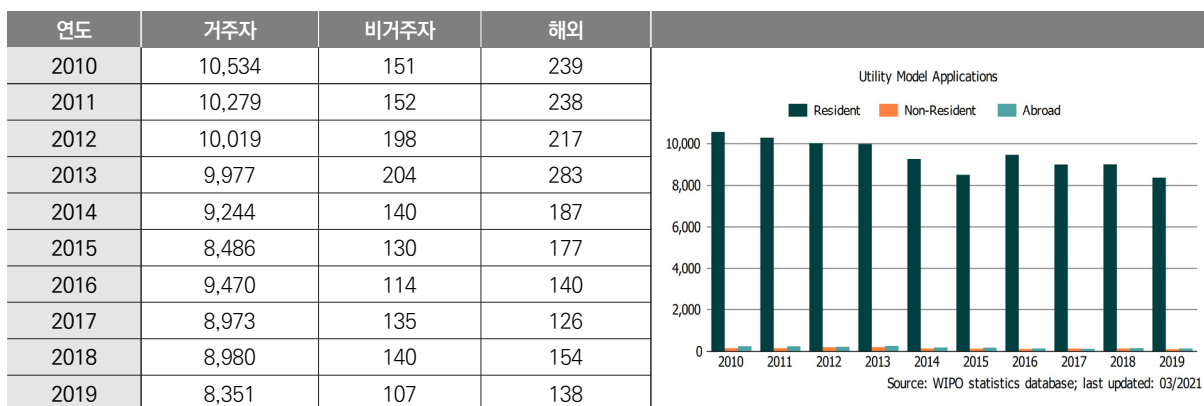


3. 실용신안

실용신안 출원은 주로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거주자와 해외 출원인의 경우 1~200건대에 머물러 있지만, 거주자에 의한 출원은 8,000~10,000건대를 기록하며 현격하게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거주자의 출원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까지는 10,000건 이상을 기록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9,977건을 기록하던 2019년에는 8,351건으로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비거주자와 해외 출원인의 출원 건수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표 4-26 실용신안 출원



4.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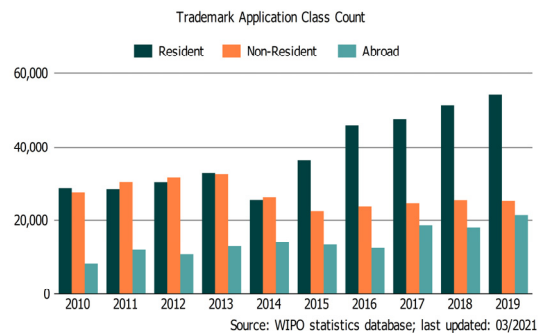
(1) 상표 출원 현황(분류별 건수)

상표 출원(분류별 건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해외 출원인 모두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의 순서로 비중이 큰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경우, 2010년에는 28,796건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지난 10년간 최고치인 54,298건을 기록하였다.

비거주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30,000건대를 돌파하였다가 2014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25,118건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0년에는 8,254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11,957건을 기록하였고 그 후에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에는 20,000건대를 돌파하여 21,363건을 기록하였다.

표 4-27 상표 출원 현황(분류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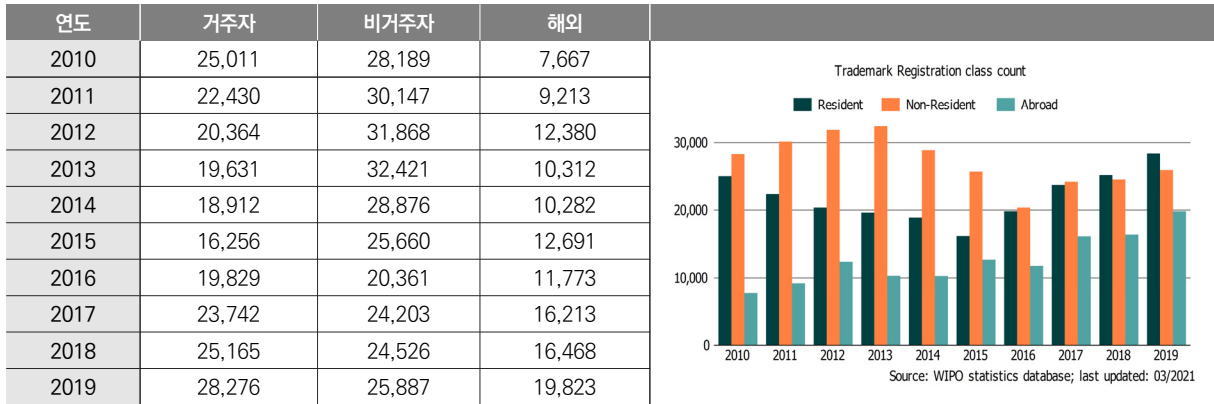
연도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
2010	28,796	27,641	8,254
2011	28,515	30,439	11,957
2012	30,406	31,693	10,755
2013	32,896	32,590	12,907
2014	25,355	26,076	14,119
2015	36,339	22,403	13,340
2016	45,880	23,638	12,455
2017	47,531	24,501	18,666
2018	51,195	25,305	18,071
2019	54,298	25,118	21,363



(2) 상표 등록 현황(분류별 건수)

상표 등록(분류별 건수)은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 모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거주자, 거주자, 해외의 순으로 비중이 큰 편이다. 구체적으로 거주자는 2010년 25,011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16,256건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에는 28,276건을 기록했다. 비거주자의 경우, 2010년 28,189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32,421건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20,361건까지 하락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조금씩 회복하면서 2019년에는 25,887건을 기록했다. 해외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7,667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9,823건까지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28 상표 등록 현황(분류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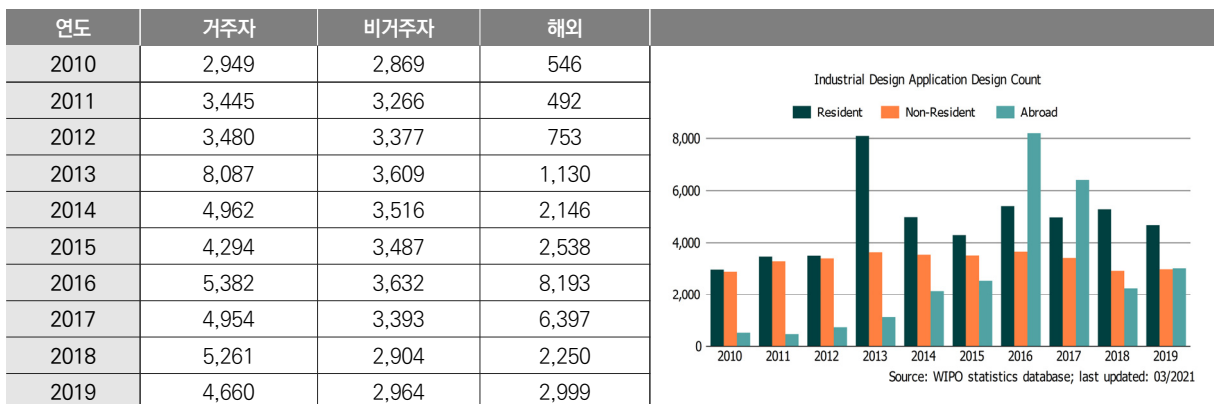
5. 디자인

(1) 디자인 출원 현황

산업디자인 출원 중 디자인 건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해외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의 경우, 2010년 2,949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에는 8,087건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 다시 하락하여 4,000~5,000건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거주자의 경우, 다소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2,000~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0년 546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약 15배인 8,193건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6,397건을 기록하고, 2018년과 2019년은 2,000건대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최소 출원 건수는 492건(2011년), 최고 출원 건수는 8,193건(2016년)으로 변동 폭이 매우 크다.

표 4-29 산업디자인 출원 중 디자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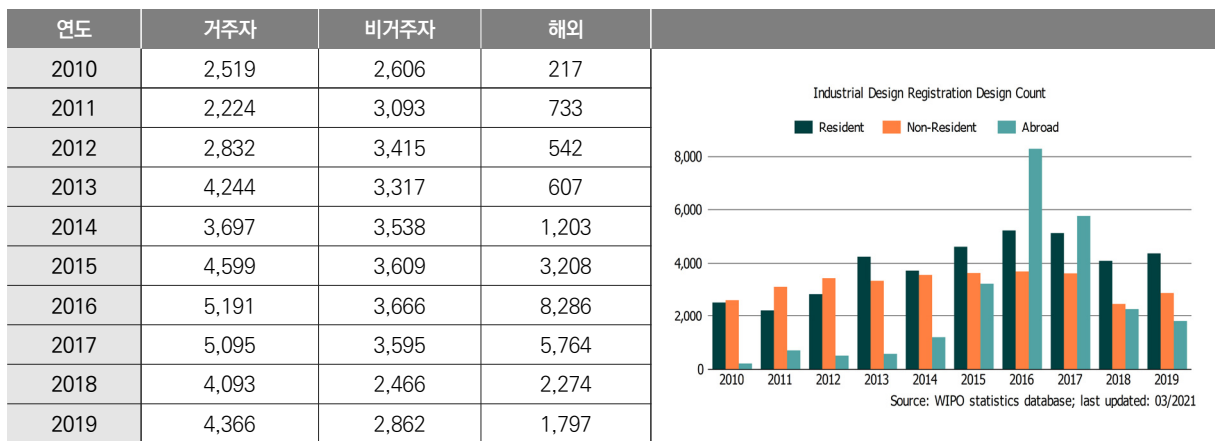


(2) 디자인 등록 현황

산업디자인 등록 중 디자인 건수도 출원 현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거주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대까지는 2,000건대에 머물다가 2013년 급격히 증가하여 4,244건을 기록하였고, 2014년 3,69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시 4,000~5,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0년 2,606건에서 2017년 3,595건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소폭 감소하면서 2018년과 2019년에는 2,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다소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2,000~3,000건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해외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우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2016년에는 2010년의 약 38배인 8,286건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에는 1,797건까지 하락하였다. 지난 10년 간 최저 등록 건수는 217건(2010년), 최대 등록 건수는 8,286건(2016년)으로 변동 폭이 매우 크다.

표 4-30 산업디자인 등록 중 디자인 건수



제 4 절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 방안

I 서설

IP 행정서비스의 수출은 수출 대상 국가의 경제 및 산업 현황과 지식재산 제도 및 보호 현황, 행정 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국의 환경과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IP 행정서비스를 수출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는 앞서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검토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측면에서는 국제지식재산 지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법 제도와 국가지식재산권청 등의 IP 행정 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이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한국형 IP 행정서비스를 수출 및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각 분야별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협력 방안

1. 국가지식재산청의 역할 확대

우크라이나에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부기관으로 경제개발무역농업부와 특허청, 관세청, 대통령 소속 반독점위원회, 경제개발무역농업부 소속 국가지식재산권실 등이 존재한다. 경제개발무역농업부는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등록, 보호, 인수 등 업무를 총괄·수행한다. 관세청은 권리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를 지식재산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해당 상품들의 수입·수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다. 대통령 소속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확정 및 증명되었을 경우 침해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경제개발부속농업부 소속 국가지식재산권실은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와 전문가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청을 제외하고는 통상 국가지식재산청이 수행하는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에 2020년 6월 16일, 「국가지식재산청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0월 14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특허청이 국가지식재산청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보호, 인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실용신안, 상표, 반도체 배치설계 등의 출원, 등록, 관련 인증서 발급, 권리 무효화, DB 관리, IP 교육, 정책 수립 및 정보 제공, 기타 국제협정에 규정된 국가지식재산청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²⁴⁷⁾ 2020년 이미 우크라이나는 국가지식재산청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그 기능을 체계화 하였으며, 그 밖에도 전문 지식재산권 고등법원 설립 추진 등 국가지식재산청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우크라이나의 국가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위원회(EC)는 2021년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조품이나 불법 복제품이 집행 당국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시장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이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2019년 EU 및 OECD 평가에 따르면, 식품, 보석류, 의류, 광학/사진/의학장비 등 상당수의 위조품 및 복제품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EU 시장에 반입되고 있다.²⁴⁸⁾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도 2021년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형사 집행이 저작권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경찰과 검찰에 전문 지식재산권 조사부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수사 및 기소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특허청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형사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하였다. 그 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였고, 현재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상표(위조상품),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국세청, 특허청과 같은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행정기관의 소속직원(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경찰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⁴⁹⁾ 즉, 일선 경찰관에게 전문적인 사건의 처리를 맡기기 보다는, 해당 분야

247) <https://ukrpatent.org/en/articles/about> 참조.

248) 우크라이나대사관,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특기사항, 2020, 4면.

249) 김종권·김지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 확대와 전망, 리얼타임즈 칼럼, 2019.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80> 참조.

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준 후 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송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국 특허청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제도야 말로, 우크라이나가 위조품이나 불법복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법 제도 개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우리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시스템과 운영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한다면, 국가지식재산청의 역할을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 및 제제로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에 신속히 형사 집행 수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사 역량 강화

우크라이나의 IP 신청 건수는 2019년 기준 특허 2,467건, 상표 75,661건, 디자인 7,659건으로 특허에 비해 상표와 디자인의 출원이 크다. 우크라이나의 특허, 상표 심사절차는 우크라이나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며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실체심사, ④ 권리허여 공고, ⑤ 등록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특허청은 출원 접수 후 약 2~3개월간 방식심사를 하고,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진다. 반면, 디자인의 경우, 법률상 실체심사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형식심사만을 통해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곧 디자인 출원 수가 큰 요인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특허 건수는 상표와 디자인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우크라이나는 우수한 IT 산업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들에 의해 창출되는 특허 건수는 미비하다. 따라서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IT 기반의 기업의 IP 창출을 활성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들은 기술 혁신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통령 또는 총리 등 국가 최정상 차원에서 국가 IP 전략을 지휘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심사관을 충원하고, 일본은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감소를 추진했다.²⁵⁰⁾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통적으로 항공우주, 자율주행, 항공우주 등 ICT 분야에서 앞서고 있고, 특허분포에서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심사 역량 강화에 융·복합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ICT 분야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고 특허 지식과 더불어 관련 기술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이다. 우크라이나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강한 특허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5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 2017, 2면.

한국 특허청의 경우,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우수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2019년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였다.²⁵¹⁾ 융복합기술심사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스마트제조 등 ICT 기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의 특허 대응전략 수립과 기술자료 보급, 기술의 조기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 방식을 보완하여, 협의심사에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명이 투입되는 제도이다. 기존의 단독심사에 비해 융복합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발휘되고 있다.

ICT 산업이 고속 성장 중에 있지만 관련 특허 출원은 미비한 실태인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ICT 분야 심사 시스템(융복합기술심사국, 3인 합의형 협의심사 등)을 수출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특허 심사 역량이 제고되어 우크라이나 기업의 기술 혁신을 독려하고 특허 창출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는 세계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많은 IT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하였을 시 강한 특허와 신속한 권리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생전략이 될 수 있다.

3.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동화 및 현대화

우크라이나에 정부는 국내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IT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망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2018년 1월 '2018~2020년 우크라이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발전개념과 실행 계획(이하, 2020 디지털 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의회에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국가 및 정부 프로그램, 해외 협력 프로그램, 전자정부와 공공 전자 서비스, 스마트 인프라(도시, 커뮤니티) 등의 문제들에 관여한다. 특히 집행 정부의 중앙 조직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 전자 관리청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를 설립했는데, 중앙 조직으로서 디지털화, 디지털 발전, 디지털 혁신, 전자관리와 전자민주주의, IT 산업발전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형성 및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63개국 중에서 60위에 불과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디지털 숙련도의 부족, 기술 낙후, 규제기관의 낮은 효율성, 기술에 대한 국내 수요부족 등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에서의 다양한 디지털 정책 수립과 실시 노력에서 더 나아가 해외의 선진 디지털 기술과 우수 시스템을 수입하고 관련 스킬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51) https://www.kipo.go.kr/kpo/BoardApp/USilSvcApp?c=1001&silguk_cd=121&dept_cd=121000&movePage=convergence&catmenu=m10_20_01 참조.

이러한 현황을 공략하여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IP 행정정보 전자시스템을 수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의 여러 차례 기술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2004년에는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아카데미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센터를 설립하였고,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해외기술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받고 있다.

IP 행정정보 전자시스템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이자 각국 국가지식재산권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이집트, UAE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출원, 전자화, 검색서비스 등의 특허행정 정보화 컨설팅과 특허행정 전자화시스템 구축을 실시해왔다. 특히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공유사업(KSP) 등 한국형 ODA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특허행정 정보화 컨설팅 및 한국형 행정정보 시스템의 해외 보급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 기조와 특히 정부기관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성, 하지만 그에 비해 부진한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보았을 때, 한국 IP 행정정보시스템의 수출은 한국의 숙련된 디지털 기술과 보급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전자정부 실현과 IP 행정정보의 현대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 지식재산법의 현대화

우크라이나에서는 특허, 실용신안(utility model), 디자인(industrial design),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헌법, 민법, 상법, 관세법, 기타 특별 법령 등이 존재한다.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모두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법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지적과 우려를 받고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은 2021년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2021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조치로 법률 정비와 형사 집행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① 저작권법과 음악 산업 집단관리기구(CMO) 법의 개정, ② ISP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는 전기통신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③ 필름 인쇄물 제조 요건 폐지 및 미디어법 개정안이 우크라이나 양자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의무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등의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위원회(EC)는 2021년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① 제한적인 특허성 기준

이 혁신을 유도하는 동기를 약하게 하는 점, ② 특히 의약분야의 혁신이 저해되고 보호가 미흡한 점, ③ 1991년 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른 식물 다양성 권리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법 제도는 현대의 기술 혁신과 IP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선진화된 지식재산권 법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1986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3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특허심사기준을 수차례 보완 및 발전하며 세계 특허 강국으로 도약하였고,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즉,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으로 시정을 권고 받고 있는 법 제도 쟁점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법 제도 정비를 고민하고 개선한 경험이 있다. 양국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법 제도 구축 경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법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국제수준에 맞는 지식재산권법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 조약, 협약 및 협정에 부합하는 국제화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25일 WIPO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으로 파리 협약, 마드리드 의정서, 저작권 조약(WCT), 특허법 조약(PLT),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설립협약(1967년), WIPO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특허협력조약(2011년) 등에 가입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세계혁신정책센터(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만큼 다수의 국제조약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미국통상대표부(USTR)과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2021년 유럽위원회(EC)의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우선순위2 국가에 지정되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지식재산권 및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유라시아 지역 최하위인 118위, 128위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무른다. 2020년 세계혁신정책센터(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도 우크라이나는 39.54점으로 전체 53개 국가 중 39위를 기록하였고, 2020년 재산권연맹(PRA)의 국제재산권지수 보고서에서는 4.466점으로 105위를 기록하며 유라시아 지역 7개국 중 6위에 해당했다. 소프트웨어연합(ESA)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서베이 보고서에서는 SW 불법복제율이 80%에

이르고, 그 규모도 약 1억 8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각종 국제규범에 비추어볼 때, 우크라이나의 지식 재산 보호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세계 국제지식재산지수 관련 보고서의 분석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저작물 불법 복제 문제(특히 온라인 불법복제)'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C는 우크라이나가 수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불법 복제 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였는데, 우크라이나의 SW 불법복제율이 세계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SW 불법 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USTR은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들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합법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국가조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정부 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을 서서히 감소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정부 기관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중앙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협정문 제18.4조 9호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법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 또는 집행 포고령을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매년 공공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보호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는 다수의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 조약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 일 것이다. 지난 10년 간 한국이 축적해 온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정품화 추진 노하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면 단기간에 우크라이나의 불법복제율 감소 효과를 도모하고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 제공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불법복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인식제고 활동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USTR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는 불법 캠코더 촬영에 의한 불법 복제 영화가 다수 제작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 캠코더 촬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온라인은 물론 일부 오프라인 극장에서도 이용 가능한 실태이다. 우크라이나의 SW 불법복제율은 80%에 이르며 이는 세계평균의 2배를 넘는 기록이다. 이에 IIPA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불법복제 및 불법운영 행위가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캠페인은 부재함을 지적했다.

지식재산 교육은 일반 사용자 또는 출원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우수한 IP 교육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한국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과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대 등 2개 대학교는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원격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산업종사자, 공무원, 대학생, 청소년 등의 다양한 주체의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교육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다. 특허청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또한 해외의 기업인, 학생, 심사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 과정을 아시아 최초로 온라인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에게 지식재산 분야의 기본 소양을 교육하였다.²⁵²⁾ 뿐만 아니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협력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한국도 과거 국민의 낮은 지식재산권 인식과 K-콘텐츠의 인기에 따른 만연한 불법복제 문제를 겪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 침해율과 불법복제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IP 존중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 저변을 확대하여 합법적인 지식재산권 시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불법복제 근절 및 IP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저작권 존중 의식 함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III 소결

우크라이나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IMF, EU,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며, 높은 공공부채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ICT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과 함께 국가의 주요 유망 분야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ICT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산업규모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다수의 국제지식재산지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고 있고, ICT 산업 강국에 비해 특히 창출은

252)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2020, 234면.

매우 미비한 상황이며, 소프트웨어나 영상저작물 등의 불법복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 지식재산 보호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전략이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 특허청이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국가지식재산청의 형사집행 역할을 확대하고, 융복합기술심사국, 3인 합의형 협의심사 등의 ICT 심사 시스템을 수출하여 우크라이나의 기술 혁신과 특허 창출을 독려하며, 특허행정 정보화 컨설팅과 특허행정 전자화시스템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자정부 실현과 IP 행정시스템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의 법 제도(저작권위탁관리업, OSP 책임, 특허심사기준, 의약품 보호, 생물다양성법 등) 교육 과정 및 관련 컨설팅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법 제도를 현대화하고, 한국의 SW 관리 시스템과 관리 가이드의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국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해외 IP 교육 시스템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자료 등을 수출하여 우크라이나의 IP 존중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프라, 법제도, 전략 등 한국형 IP 행정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은 단순히 수출 대상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대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 2017.
- 김학기, 우크라이나 산업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 러시아와 연계된 산업구조로 동서 지역 간 갈등 장기화 우려, KIET 산업경제분석, 2014.
- ____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협력 방안: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중심(산업연구원, 2020.
- 문화체육관광부, 정정당당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2017.
- 류강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카타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
- 박종렬·노상욱,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재검토, 2013.
- 이혁우, 행정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조영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우크라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9.
- 홍사균 외 9,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개도국에의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 KOTRA, 2021년 우크라이나 진출전략(kotra), 2021.
- KOTRA, 키예프무역관, 우크라이나 IT 산업 정보, 2021.
- 특허청, 지식재산 백서, 2020.
- _____, 지식재산 백서, 2019.
- _____, 한국형 IP 정책 및 행정서비스 수출 모델 구출 및 후보국에 대한 IP 정책 지원방안, 2015.
- _____, 개도국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IP-Divide 해소방안 연구, 2013.
-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中東諸国における特許・実用新案・意匠・商標の審査運用の実態および審査基準・審査マニュアルに関する調査研究, 2016.
- WIPO,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2016,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 BSA, “Global Software Survey”, 2018.6, <https://gss.bsa.org/wp-content/uploads/2018/05/2018_BSA_GSS_Report_en.pdf>.
- USTR (2021), “2021 Special 301 Repor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
- IIPA, “2021 SPECIAL 301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ND ENFORCEMENT”, 2021.1.28.
- GLPC, “US Chamber 2021 International IP Index”, 2021.3.24., <https://www.valueingenuity.com/wp-content/uploads/2021/03/GIPC_IPIndex2021_FullReport.pdf>.
- PRA,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20 Report”, 2020.10.20., <<https://atr-ipri2017.s3.amazonaws.com/uploads/IPRI+2020+Full+Report.pdf>>.
- EC,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april/tradoc_159553.pdf>.
- Euromonitor International, “Country Profile: Ukraine,” 12, Oct.2020. “Ukraine becomes leader in e-commerce growth in Eastern Europe in 2020,” 16, Oct.2020
- IIPA, “2021 SPECIAL 301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ND ENFORCEMENT”, 2021. 1. 28.

기초연구과제 **법·제도분석 - 법제분석**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신흥국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손승우
발 행 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1
전 화 (02) 2189-2600
팩 스 (02) 2189-2694
인 쇄 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대외협력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신흥국 IP 환경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1544-8080 Fax.042)489-0194 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02)2189-2600 Fax.02)2189-2694 www.kiip.re.kr

ISBN : 979-11-6884-008-9 13500
DOI : 10.8080/P9791168840089